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 편 —

2014. 9

연구책임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공동연구원 김미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김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서 언

우리나라는 최근 활발한 FTA의 추진과 함께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속통관 및 교역안전을 통한 수출입통관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경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신속통관 및 절차의 간소화가 강조되는 동시에 통관 관련 비관세장벽을 최소화하고자 교역상대국의 통관정보 공유 및 세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와 1965년 국교 수립 이래, 수출입 교역 규모 모두 3위권 안에 드는 주요 교역국으로 2011년도에는 한일 교역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비록 일본-한국-중국 FTA과 일본-한국 EPA는 협정 검토단계에서 두드러지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대일 교역관계를 봤을 때 향후 양자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면 통관정보 공유가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AEO 상호인정 노력과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90% 이상인 TPP 협상의 참가국이며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이행지원을 통하여 무역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는 동시에, 마약류 밀수 단속의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 등 무역안전을 기하고 있다. 국제 무역환경에 따라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세관행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수출입개황을 시작으로 하여 통관행정조직, 과세가격, 관세율 등 수입 관련 세금, 관세감면과 환급, 수출입규제 등 통관제도, 보세제도, 벌칙, AEO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수입신고, 물품 검사, 세금 납부 등 일련의 수출입통관절차를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업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입통관절차 부분에서는 최근 도입된 출항전 보고제도를 비롯하여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 세관의 서류심사와 화물검사, 세금 납부, 수입허가 후 이행사항 및 사후조사와 AEO 공인

기업에 대한 특례수입신고, 예비심사제도, 소액물품 간이통관 등 특례적인 통관절차를 함께 다루고 있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신고, 세관의 서류심사와 화물 검사, 수출사후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준 원내 정재호 박사와 마무리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 및 관세청 국제협력팀에 감사하고 있다.

201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목 차

제1편 개 관	15
I. 일반 개황	15
II. 경제 개황	17
1. 주요 경제지표	18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19
3. 외국인 투자 동향	24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9
IV. 자유무역협정 현황	34
제2편 통관제도	38
I. 통관행정 조직	38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38
가. 일본 세관의 역사	38
나. 통관행정 조직	40
2. 통관 관련 법률	46
가. 관세 관계법령	46
나. 관세 관계법령 개정절차	47

Ⅱ. 과세가격과 납부세액 산정	49
1. 과세가격	49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50
나. 원칙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52
다. 평가신고제도(評價申告制度)	53
라.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54
2.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등	55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등	55
나. 납부세액의 계산	56
다. 통관 관련 수수료	57
Ⅲ. 관세율제도	60
1. 개요	60
가. 관세율표	60
나. 관세의 부과 방법	62
2. 관세율 수준	64
3. 관세의 종류	67
가. 개요	67
나. 관세의 종류	68
Ⅳ. 감면 및 환급	77
1. 관세의 감면제도	79
가.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	79
나. 잠정조치법상 감면제도	84
2. 관세정률법상 환급제도	85
가. 변질, 손상 등의 경우 감세 또는 환급 등	85
나.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에 대한 세금 환급 등	86
다.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 수출 시 면세 또는 환급 등	86

라.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 등	87
마.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세금 환급 등	87
3. 기타 환급제도	90
가.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91
나. 특수 관세 환급	91
V. 수출입규제	93
1. 수출입 금지	93
2. 외위법에 의한 수출입규제	94
가. 수입할당제도(Import Quota)	94
나. 수입승인제도	95
다. 사전확인제도	96
라. 예외물품	96
3.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규제	97
가. 수입규제	97
나. 수출규제	108
4. 원산지 및 품질 표시 관련 제도	109
가. 원산지 표시	111
나. 품목별 인증제도	114
VI. 보세제도	117
1. 개요	117
2. 보세지역의 종류	118
가. 지정보세지역	118
나. 보세장치장	119
다. 보세공장	121
라. 보세전시장	122
마. 종합보세지역	123

3. 보세운송	125
가. 보세운송 절차	125
VII. 벌칙	127
1. 개요	127
2. 벌칙	128
가. 관세 형벌의 형태	128
나. 관세법상 벌칙 규정	129
다. 기타 FTA 관련 처벌	133
3.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133
가. 조사	133
나. 처분	134
VIII. 기타	135
1. AEO 제도	135
가. 개요	135
나. AEO 공인요건	136
다. AEO 공인 혜택	136
라. AEO 공인 절차 및 사후관리	138
2. 사전심사제도	139
가. 개요	139
나. 사전심사의 종류	139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145
I. 수입통관 절차	145
1. 개요	145
2. 사전 절차	146

가. 수출입 코드 신청	146
나. 요건 및 승인	148
다. 특정 물품 수입자 사전 허가 등	149
3. 수입신고 절차	151
가. 수입신고 개요	152
나. 세관의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159
다. 세금 납부	161
라. 수입허가 후 납부	167
마. 수입허가 후 이행 사항	170
바. 세관의 사후 조사	171
4. 기타 수입통관 제도	172
가. AEO 공인기업에 대한 특례 수입신고 제도	172
나. 예비심사제도	175
다. 소액물품 간이통관	176
라. 개인물품의 통관	178
마. 소액물품 면세 제도	183
바. 항공화물 운송장(Air-Waybill) 등에 의한 수입신고	184
사. 창구 전자 신고(수출입)	184
II. 수출 통관 절차	186
1. 개요	186
2. 수출통관절차	187
가. 수출신고	188
나. 세관의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192
다. 소비세 수출면세	192
라. 기타 수출 통관 관련 제도	193
마. 수출 사후 조사	197
참고문헌	198

표 목차

제1편

<표 1-Ⅱ-1> 일본 주요 경제지표: 대내 경제	18
<표 1-Ⅱ-2> 일본 주요 경제지표: 대외 경제	19
<표 1-Ⅱ-3> 일본의 수출입 동향	20
<표 1-Ⅱ-4>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21
<표 1-Ⅱ-5>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입 실적	22
<표 1-Ⅱ-6> 2013년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23
<표 1-Ⅱ-7> 일본의 업종별 대내 직접투자	25
<표 1-Ⅱ-8> 일본의 국가별 대내 직접투자	26
<표 1-Ⅲ-1> 최근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 현황	29
<표 1-Ⅲ-2> 한·일 교역 추이	30
<표 1-Ⅲ-3> 우리나라의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31
<표 1-Ⅲ-4> 우리나라의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32
<표 1-Ⅳ-1>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현황(2014년 12월 기준)	35
<표 1-Ⅳ-2> TPP 협상 분야	36

제2편

<표 2-I-1> 일본 세관의 주요 역사	39
<표 2-I-2> 일본 관세국의 주요업무	43
<표 2-I-3> 일본 세관의 주요업무	45
<표 2-I-4> 일본 관세 관계법령 개요	47

<표 2-II-1>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	50
<표 2-II-2> 수입물품 납부세액 계산의 예	57
<표 2-II-3> 세관 관계 수수료 예시(2014년 기준)	58
<표 2-II-4> 통관업자 수수료 상한액(2012년 기준)	59
<표 2-III-1> 일본 관세율표 예시	61
<표 2-III-2> 일본 관세율 수준(2014년 기준)	64
<표 2-III-3> 일본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2014년 기준)	65
<표 2-III-4> 일본 산업별 관세율 수준(2014년 기준)	66
<표 2-III-5> 일본 관세의 종류	68
<표 2-III-6> 소액 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표(2014년 기준)	69
<표 2-III-7> 휴대품의 간이세율(2014년 기준)	71
<표 2-III-8>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	72
<표 2-III-9> 일본 EPA 현황(2014년 기준)	76
<표 2-IV-1> 일본의 유형별 관세 감면·환급제도	78
<표 2-V-1> 일본 외위법에 의한 수입규제	96
<표 2-V-2> 수입 규제 타 법령 일람표	98
<표 2-V-3> 일본 검역 규제 소관부처	105
<표 2-V-4> 수출 규제 타 법령 일람표	109
<표 2-V-5> 국내판매 단계 규제법 일람표	110
<표 2-VI-1> 일본의 보세제도	118
<표 2-VII-1> 일본 관세법상 주요 위반행위 처벌	132
<표 2-VIII-1> 일본의 AEO제도	138
<표 2-VIII-2> 일본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주요 쟁점	141

<표 2-VIII-3> 일본의 원산지 사전심사 답변 항목	142
<표 2-VIII-4> 일본의 원산지 사전심사 답변 항목	144

제3편

<표 3-I-1> 면세 수량을 초과한 휴대 별송 담배의 관세 등	150
<표 3-I-2> 일본의 세관과 관할 지역	151
<표 3-I-3> 수입신고 후 심사의 구분	160
<표 3-I-4> 관세 결정 청구 기간 등	163
<표 3-I-5> 가산세의 산출	164
<표 3-I-6> 납부기한 연장 제도	168
<표 3-I-7> 수입 자료의 의무 보존 기간	171
<표 3-I-8> 일반 수입신고 및 특례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NACCS의 경우)	173
<표 3-I-9> 예비 심사제도 개요	176
<표 3-I-10> 우편 수입 물품 배송 및 납세 방법	179
<표 3-I-1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2014년 기준)	182
<표 3-I-12> '과세가격 합계액 1만엔 이하의 물품'의 판단 기준	183
<표 3-II-1> 수출 면세 증명 서류	193
<표 3-II-2> 수출 자료의 의무 보존 기간	196

그림 목차

제2편

[그림 2-I-1] 일본 재무성 조직도	41
[그림 2-I-2] 일본 세관 소재	44
[그림 2-V-1] 일본 식품검역 절차도	102
[그림 2-V-2] 일본 식물검역절차	104
[그림 2-V-3] 일본 동물·식물·식품 등 검역절차 체계도	106

제3편

[그림 3-I-1] 일본의 수입 절차	152
[그림 3-I-2]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156
[그림 3-I-3] 실시간 계좌 이체 방식	166
[그림 3-II-1] 일본의 수출 절차	187
[그림 3-II-2]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190

제1편 개 관

I. 일반 개황¹⁾

일본(日本, Japan)은 동아시아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으로부터 서남으로 길게 이어진 섬나라이다. 국토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라는 4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이들 주변에 수천개의 작은 섬이 밀집해 있으며 수도는 도쿄(東京, Tokyo)이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 국토 전체 면적은 37만 7,915km²로 한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2만 9,751km에 이르고 굴곡이 심하다.

일본은 면적의 4분의 3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태평양 조산대와 지진대가 형성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며 태평양의 영향으로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에 속한다. 남북으로 긴 일본 열도는 가장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가장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위도 차이가 22도에 이르고 기온 차이는 16℃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하다. 일본의 연 강수량은 1,600~1,700mm에 이르러 세계적으로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756만명(2012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이며, 종교는 인구 다수가 신도(神道, Shintoism)와 불교를 믿으며, 그 외에 기독교, 기타 종교가 존재

1) 외교통상부, 『일본개황 2012』

2) 1都: 도쿄도, 1道: 홋카이도, 2府: 교토부, 오사카부, 43縣: 도호쿠 지방(6현), 간토 지방(6현), 주부 지방(9현), 긴키 지방(5현), 주고쿠 지방(5현), 시코쿠 지방(4현), 규슈 지방(8현)

한다.

일본어는 중국어의 영향으로 한자(漢字)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상당수의 어휘가 중국어에서 유래한다. 일본어를 글자로 표기할 때는 가나(假名)와 한자를 사용한다. 가나는 일본 고유의 글자로서 모두 50자이며 한자를 빌려 그 일부를 생략하여 만든 가타카나와 그 한자의 초서체를 따서 만든 히라가나가 있다.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황실의 대표인 천황(天皇)[일왕(日王), 또는 일황(日皇)]을 국가 원수로 한다.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인과 승인에 의해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등 일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 현재 천황은 1989년 제125대 일본 국왕으로 즉위한 아키히토(明仁)이다.

입법권이 국회(헌법 제41조)에, 행정권은 내각(동법 제65조)에, 사법권은 재판소(동법 제76조 1항)에 속해 있는 삼권분립 체제이며, 의원내각제를 취하여 삼권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내각부 및 12개청을 가지며, 내각 총리대신은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된다. 현재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제90대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아베 신조로 2012년 제96대 일본 총리로 재선출되었다.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242명)과 중의원(480명)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

화폐 단위는 엔(円, Yen)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달러는 97.6엔이다. 일본의 GDP는 2013년 IMF 기준 4조 9,015억달러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일본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이 71.4%, 제조업이 27.5%, 농업이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일본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 기계, 전자, 에너지 산업 등이다. 일본은 구리와 아연 등 소량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편이다.

II. 경제 개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경제 발전에 전념하여 1980년대에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2001년 말까지 장기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4.6%에 달했던 연평균 성장률이 버블 붕괴 이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는 0.9% 대로 하락했다.³⁾

장기적인 불황 탈출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다가,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각 해당 연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일본 경제는 다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외교통상부, 『일본개황 2012』, 2012.

1 주요 경제지표

〈표 1-1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대내 경제

구분	2010	2011	2012	2013
GDP(억달러)	54,954	58,970	59,640	50,072*
경제성장률(%)	4.7	-0.5	1.4	1.6
1인당 GDP(달러)	42,917	46,108	46,736	39,321*
재정수지/GDP(%)	-9.3	-9.9	-10.2	-9.5*
소비자 물가상승률(%)	-0.7	-0.3	-0.1	0.4
민간소비증가율(%)	2.8	0.3	2.0	1.9
종합주가지수(닛케이)	10,228	8,455	9,612	13,651
실업률(%)	5.1	4.6	4.3	4.0

주: *는 추정치

자료: KOTRA, IMF,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JETRO, 일본은행, 재무성, 한국수출입은행 등

2013년 일본의 대내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은 5조 7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는 39,321달러를 기록하였다. 201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GDP가 2013년 감소하였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1.6%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지속적인 실업률의 하락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11-2〉 일본 주요 경제지표: 대외 경제

구분	2010	2011	2012	2013
수출실적(백만달러)	767,025	820,793	801,334	719,229
수입실적(백만달러)	691,447	853,069	888,584	838,889
대외의존도(%)	25.9	27.5	27.4	35.2
무역수지(백만달러)	75,578	-32,276	-87,249	-119,660
외국인투자금액(백만달러)	-1,359	-1,702	-1,761	2,358
대외채무(십억엔)	210,844	243,856	261,107	295,172
외환보유고(억달러)	10,961.9	12,958.4	12,681.3	12,668.2
장기금리(%)	1.110	0.980	0.795	0.735
환율(엔/달러)	87.8	79.8	80.1	97.7

자료: KOTRA, IMF,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JETRO, 일본은행, 재무성,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외 경제지표 면에서는 외국인 투자 금액의 증가 등 긍정적 측면 이외에, 수출 실적의 감소 및 무역 수지 적자 폭의 증가, 대외 채무액 증가 등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엔화 환율 상승은 일본 내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시킬 수 있어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일본의 최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부터 수입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을 해외로 대체하기 위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오던 일본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적자폭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1-3〉 일본의 수출입 동향

(단위: 천달러,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3	719,204,861	-10.3	838,889,076	-5.6	-119,684,215
2012	801,334,629	-2.4	888,584,133	4.2	-87,249,504
2011	820,793,168	7.0	853,069,793	23.4	-32,276,625
2010	767,025,013	32.1	691,447,208	25.2	75,577,804
2009	580,786,595	-25.2	552,251,955	-27.0	28,534,640
2008	775,917,548	8.86	756,086,221	21.74	19,831,327
2007	712,734,968	10.11	621,084,093	7.21	91,650,874
2006	647,290,458	8.2	579,293,603	11.7	67,996,855
2005	598,215,206	5.9	518,637,785	14.1	79,577,421
2004	565,038,784	20.3	454,668,993	19.2	110,369,791

자료: JETRO(www.jetro.go.jp)

무역수지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수출 가격 요인이 플러스 1.2조엔, 수출 수량 요인이 마이너스 3.0조엔, 수입가격 요인이 마이너스 1.1조엔, 수입 수량 요인이 마이너스 1.4조엔을 기록하고 있는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자원가격 상승과 발전용 연료 수요 증가로 보이기 쉽지만, 요인 분석에서 보면, 수출 수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번 무역 적자의 큰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⁴⁾

4)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국가정보-일본-수출입동향,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jp/info/country.html?&cmmtPage=1&MENU_CD=M10009&REPLY_Y_TEXT=&MODE=&UPPER_MENU_CD=M10001&cmmtRowCountPerPage=5&BBS_ID=&CITEM_CD=102&MENU_STEP=2&UPPER_REPLY_ID=&REPLY_TEXT_RE=&REPLY_ID=&cmmtMODE=L&NATION_NM=%EC%9D%BC%EB%B3%B8&REPLY_TEXT_MO=, 2014. 8.(검색일: 2014. 11. 18.)

〈표 1-11-4〉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억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국가	수출액	비중 ¹⁾	국가	수출액	비중 ¹⁾	국가	수출액	비중 ¹⁾
1위	중국	1,614.67	19.7	중국	1,446.86	18.1	미국	1,331.98	18.5
2위	미국	1,256.73	15.3	미국	1,406.23	17.6	중국	1,298.51	18.1
3위	한국	658.62	8.0	한국	617.3	7.7	한국	568.82	7.9
4위	대만	506.91	6.2	대만	461.59	5.8	대만	418.84	5.8
5위	홍콩	428.27	5.2	태국	438.47	5.5	홍콩	375.82	5.2
6위	태국	373.99	4.6	홍콩	411.93	5.1	태국	362.19	5.0
7위	싱가포르	271.63	3.3	싱가포르	233.59	2.9	싱가포르	211	2.9
8위	독일	234.34	2.9	독일	208.66	2.6	독일	190.48	2.7
9위	말레이시아	187.13	2.3	인도네시아	203.37	2.5	인도네시아	171.37	2.4
10위	네덜란드	178.71	2.2	호주	184.86	2.3	호주	170.58	2.4

주: 1) 각 연도별 일본의 총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JETRO(www.jetro.go.jp)

일본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2013년 최대 수출 국가는 미국, 최대 수입 국가는 중국이었다.

2013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년도까지 수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제1위 수출 대상 국가였으나 2013년 미국으로의 수출 총액이 중국을 앞서면서 2위의 수출 상대국이 되었다. 수출에서 2위인 중국의 뒤를 이은 국가는 우리나라, 대만, 홍콩, 태국순이나, 미국 및 중국으로의 수출 금액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제3위 수출 대상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총수출에서 금액 기준으로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1-5〉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억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국가	수출액	비중 ¹⁾	국가	수출액	비중 ¹⁾	국가	수출액	비중 ¹⁾
1위	중국	1,834.87	21.5	중국	1,890.18	21.3	중국	1,821.91	21.7
2위	미국	742.3	8.7	미국	764.6	8.6	미국	703.22	8.4
3위	호주	565.92	6.6	호주	566.53	6.4	호주	513.57	6.1
4위	사우디	503.89	5.9	사우디	549.4	6.2	사우디	502.85	6.0
5위	UAE	427.16	5.0	UAE	441.23	5.0	UAE	428.52	5.1
6위	한국	397.01	4.7	한국	406.58	4.6	카타르	372.89	4.5
7위	인도네시아	339.7	4.0	인도네시아	323.93	3.7	한국	361.31	4.3
8위	말레이시아	303.85	3.6	대만	241.48	2.7	말레이시아	300.05	3.6
9위	카타르	300.57	3.5	말레이시아	329.75	3.7	인도네시아	290.78	3.5
10위	대만	231.68	2.7	독일	247.98	2.8	대만	238.78	2.9

주: 1) 각 연도별 일본의 총 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JETRO(www.jetro.go.jp)

수입 금액 기준으로 일본의 수입 상대 국가는 1위 중국, 2위는 미국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일본 전체 수입의 20%를 상회하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으로의 수입 금액이 미국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이제는 2위인 미국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입은 국가 순위로는 2013년 기준 7위로, 전년 대비 1순위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본 대지진 이후 다른 나라로부터의 연료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합친 총교역액을 기준으로 한 교역 순위는 1위가 중국으로 2013년 기준 연간 총 3,120억달러, 2위는 미국으로 총 2,035억달러, 3위는 우리나라로 총 930억달러를 일본과 수출입하였다.

〈표 1-11-6〉 2013년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단위: 억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자동차	1,072.8	-7.5	14.9	석유(Petroleum)	1,472.2	-4.3	17.6
2	철강 제품	391.1	-11.0	5.4	액화천연가스	730.2	-3.3	8.7
3	반도체 등	365.9	-12.9	5.1	의류 및 부속품	335.2	-0.6	4.0
4	자동차 부분품	358.3	-11.0	5.0	석유 제품	280.5	-9.3	3.3
5	유기화학물질	260.3	13.9	3.6	통신기기	276.6	2.3	3.3
6	동력발생장치	260	-8.5	3.6	반도체 등	251.7	12.5	3.0
7	가소성 물질	232.7	-9.4	3.2	석탄	238.2	-18.5	2.8
8	과학광학기기	228.9	-12.7	3.2	의료용 제품	220.9	-9.5	2.6
9	전기 장치	177.6	-13.1	2.5	컴퓨터 및 관련 제품	199.2	-3.8	2.4
10	광물성 연료	157.3	22.0	2.2	철광석 및 농축물	173.1	-9.9	2.1

자료: JETRO(www.jetro.go.jp)

2013년 일본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제품, 반도체 등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의류, 석유 제품 등이었다.

자동차가 일본 총수출 중 약 15%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철강 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분품은 각각 5%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2012년과 대비해 금액 기준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광물성 연료와 유기화학물질이었으나, 대부분의 주요 품목의 경우 수출이 감소세를 보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수입의 경우에는 석유가 총수입 중 1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액화천연가스가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연료의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통신기기와 반도체의 경우 수입이 증가하기도 했다.

3 외국인 투자 동향

2013년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외국기업의 대 일본 투자)는 일본으로의 유입액이 일본에서 유출된 금액보다 약 23.6억달러 많았다. 최근 2010년, 2011년 유출이 계속 되었으나 2012년 이후 외국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최근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 금액은 2013년 23.58억달러로, 17.61억달러였던 전년도와 대비해 34%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일본으로의 진출은 주재원 사무소, 지점, 자회사(일본 법인),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의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보보조금, 고급 인력에 관한 인센티브,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위한 특구 지정 등의 대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외 투자에 있어 일본은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350억달러,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224억달러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해외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전략을 신흥국으로 바꾸고, 대지진 이후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어 최근 들어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약 40%, 금융보험업에 11.6%, 도소매업에 15%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집중이 두드러진다.⁶⁾

5)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국가정보-일본-외국인투자동향,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jp/info/country.html?&cmmtPage=1&MENU_CD=M10009&REPLY_Y_TEXT=&MODE=&UPPER_MENU_CD=M10001&cmmtRowCountPerPage=5&BBS_ID=&CITEM_CD=102&MENU_STEP=2&UPPER_REPLY_ID=&REPLY_TEXT_RE=&REPLY_ID=&cmmtMODE=L&NATION_NM=%EC%9D%BC%EB%B3%B8&REPLY_TEXT_MO=, 2014. 8.(검색일: 2014. 11. 18.)

6)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의 해외 진출 전략 및 시사점」, 2013.06.

〈표 1-11-7〉 일본의 업종별 대내 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제조업	3,490	1,766	2,406	5,351	2,489
- 식료품	421	220	282	133	-221
- 섬유	-8	-95	124	22	6
- 목재, 펄프	-1	87	1	-3	7
- 화학, 의약	307	-2,859	774	1,537	-361
- 석유	-19	-144	-83	795	-44
- 고무, 피혁	6	5	6	45	10
- 글래스, 토석	-90	-138	-66	259	912
- 철, 비철, 금속	287	233	521	-4	50
- 일반기계기구	115	1,089	70	145	129
- 전기기계기구	1,705	-281	1,132	2,538	1,502
- 운송기계기구	469	3,359	252	-135	247
- 정밀기계기구	94	291	-251	39	-209
비제조업	8,349	-3,125	-4,108	-3,587	-131
- 농업, 임업	-5	9	-5	-10	3
- 수산업	1	0	-1	.	-
- 광업	-1	64	1	14	6
- 건설업	16	-1	-67	-34	-6
- 운송업	-90	197	-259	-5	216
- 통신업	619	-3,244	-2,748	-63	-101
- 도, 소매업	1,057	-229	1,588	-2,421	160
- 금융, 보험업	5,205	-1,503	-3,702	-1,383	641
- 부동산업	-71	216	-239	294	225
- 기타 서비스업	1,343	875	794	-244	-1,663
합계	11,839	-1,359	-1,702	1,761	2,358

자료: KOTRA(www.kotra.or.kr), JETRO(www.jetro.go.kr)

일본 내 외국의 대내 직접투자에 대해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2012년 53.5억달러, 2013년에는 약 25억달러 유입으로 꾸준한 직접투자가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기기계에 대한 투자 금액이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유출 폭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인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7.6억달러, 23.6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기도 했다.

〈표 1-11-8〉 일본의 국가별 대내 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시아	3,128	1,384	2,895	867
- 중국	314	109	72	140
- 홍콩	698	125	872	172
- 대만	21	111	366	186
- 한국	274	197	559	48
- 싱가포르	1,575	782	978	325
- 태국	9	-1	38	3
- 인도네시아	43	-1	-1	-92
- 말레이시아	184	51	-15	75
- 필리핀	-1	0	2	7
- 인도	4	9	19	18
북미	3,014	-3,120	-61	1,414
- 미국	2,961	-3,197	-110	1,378
- 캐나다	53	76	50	36
중남미	-7,724	-1,388	-1,955	-1,363
- 멕시코	-7,321	-248	.	-172
- 브라질	2	1	.	24
- 케이맨제도	616	-1,294	-1,953	-1,104

〈표 1-11-8〉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파나마	4	1	6	1
- 버뮤다제도	-1,000	116	-18	-23
- 영국령 버진제도	-3	81	26	-94
대양주	-17	90	125	376
- 호주	-6	89	123	366
- 뉴질랜드	-12	-1	-1	10
유럽	204	1,203	893	1,061
- 독일	2,206	18	449	10
- 영국	4,817	1,792	1,212	618
- 프랑스	1,128	3,438	-463	-645
- 네덜란드	-7,733	3	-435	537
- 이탈리아	163	11	-16	88
- 벨기에	-479	-556	-136	-235
- 룩셈부르크	381	-406	-4,426	1,279
- 스위스	51	69	5,033	-372
- 스웨덴	9	-262	-59	505
- 스페인	28	35	34	13
- 아일랜드	-406	502	867	-670
- 오스트리아	36	-21	-72	-56
- 러시아	·	·	-15	13
중동	0	142	-115	9
- 사우디아라비아	·	·	·	15
- UAE	0	28	0	2
- 이란	0	-1	·	-
- 이스라엘	0	105	-115	-8
아프리카	36	-13	-19	-8
-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
- 모리셔스	·	-5	·	1
전 세계 합계	-1,359	-1,702	-1,761	2,358

자료: JETRO 투자통계

일본에 대한 국가별 직접투자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투자금액이 제일 컸던 국가는 13.8억달러를 투자한 미국이었으며, 그 다음 12.8억달러를 투자한 룩셈부르크, 6.2억달러를 투자한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북미, 유럽의 순으로 투자액이 많았으며, 전년 대비 아시아로부터의 투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매년 차이가 있기는 하나 타지역에 비해 유럽에서 일본에 꾸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 다음의 제2위 수입 상대국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총수출 중 6~7%, 총수입 중에서는 10%가 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교역상대국 가이다.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3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7위의 수입 대상국으로 자리하고 있다(2013년 기준). 한일 간 총교역액을 기준으로 교역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가이며, 일본의 교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다음의 세 번째로 일본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이다.

〈표 1-Ⅲ-1〉 최근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 현황

(단위: 억달러, %)

순위	수출						수입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국가	금액	비중 ¹⁾	국가	금액	비중 ¹⁾	국가	금액	비중 ¹⁾	국가	금액	비중 ¹⁾
1위	중국	1,343.2	24.5	중국	1,458.7	26.1	중국	807.9	15.5	중국	830.5	16.1
2위	미국	585.3	10.7	미국	620.5	11.1	일본	643.6	12.4	일본	600.3	11.6
3위	일본	388	7.1	일본	346.6	6.2	미국	433.4	8.3	미국	415.1	8.1
4위	홍콩	326.1	6.0	홍콩	277.6	5.0	사우디아라비아	397.1	7.6	사우디아라비아	376.7	7.3
5위	싱가포르	228.9	4.2	싱가포르	222.9	4.0	카타르	255.1	4.9	카타르	258.7	5.0
6위	베트남	159.5	2.9	베트남	210.9	3.8	호주	229.9	4.4	호주	207.9	4.0
7위	대만	148.2	2.7	대만	157	2.8	쿠웨이트	183	3.5	독일	193.4	3.8
8위	인도네시아	139.6	2.5	인도네시아	115.7	2.1	독일	176.5	3.4	쿠웨이트	187.3	3.6
9위	인도	119.2	2.2	인도	113.8	2.0	인도네시아	156.8	3.0	UAE	181.2	3.5
10위	러시아	111	2.0	러시아	111.5	2.0	UAE	151.2	2.9	대만	146.3	2.8

주: 1) 각 연도별 전체 수출 또는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는 1965년 수립되었다. 당시 일본과의 연간 교역액은 약 2.2억달러(대일 수출 0.45억달러, 대일 수입 1.75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교역이 점차 활발해져 2011년도에는 대일 수출 396.8억달러, 대일 수입 683.2억달러로 한일 교역액이 사상 최대인 1,08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여 각각 346.6억달러 및 60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과 수입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이다.

〈표 1-III-2〉 한·일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

연도	대일 수출			대일 수입			무역수지	
	전체	대일	비중	전체	대일	비중	전체	대일
2009	3,635.3	217.7	5.9	3,230.9	494.3	15.3	404.5	-276.6
2010	4,663.8	281.8	6.0	4,252.1	643.0	15.1	411.7	-361.2
2011	5,552.1	396.8	7.1	5,244.1	683.2	13.0	308.0	-286.4
2012	5,478.7	388.0	7.1	5,195.8	643.7	12.4	282.9	-255.7
2013	5,596.3	346.6	6.2	5,155.9	600.3	11.6	440.5	-253.7

자료: KOTRA(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상 특징 중의 하나는 대일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 즉 한일 무역 역조 현상이며 이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대일 무역수지는 약 50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주요 대외 수출품인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등의 상당수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의 수입량도 많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⁷⁾

7)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국가정보-일본-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jp/info/country.html?&cmmtPage=1&MENU_CD=M10009&REPLY_TEXT=&MODE=&UPPER_MENU_CD=M10001&cmmtRowCountPerPage=5&BBS_ID=&CITEM_CD=102&MENU_STEP=2&UPPER_REPLY_ID=&REPLY_TEXT_RE=&REPLY_ID=&cmmtMODE=L&NATION_NM=%EC%9D%BC%EB%B3%B8&REPLY_TEXT_MO=

한편, 대일 부품소재 무역 적자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상반기 대일 부품소재 수입 의존도는 사상 최저수준인 21.0%를 기록하였다.⁸⁾

최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대일 수출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당시 주요 수출 품목 중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100%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했던 품목은 광물성 연료, 금속광물이었으며, 그 외 산업용 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의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1-Ⅲ-3〉 우리나라의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단위: 억달러, %)

순위 ¹⁾	품목명 ²⁾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96.8	40.8	388.0	-2.2	346.6	-10.7
1	광물성연료	86.7	137.7	86.6	-0.2	85.0	-1.8
2	철강제품	51.5	36.5	46.2	-10.2	37.0	-20.1
3	산업용 전자제품	37.6	50.2	43.7	16.1	32.6	-25.3
4	전자부품	39.3	-15.8	322.2	-18	28.3	-12.3
5	석유화학제품	18.3	35.8	19.1	4.4	17.9	-6.3
6	정밀화학제품	17.0	42.4	15.6	-7.7	14.7	-5.6
7	금속광물	20.5	120.4	15.1	-26.4	13.0	-13.7
8	수송기계	10.7	25.5	14.4	34.9	11.6	-19.5
9	농산물	11.6	29.1	12.0	3.1	10.7	-10.3
10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10.3	30.5	10.7	3.2	9.7	-9.1

주: 1) 2013년 수출 금액 기준

2) MTI 2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2014. 8. (검색일: 2014. 11. 18.)

8) 외교통상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2013.

2013년 한국의 대 일본 수출 금액은 346.6억달러로 2012년 대비 40억달러 이상 감소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로서, 이전 연도에 비해 수출 금액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수요로 꾸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제품과 3위인 산업용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일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III-4〉 우리나라의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단위: 억달러, %)

순위 ¹⁾	품목명 ²⁾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83.2	6.3	643.6	-5.8	600.3	-6.7
1	철강제품	113.0	2.2	104.8	-7.2	90.5	-13.7
2	전자부품	68.8	1	69.8	1.5	73.5	5.3
3	석유화학제품	53.8	16.3	55.9	3.8	67.2	20.4
4	기초산업기계	40.0	7.8	44.6	11.8	48.2	8.1
5	정밀화학제품	50.8	13.8	49.8	-2.2	44.9	-9.6
6	정밀기계	51.7	1.3	40.6	-21.5	28.4	-30.1
7	플라스틱제품	42.0	-1.3	39.3	-6.3	32.6	-17.0
8	산업용 전자제품	30.8	0.2	30.8	-	28.2	-8.4
9	수송기계	30.8	-4.1	26.5	-14	23.8	-10.2
10	중전 (heavy electric) 기기	22.3	6.2	18.9	-15.4	17.7	-6.0

주: 1) 2013년 수입 금액 기준

2) MTI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3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와 더불어 대일 수입 역시 전년 대비 43억달러 이상 감소하여 6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 한국의 대 일본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정밀기계 등의 품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석유화학제품과 기초산업기계,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 중 철강제품과 정밀기계의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주요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그동안 국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해 온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여 일본에서의 수입이 아닌 국내 생산체제로 전환된 효과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⁹⁾

9)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국가정보-일본-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jp/info/country.html?&cmmtPage=1&MENU_CD=M10009&REPLY_TEXT=&MODE=&UPPER_MENU_CD=M10001&cmmtRowCountPerPage=5&BBS_ID=&CITEM_CD=102&MENU_STEP=2&UPPER_REPLY_ID=&REPLY_TEXT_RE=&REPLY_ID=&cmmtMODE=L&NATION_NM=%EC%9D%BC%EB%B3%B8&REPLY_TEXT_MO=, 2014. 8.(검색일: 2014. 11. 18.)

IV. 자유무역협정 현황

일본의 무역 협정은 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PA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요소인 물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과 투자, 정부 조달, 양국 간 협력 등을 포함하여 체결되는 포괄적인 협정을 의미한다.

일본은 현재 총 13개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2015년 호주와의 EPA 발효를 앞두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무역체제(multilateral) 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던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bilateral) 통상정책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기조 변화는 2002년 일본-싱가포르 EPA의 체결로 본격화되었다.¹⁰⁾ 싱가포르와의 EPA 체결 이후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EPA를 추진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는 양자 EPA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에는 ASEAN 공동체와의 EPA를 타결했다. 일-ASEAN EPA는 2008년 12월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와의 공식 발효를 시작으로, 2009년 1월에는 브루나이, 2009년 2월 말레이시아, 2010년 7월에는 필리핀과의 공식 발효를 마쳤다.

이후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본은 스위스, 인도, 페루와도 EPA를 체결하여 발효가 완료된 상태이며, 2014년에는 일본의 14번째 EPA인 일본-호주 EPA가 타결되어 2015년 1월 15일 발효 예정이다.

10) 민경식, 「일본의 EPA 추진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06.

〈표 1-Ⅳ-1〉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현황(2014년 12월 기준)

기체결된 협정(발효일)	협상 중인 협정	검토 중인 협정
일본-싱가포르 EPA (2002.11)	일본-콜롬비아 EPA 일본-GCC FTA 일본-몽골 FTA 일본-캐나다 FTA 일본-호주 EPA ²⁾ 일본-한국-중국 FTA	일본-EU EPA 일본-TPP 일본-뉴질랜드 FTA 일본-대만 FTA 일본-미국 FTA 일본-한국 EPA
일본-멕시코 EPA (2005.04) ¹⁾		
일본-말레이시아 EPA (2006.07)		
일본-칠레 FTA (2007.09)		
일본-태국 EPA (2007.11)		
일본-브루나이 EPA (2008.07)		
일본-인도네시아 EPA (2008.07)		
일본-ASEAN EPA (2008.12 일부국가)		
일본-필리핀 EPA (2008.12)		
일본-스위스 EPA (2009.09)		
일본-베트남 EPA (2009.10)		
일본-인도 EPA (2011.07)		
일본-페루 EPA (2012.03)		

주: 1) 2012.04 개정의정서 발효

2) 2014년 타결되었으며, 2015년 1월 15일 발효 예정

자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한편, 한때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FTA는 2008년부터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이며, 이후 2012년까지 실무협의를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FTA에 대한 협상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참가국은 원칙적으로 분야를 불문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등 4개국 간에서 발효된 FTA(P4 협정)가 TPP의 전신이며, 2010년 P4 참가 4개국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을 포함한 8개국이 협상을 시작했고, 그 후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캐나다가 협상에 참가했으며, 일본이 2013년 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 국가는 총 12개국이 되었다.

〈표 1-N-2〉 TPP 협상 분야

분야	구분	세부 내용		
전통적 FTA	1	상품시장 접근	상품 교역 시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	
	2	원산지규정	관세 감면의 대상인 '원산지 품목' 인정 기준과 증명 제도 등	
	3	무역 원활화	무역규칙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4	서비스	서비스 교역	서비스 교역 시의 수량규제 금지, 무차별 원칙 등을 제정
	5		상용관계자의 이동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체제 절차의 간소화
	6		금융서비스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물
	7		전기·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 부여
비관세 분야	8	위생식품검역(SPS)	식품 안정 확보와 동식물의 질병 방지조치 관련 규정 마련	
	9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정	
	10	무역 구제조치(trade remedies)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 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11	정부조달	공공사업 발주 규칙	
	12	지식재산권	모방품, 해적판 단속	
	13	경쟁 정책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법, 정책의 강화, 정부 간 협력 등	
	1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환경 및 물 정비를 위한 원칙 등	
신분야	15	투자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무차별 원칙, 투자 분쟁해결 절차 등	
	16	환경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17	노동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금지	
	18	제도적 사항	협정운용 관련 기관 설치 및 기간의 권한 등	
	19	분쟁해결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따른 체결국 간의 분쟁해결 절차	
	20	협력	협정 합의사항의 이행 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21	협상 분야 간 포괄사항	복수의 협상 분야에 포괄되는 규제로 인한 무역장애 방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2014.08.

TPP 참여국의 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GDP의 39%, 인구는 8억명(세계의 12%)으로, 본 협정이 체결된다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PP 협상 참가국 중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TPP는 미-일 FTA로 평가되기도 한다.

협상 주도국인 미국은 2013년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협상 참가국 간 분야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간 농축산물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 및 신흥국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행정 조직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가. 일본 세관의 역사¹¹⁾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을 시작으로 개항한 이래, 1859년 나카사키, 가나가와 및 하코다테항에 세관의 전신이 된 ‘운상소’를 연 것이 세관의 시초가 되었다. 1886년에 세관관제를 제정, 1964년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¹²⁾)에 가입, 1978년에 최초로 항공화물 통관정보처리 시스템을 가동하

1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2014. 8. 1. 조회

12)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 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로,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 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 협약을 운용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고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 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고 2006년 특정수출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 세관은 국제무역사회의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세관 규모는 2003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 약 61% 증가, 세관인력 약 5% 증가, 세금징수 실적은 약 58.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

현재 일본세관의 주요 과제는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응하여 ‘무역 안전’을 실현하고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되, 향후 올림픽 개최 등 관광객 증가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 증가 등에 대응한 CIQ 체제와 치안대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항전입항보고제도와 지재권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가 무역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수출입정보처리센터(NACCS)의 통합 및 해외 국가 보급, AEO제도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통해 무역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¹⁴⁾

〈표 2-1-1〉 일본 세관의 주요 역사

연도	주요 역사
1858	미국(6월), 네덜란드(7월), 러시아(7월), 영국(7월), 프랑스(9월)와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59	하코다테, 카나가와, 나가사키 개항에 운상소 설치
1872	전국의 운상소를 ‘세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1886	세관 관제 제정
1890	관세법 세관 규칙 시행
1899	관세정률법 시행
1910	관세정률법 전부 개정(1911년 7월 시행)
1951	관세정률법 세율 개정
1954	관세법 전부 개정(7월 시행)
1955	일본의 GATT 가입 정식 발효

13) 관세청,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14) 관세청,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표 2-1-1〉의 계속

연도	주요 역사
1960	관세잠정조치법 시행
1964	관세협력이사회(CCC)에 가입
1967	통관법 시행
1978	항공화물통관 정보처리 시스템 (Air-NACCS) 가동
1991	해상화물통관 정보처리 시스템 (Sea-NACCS) 및 통관 정보 종합 관정 시스템 (CIS) 가동
2001	간이신고제도 도입
2006	특정수출신고제도 도입
2007	특정보세승인제도 도입
2010	Sea-NACCS와 Air-NACCS 통합(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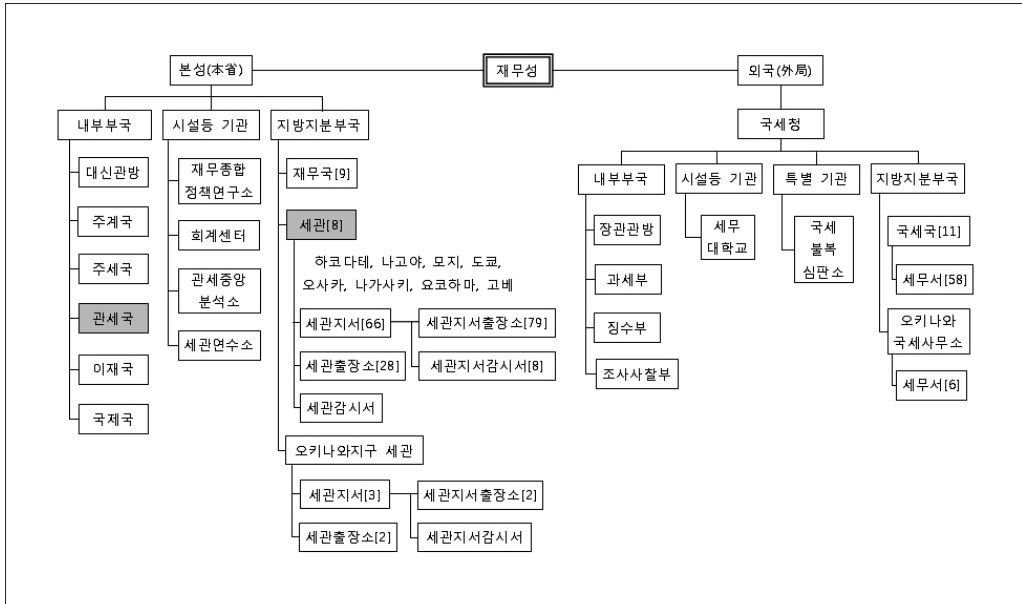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2014. 8. 1. 조회

나. 통관행정 조직

1) 재무성

재무성(財務省)은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며, 본성의 하위기관은 내부부국(内部部局), 시설등기관(施設等機關),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으로, 관세와 통관 행정을 주관하는 곳은 내부부국 산하 ‘관세국(關稅局)’과 지방지분부국 산하 ‘세관(稅關)’이다.

[그림 2-1-1] 일본 재무성 조직도



주: 2014년 7월 1일 기준
 자료: 일본 재무성 (www.mof.go.jp)

2) 관세국¹⁵⁾

관세국은 재무성의 하위기관인 내부부국으로 ① 총무과(總務課), ② 관리과(管理課), ③ 관세과(關稅課), ④ 감시과(監視課), ⑤ 업무과(業務課) 및 ⑥ 조사과(調査課)가 설치되어 있고, 산하에 세무 업무단위를 수행하는 실(室)을 두고 있다.¹⁶⁾ ‘세관연수원’과 ‘관세중앙분석소’를 두고 있다. ‘과’는 정령에 의해 설립된 부서이며 산하의 ‘실’은 성령에 의해 설치된다. 내부지침 성격의 훈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세관조사실’의 ‘관세국제협상 전문관’ 및 ‘관세정책전문관’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

각 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총무과에서는 관세 등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와 관세국·세관 정원, 예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총무과 산하의 ‘사무관리실’에

1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z-kikou.htm>, 2014. 8. 1. 조회

16) 2012년 기준으로 17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서는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센터, 주식회사에 관한 사무와 세관의 소장 사무에 관한 전산기 처리에 관한 조사·기획·조정을 한다.

관리과에서는 세관 직원의 인사·교양 훈련직원관리를 수행하여 산하에 ‘세관관리실’에서 세관 사무의 운영, 직원의 복무를 지원한다.

관세과에서는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기획·입안과 관세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사항의 조사 연구, 관세·외환 등 심의회와 관세 분과회의의 사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국제협상, 국제협력에 관한 참서관을 둔다. 국제협상 분야의 참서관실에서는 경제 협력 및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에 관한 사무,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사무, 지역 협력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과 관세협력이사회 관련 업무와 외국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와 외국 무역동향을 조사하는 등 무역 관련 연구도 병행한다. 국제협력 분야의 참서관실에서는 관세 등에 관한 다자 간 협정 및 양자 간 협정의 기획과 입안을 하며, 관세국의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을 수행한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기획 및 입안을 ‘경제협력실’, 특수관세조사를 ‘특수관세조사실’과 세관행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는 ‘세관조사실’을 두고 있다.

감시과에서는 주로 공항 및 세관에서 국경 안전을 단속하는 곳으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등의 관세법규 준수 여부 등의 화물관리와 보세구역 운영, 개항과 세관 공항에 관한 사무와 기타 여객 및 승무원 휴대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징수한다.

업무과는 수출입 신고의 위법 여부와 관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주관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소비세 등의 부과와 징수,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의 허가과 승인, 관세 등의 불복청구와 사전심사 등을 처리한다. 기타 우편물의 수출입관리와 세액 징수, 통관업을 대행하는 통관업자의 감독, 통관업 허가과 통관사 시험을 주관한다. 업무과 산하에는 ‘지적재산조사실’을 두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우범 화물을 조사한다.

조사과에서는 주로 사후적인 법규단속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입화물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의 적정성을 조사하거나 수출화물의 조사, 검사, 관세법규 관련 범칙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이외에도 주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 세관당국 등과 정보를 교류하거나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한편, 세관연수원에서는 재무부 직원에 대한 세관행정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고

관세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을 주관한다. 관세중앙분석소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등을 수행한다.

〈표 2-1-2〉 일본 관세국의 주요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총무과	사무관리실	• 관세, 내국소비세 등 정책 일반과 관세국·세관 정원, 예산에 관한 사무
관리과	세관관리실	• 세관 직원의 인사, 훈련
관세과	참서관실 (국제협상/국제협력)	•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기획·입안 • 관세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사항의 조사 연구 •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의의 사무에 관한 사무
	경제협력실	
	특수관세조사실	
	세관조사실	
감시과		• 화물 검사, 보세구역 관리 •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등에 관한 관세 등의 부과 징수
업무과		• 관세, 내국소비세 등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요건 확인, 불복청구 처리 • 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자의 감독, 통관사 시험 주관
	지적재산조사실	
조사과		• 관세 법규 범칙 사건의 조사, 처분 • 정보의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연락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z-kikou.htm>, 2014. 8. 1. 조회

3) 세관¹⁷⁾

세관 행정은 총기, 불법 약물 등의 밀수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테러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사회의 실현’과 국제수입의 약 10% 상당을 징수하는 세입청으로서 ‘적정하고 공정한 관세 등의 징수’와 국제물류의 보안을 확보하면서 통관을 가속화하는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세관은 재무성의 지방지분부국으로, ① 하

1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yotsu/map/index.htm>, 2014. 7. 1. 조회

코다테, ② 도쿄, ③ 요코하마, ④ 나고야, ⑤ 오사카, ⑥ 고베, ⑦ 모지와 ⑧ 나가사키의 8개 세관 외에도 ⑨ 오키나와 지역세관(地区税関)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1-2] 일본 세관 소재



주: 2014년 7월 1일 기준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yotsu/map/index.htm>)

본부세관은 세관의 소관 사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총무부(総務部), 선박, 항공기의 감시, 수출입화물의 검사 등을 단속하는 감시부(監視部), 수출입화물에 관한 심사, 허가 및 승인을 담당하는 업무부(業務部)와 수출입화물의 조사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등을 수행하는 조사부(調査部)로 구성된다. 산하에 지서(支署)와 출장소 및 감시서를 두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¹⁸⁾

18)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관 지서 69개소, 세관 출장소 및 세관 지서 출장소 111개소 및 세관 감시서 및 세관 지서 감시경찰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8,7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1-3〉 일본 세관의 주요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세관	총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의 소관 사무의 종합 조정 • 회계,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 직원의 임용·복무·인사 및 급여 • 직원의 복리후생 • 세관 홍보
	감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항공기 감시 단속 • 여객 승무원의 휴대 등 단속, 검사 및 부과금 • 수출입화물에 관한 검사 • 보세지역 등의 허가 또는 승인 및 단속
	업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화물에 관한 심사, 허가 및 승인 • 수입화물에 관한 관세 등의 세율의 적용, 확정 및 징수 • 수출입화물의 분석 감정 • 국제 우편물의 검사 및 부과금 • 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체의 감독 및 통관사 시험
	조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화물 조사 • 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 • 정보관리 및 분석 • 무역 통계의 작성
지서		• 주요 개항·세관 공항 등에서 세관 업무를 수행
출장소		• 업무 수요가 비교적 밀집해 있는 지역에 설치하고 주변 업무를 분담
감시서		• 불개항의 선박의 입항화물의 인도, 하역 등의 감시 단속을 실시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z-kikou.htm>, 2014. 8. 1. 조회

이밖에도 일본의 내각 조직 가운데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의 기관은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수입신고 전에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통관 관련 법률

가. 관세 관계법령

‘세금’에 관하여 규정한 대표적인 법은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과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 수징법(輸徵法), FTA(EPA), FTA 원산지증명법이 있다. 관세정률법은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세금 계산기준(과세표준 등), 감면, 환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세잠정조치법은 국내산업보호 또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다. 수징법은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輸入品の内国消費税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의 약칭으로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부과대상, 납부, 면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일본은 불완전한 관세 철폐로 인해 완전한 의미의 FTA가 되지 않는 협정인 EPA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단일한 이행법을 두지 않고,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 및 이의 적용절차」는 조약을 직접 적용(관세법 제3조 단서)하고, FTA 국가에 대한 긴급관세 및 관세할당에 대하여는 관세잠정조치법에서 규정(제7조의 8, 제8조의 6)하고 있으며,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에 관하여는 경제산업성 소관의 「경제연계협정에 의거한 특정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産地証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에서 규정한다.

‘통관’에 관하여 규정한 대표적인 법은 관세법(關稅法)과 통관업법(通關業法), NACCS법이 있는데, 관세법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허가 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통관업법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통관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세사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NACCS법은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의 약칭으로 세관 업무뿐만 아니라, 동식물 검역, 사람 및 운송수단의 출입국 관리 업무 등도 함께 처리하는 관계 정부부처 통합정보시스

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⁹⁾

〈표 2-1-4〉 일본 관세 관계법령 개요

구분		내용
세금 관련 법령	관세정률법	• 과세표준, 기본/간이세율, 평가, 특수관세, 감면, 환급
	관세잠정조치법	• 잠정세율,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특혜관세, 감면
	수징법	• 각종 소비세의 부과, 납부, 면제 등
	FTA(EPA)	•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신고 및 검증
	FTA 원산지증명법	• 원산지증명 및 검증
통관 관련 법령	관세법	• 수입금지, 관세부과,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허가, 벌칙 등
	통관업법	• 세관 통관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운영
	NACCS법	• 경제산업성의 수출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이상은 물품) • 후생노동성(사람+식의약품) 및 농림수산업성(동식물)의 검역 • 법무성의 출입국관리(사람) 및 국토교통성의 입출항 업무 (운송수단) 처리를 위한 단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도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p. 117~118.

나. 관세 관계법령 개정절차²⁰⁾

1) 관세법 개정 요구

국내 관계자(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이해 관계자도 포함)에서의 관세법 개정 요구 내용은 요구사항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접수한다.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 개정 요구 내용은 외무성에서 접수하여 소관 부처에 전달한다.

요구사항을 소관하는 부처는 국내 관계자 등과 외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성에 매년 8월 말까지 관세

19)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도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p. 116~117.

20)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702_jr.htm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

2) 개정 요구사항의 심의

재무성은 보통 9월부터 관계부처와 관세 개정 요청한 사항 협의 등을 실시하여 개정의 시비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관세율의 개정 기타 관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조사 심의 등을 실시하는 재무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관세·외환 등 심의회’를 두고 있다.

9월경부터 관세·외환 등 심의회, 재무성의 심의기구인 ‘관세 등 불복심사회’ 소속 ‘관세분과회’, 재무성 관세국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경에 다음 연도의 관세 개정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관세개정 논점 정리’).

3) 세제개정안 마련

재무성은 관세·외환 등 심의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관세를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세목별 세제개정의 주요 내용과 징수계획 및 국세와 지방세의 예상 증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정안을 마련한다. 세제개정안은 내각부(内閣府)²¹⁾의 조세제도에 관한 심의기관인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 the Tax Commission)’²²⁾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법안 제출

관세 정률법 등의 개정 법안은 1월부터 2월경에 내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심의, 표결을 거쳐 가결된 법률은 성립 및 공포된다.

21) 내각부는 재무성, 외무성 등의 각 부처 이외에 내각에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획, 종합뿐만 아니라 내각 및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통계위원회 등 중요 정책회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음

22) 내각총리 대신의 자문에 따라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총리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

Ⅱ. 과세가격과 납부세액 산정

1 과세가격

관세는 수입신고 시 화물의 성질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가세 제품,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종량세 제품이라고 하며, 가격과 수량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종량세 제품이라고 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가세 물품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자, 관세율과 함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물품의 수출원가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운송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본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관세정률법 제4조의 1내지 3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원칙적인 방법(제1방법)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제2방법)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또는 제조원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1내지 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제6방법)하게 된다.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수입화물에 대한 거래에 관해 매수인이 그 수입화물을 위해 지불한 또는 지불할 가격(현실지불가격, 現實支払價格)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보험료, 포장 비용 등의 가산요소 금액을 추가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가산요소는 관세정률법 제4조에 크게 5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표 2-11-1〉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

가산요소
①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료 기타 수수료 - 당해 수입물품의 용기 - 당해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③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과 관련, 구매자에 의해 무상 또는 할인되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수입화물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등 - 생산에 사용된 공구, 주형 등 -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 기술, 디자인 등
④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 거래를 위해 구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
⑤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으로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

자료: 관세정률법 제4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단, ①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수입화물이 ‘수입 거래’에 의하지 않은 경우, ③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해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본 거래 이외의 화물거래 수량이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취지의 조건 등,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

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²³⁾가 있는 경우로, 당해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수입 거래’에는 무상 수입화물, 위탁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화물, 판매자의 대리인에 의해 수입된 후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따라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화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화물, 보낸 사람의 소유권이 존속하는 대여화물, 동일한 법인격을 갖는 본지점 간의 거래로 수입되는 화물, 일본에서 폐기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폐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입되는 화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보충 설명과 추가 자료에도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나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실제에 지불한 가격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다.

23)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조의 8)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령상 인정된 동업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용자인 경우(고용관계)
 ③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관한 의결권 있는 사외주식의 5%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
 ④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반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⑤ 제3자에 의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사외주식이 직·간접으로 각각 5% 이상 소유 또는 관리되거나 소지되는 경우
 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받는 경우
 ⑦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간접 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나. 원칙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1)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및 제3방법)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 수출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및 운송거리 또는 운송형태 등이 수입화물과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내 재판매 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동종 또는 유사 물품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5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당해 수입화물 또는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가격에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일반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 운임과 보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및 관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4방법)
-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에 수입물품과 동류의 물품이 일본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와 관련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5방법)

3)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위의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방법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다. 평가신고제도(評價申告制度)

1) 평가신고의 개요

관세평가와 납세신고에 있어, 신고서에 첨부되는 송장과 운임명세서 등 만으로는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세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신고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입거래에 관한 송장의 가격과 실제 지불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송장, 운임명세서 등에 의해 금액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수입거래로, 당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거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수입거래에 의한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이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다만, 관세가 무세(면세)이거나 종량세 적용 대상인 경우, 납세신고에 따른 화물의 송장당 과세가격의 총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다.

2) 평가신고의 유형(개별 및 포괄신고)

평가신고의 종류에는 수입(납세)신고 시 마다 평가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별신고와, 동일한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 및 특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동일한 내용인 경우 포괄적으로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포괄신고가

있다. 평가신고는 개별신고가 원칙이지만 포괄신고를 통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포괄신고는 포괄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서상 기재된 기간(최대 2년) 동안 개별 납세신고 시의 평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포괄신고 시 평가신고서 2부(원본과 교부용)를 수입물품의 수입예정지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포괄신고는 매번 통관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화물의 인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입 부호를 취득하고 있는 신고자의 경우 NACCS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발급한 포괄평가신고수리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단, 포괄신고 시 유의사항은 신고한 가산요소에 대해 감가상각이 종료된 때와 예정보다 거래가 일찍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포괄평가신고를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요소만큼의 관세·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철회는 ‘평가(포괄)신고서 기재 사항의 일부 변경신고(세관양식 C 제5320호)²⁴⁾’를 사용하여 포괄신고서를 제출했던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신고서는 세관의 수입 사후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포괄신고서와 관련된 통관서류인 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등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한 수입화물, 항공화물, 개인 사용 물품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대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 전, 수입화물에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화물에 변질 또는 손상이 없었던 경우의 과세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에 의해 감소된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항공 운송화물 중 무료 샘플이나 재난 구호화물, 공중위생 유지, 기타 이에 준하는 목적을 위해 긴급 수입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화물 등에 대해서는 항공료가 아닌 일반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4) 관세법과 관련된 세관양식은 C, 관세정률법과 관련된 세관양식은 T, 관세감정조치법과 관련된 세관양식은 P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에서 언급되는 모든 세관양식 C는 다음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htm#c9000, 세관양식 T는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T.htm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입국자의 휴대품이나 기증 물품 등 수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수입거래가 소매단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화물이 통상의 거래 도매단계에서 수입된 경우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등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등

1) 소비세

수입화물에는 관세 이외에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과세된다.

내국 소비세 중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로,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며 일본 내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와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된다.

현행 소비세율은 8%이며,²⁵⁾ 이 8%의 소비세율은 6.3%가 국세소비세, 1.7%가 도도부현²⁶⁾민세인 지방소비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수입되는 유가증권 등, 우표류, 장애인 물품과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CIF 가격에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와 관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5) 종전 5%에서 8%로 인상됨(2014. 4. 시행)

26) 都道府県: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현재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県)이 있음

2) 기타 내국소비세²⁷⁾

소비세 이외의 기타 내국소비세에는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석유석탄세, 지방도로세 등이 있다.

주세는 주세법에 의해 술의 종류에 따라 1kl당 최저 20,000엔 내지 최고 390,000엔까지 차등적인 종량세가 부과된다.

담배세는 담배세법 및 담배특별세법에 의해 제조담배에 부과되며, 궐련 1,000개피당 담배세는 특정 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5,302엔, 그 외의 사람이 수입하는 경우 11,424엔이 부과되며, 담배특별세는 820엔이다.

휘발유세는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에 의해 휘발유에 부과되며, 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를 합하여 1kl당 53,800엔이다.

석유가스세는 석유가스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용 석유가스 용기에 충전된 석유가스에 부과되며, 1kg 당 17엔 50전이다.

석유석탄세는 석유석탄세법 원유 및 유제품, 가스상 탄화수소 및 석탄에 부과되며,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 2,040엔/kl, 가스석탄화수소 1,080엔/MT, 석탄 700엔/MT이다.

나.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종가세 물품의 관세의 과세표준을 CIF 가격으로 하므로, ‘거래가격+운임+보험료’를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과세표준에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 종량세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의 수량에 단위당 관세액을 곱하면 된다.

소비세는 국세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나누어 계산한다. 즉, 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소비세율인 6.3%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이렇게 산출된 소비세액에 대해 지방소비세 부분인 63분의 17(소비세율 환산 1.7%)을 곱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일본은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관세 과세가격에서는 100엔 이하를, 기타 세액 계산

27)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31.

에 있어 10엔 이하는 절사한다.

〈표 2-II-2〉 수입물품 납부세액 계산의 예

구분	계산 방법
A 품목 CIF 가격: 534,795엔 관세율: 14%	$534,000 \times 0.14 = 74,760\text{엔}$ (단수처리 전) ... ① $\Rightarrow 74,700\text{엔}$ (단수처리 후) $534,795 + 74,700 = 609,495\text{엔}$ $\Rightarrow 609,000\text{엔}$ (소비세 과세표준) $609,000 \times 0.063 = 38,367\text{엔}$ (단수처리 전) ... ② $\Rightarrow 38,300\text{엔}$ (단수처리 후)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38,300 \times 17/63 = 10,334\text{엔}$... ③
B 품목 CIF 가격: 123,258엔 관세율: 14%	$123,000 \times 0.14 = 17,220\text{엔}$ (단수처리 전) ... ①' $\Rightarrow 17,200\text{엔}$ (단수처리 후) $123,258 + 17,200 = 140,458\text{엔}$ $\Rightarrow 140,000\text{엔}$ (소비세 과세표준) $140,400 \times 0.063 = 8,820\text{엔}$ (단수처리 전) ... ②' $\Rightarrow 8,800\text{엔}$ (단수처리 후)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8,800 \times 17/63 = 2,374\text{엔}$... ③'
총세액	관 세 액 : ①+①'=91,980엔 \Rightarrow 91,900엔 소 비 세 액 : ②+②'=47,187엔 \Rightarrow 47,100엔 지 방 소 비 세 액 : ③+③'=12,708엔 \Rightarrow 12,700엔

자료: www.customs.go.jp

다. 통관 관련 수수료

1) 관세법상 세관 관계 수수료

관세법 제100조에서는 비개항 출입 및 보세장치장·보세전시장 허가 등에 대해 수료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에서는 증명 서류의 교부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여 근거를 두고 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세관 관계 수수료령(税関関係手数料令)」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11-3〉 세관 관계 수수료 예시(2014년 기준)

(단위: 엔)

		구분	금액	NACCS로 신청 시
일반	증명서류 또는 통계 열람	증명서류 1장당	400	300
		기록매체 1권 또는 기록매체 1장 마다	23,500	-
화물 검사	지정 지역 회 화물 검사 허가 수수료	1시간당	5,000	4,700
		구분	금액	정기항공운송 사업에 제공되는 것
입출항 관계	비개항 출입 허가 수수료	외국무역선 순톤수 1톤당	36	-
		외국무역기 자중 1톤당	500	250
		구분	금액(월)	허가 받은 자가 지정관리자인 경우(월)
보세·제조 공장 관계	보세장치장, 보세전시장 허가수수료	500㎡ 미만	9,500	9,400
		2,000~3,500㎡	21,800	21,700
		25,000~35,000㎡	54,800	75,400
		70,000㎡ 이상	88,700	88,000
	보세공장 허가수수료	2,500㎡ 미만	6,800	6,700
		5,000~10,000㎡	13,600	13,500
		20,000~40,000㎡	32,800	32,600
		70,000㎡ 이상	54,800	54,400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2) 통관업자 수수료

한편, 수출입 수속을 위해 통관업자에게 통관 대리를 의뢰한 경우라면,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관 관계 수수료 외에 통관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업자가 업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요금의 최고액은 재무 대신이 정한다.

〈표 2-11-4〉 통관업자 수수료 상한액(2012년 기준)

(단위: 건, 엔)

통관 업무의 종류			요금
수출신고	일반신고		5,900
	소액화물 간이신고		4,200
수입신고	신고납부	일반신고(예비 신고 포함)	11,800
		소액화물 간이신고	8,600
	부과과세	일반신고	10,500
		소액화물 간이통관	7,800
수입허가 전 물품 반출 신청			5,100
보세장치장 반입 신청			7,000
보세공장 입고 신청			7,000
보세전시장 장치 승인 신청			7,000
종합보세구역 반입 신청			7,000
외국화물선(기)용품 적재신고			5,100
외국화물 운송신고			5,100
기타 신고·신청			1,300
제신고 또는 허가승인서 사본 작성			200
할증료 ¹⁾			요금의 50%

주: 1) 수정신고, 경정청구, 분할신고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분석·품목분류·환급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경우, 기존 요금에 추가할 수 있음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p. 149~150.

Ⅲ. 관세율제도

1 개요

가. 관세율표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는 1983년 무역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여 상품분류의 국제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System, HS협약)」을 채택하였다.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국제품목분류표인 HS코드를 정한다. 1988년 HS협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 또한 관세율표와 함께 수출입 통계목적의 통계품목표도 전면 개정하여 같은 해부터 사용하고 있다.

HS코드는 2단위 숫자로 표시되는 21개의 부(Section), 4단위로 표시되는 97개의 류(Chapter) 및 5,052개 항목의 6자리의 숫자로 표시되는 호(heading)가 국제공통 단위이다. 각국에서는 6단위 이후의 숫자인 소호(subheading)를 고유 목적에 의해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일본은 9단위 품목번호를 사용한다.²⁸⁾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²⁹⁾에 공개되어 있으며, 최근 관세율표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관세율을 계기하고 있다. 아래 제6401호를 예로 들어보

28) 6단위 호 가운데 임의채용호인 전기에너지는 더 이상 전기에너지의 수출입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29)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index.htm

면, HS 코드 6단위와 함께 일본에서 사용하는 9단위 품목번호를 함께 표시하며, 기본세율, 잠정세율, WTO 협정세율, 특혜세율과 특별우대 세율 및 EPA 세율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품명’란에 HS코드 6단위와 9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이 표시되고 관세율은 9단위 품목번호에 대해서만 표시된다. 이 관세율표상에 나타난 기본세율, 잠정세율 등 여러 관세율 가운데 관세율의 적용순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해당 품목의 관세율로 한다.

〈표 2-Ⅲ-1〉 일본 관세율표 예시

통계번호		품명 (Description)	관세율			관세율(EPA)		
번호 (HS code)	기본 (General)		잠정 (Temporary)	WTO 협정 (WTO)	특혜 (GSP)	특별 우대 (LDC)	멕시코 등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의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 리베팅, 네일링, 스크루잉, 플러깅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갑을 바닥에 고정 또는 조립 물건을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 (toe-cap)을 넣은 신발						
	010	스키부츠	27%		(27%)			
	080	기타	20%		6.7%			무세
6401.92		발목을 덮는 것 (무릎을 덮는 것을 제외한다)						
	010	스키부츠	27%		(27%)			
	080	기타	20%		6.7%			무세
6401.99		기타	20%		무릎을 덮는 것 6.7%, 기타 8%			무세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나. 관세의 부과 방법

관세는 관세정률법 제3조에 따라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율은 별표에 의한다. 수입물품 가운데 철광석, 양모, 면화, 사진용 필름, 타이어, 기계류 등 일부는 면세가 적용되며, 관세정률법상 35% 정도를 차지한다.

1) 종가세와 종량세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율 적용방법을 ‘종가세’라고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대부분 관세율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는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관세 부담이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관세액도 변화 인플레이션에 적응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물품의 적절한 가격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관세액도 낮아져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종량세는 수입품의 개수, 양, 무게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종량세는 세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세율이 불균등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종가와 종량세를 결합한 세율을 혼합세라고하며, 여기에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선택세와 종가·종량세를 병합한 복합세가 있다. 선택세는 동일한 물품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하고, 그중 세액이 높은 세율(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을 부과한다. 과세가격이 높은 구간에서 종가세가 낮으면 종량세가 적용되므로 관세의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현재 모직물, 달걀 노른자, 생선, 납 합금 덩어리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에 일정한 종가를 추가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유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고, 일부 면직물은 종가세와 복합세 및 선택세가 적용되어 있다.

2) 특수한 형태의 관세

가) 차액관세

수입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과 일정 수준의 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수입품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나) 슬라이드관세

현재 양파, 구리 덩어리, 납괴 등 국제 시황의 변동이 심한 물품은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 관세는 무관세가 되는 구간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액이 감소해 나가는 구간(슬라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관세라고 한다.

다)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 관세이다. 계절 관세의 목적은 국산품의 돌기시기가 계절에 치우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이와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산품의 보호를 도모하고, 다른 계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라) 관세할당제도

관세할당제도는 일정한 수량 이내의 수입품에 한해 무세 또는 낮은 세율(기본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저렴한 수입품의 제공을 확보하는 한편, 이 일정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1년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국내 산업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자유화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채택되었다.

일정 수량 이내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수입 수량 제한과 비교하면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실행세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WTO는 원칙적으

로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세할당제도는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14년도 현재, 자연 치즈, 가죽 및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라 관세화된 雜豆, 곤약 감자 등 20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품목에 따라 상반기 및 하반기) 정령으로 수량을 정하고 있다.

마) 특수관세

특수관세는 WTO 협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불공정 무역거래 및 수입 급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국의 산업을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긴급관세(세이프 가드) 등이 있다. 기타 각 경제연계협정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가 있다.

2 관세율 수준

2013년 평균 MFN관세율은 평균 4.7%이며, 농산물의 관세율은 19%,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2.5%로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가중평균 하면 전체 품목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2.1%, 제조업 제품에 대해서는 1.2%의 관세율을 형성하고 있다.

〈표 2-III-2〉 일본 관세율 수준(2014년 기준)

(단위: 천만달러)

관세율	기준연도	전체품목	농수산업	제조업
단순평균	2013	4.7%	19%	2.5%
가중평균	2012	2.0%	12.1%	1.2%
수입액	2012	873.7	66.2	807.5

자료: WTO · ITC · 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4』, 2014, p. 93,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4_e.pdf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 양허관세율 기준으로 34.1%, MFN 실행관세율 기준으로 35.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55.9%, 55.7%로 무관세 적용품목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세율분포를 살펴보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0%에서 10% 사이의 관세율이 약 30%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제조업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다음으로 약 25% 정도의 품목에 대해 0%에서 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표 2-Ⅲ-3〉 일본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2014년 기준)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34.1	18.7	15.7	8.2	10.5	6.4	2.2	4.1
	2013년 MFN 실행관세	35.9	17.7	16.7	7.2	10.4	6.0	0.9	4.5
	2012년 수입액	47.1	13.1	14.6	8.5	7.8	8.8	0.0	0.1
제 조 업	WTO 양허관세	55.9	25.7	15.2	2.0	0.4	0.3	0.0	0.1
	2013년 MFN 실행관세	55.7	26.2	15.3	2.1	0.3	0.3	0.0	0.1
	2012년 수입액	82.9	9.6	5.9	1.4	0.1	0.1	0.0	0.0

자료: WTO · ITC · 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4』, 2014, p. 93,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4_e.pdf

WTO에서는 2012년 HS 코드 기준으로 산업별 제품을 농산물과 비농산물로 구분하여 평균관세율을 산출하는데, 농산물 제품에는 산 동물, 육류를 원재료로 한 소시지 등 가공식품, 과일, 채소, 커피 등 차, 곡물, 종자, 설탕 및 과자류와 음료, 담배, 면제품과 기타 농산물이 포함되며 비농산물 제품에는 농산물 제품을 제외한 기타 수산물, 광물 및 화학제품, 목재, 의류, 가죽, 신발 등 의류제품, 철강, 원자로 등 기계류와 전자기기 및 승용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등 제조업 제품들이 분류된다. WTO 양허관세율 기준으로는 낙농제품이 98%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

되고 있고, 곡물 및 기타 조제품이 66%로 그 뒤를 이었다. 낙농제품은 실행관세율 135.3%, 최대치 537%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며, 곡물류는 52%의 실행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비농산물 가운데는 가죽, 신발류 품목에 대해 WTO 관세율 10%, 실행관세율 10.1%가 가장 높은 세율로서 의류제품도 9%로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 한편 면제품과 비전기기계, 운송기계에 대해서는 무관세율이 100%로 전자기기의 무관세품목 비율이 95.5%인 것에 비해 광범위하게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표 2-III-4〉 일본 산업별 관세율 수준(2014년 기준)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기준	
	평균	무관세	무관세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동물제품	12.3	45.7	153	11.0	46.6	153	1.5	2.5
낙농제품	98.0	0	537	135.3	6.3	537	0.2	26.9
과실 및 채소류	9.3	19.6	269	11.6	19.5	269	1.2	14.3
커피, 차	13.8	22.2	150	15.4	22.2	150	0.4	60.5
곡물 및 그 가공품	66.0	8.2	736	52.0	17.5	736	1.4	69.0
종자, 기름	8.1	46.2	451	9.1	46.1	451	0.8	76.9
설탕 및 과자류	42.3	7.3	148	25.2	10.0	88	0.1	69.3
음료, 담배	15.9	19.1	43	14.4	31.1	43	1.2	67.4
면제품	0.0	100.0	0	0.0	100.0	0	0.0	100.0
기타 농산물	4.7	66.5	341	5.2	67.6	284	0.7	71.4
어류 및 수산물	4.9	4.9	12	5.7	3.2	15	2.1	3.8
광물, 금속	1.0	69.9	10	1.0	70.4	10	24.0	94.4
석유제품	6.9	54.2	127	0.9	71.8	8	21.0	93.2
화학제품	2.3	37.4	7	2.2	38.8	7	8.8	60.3
원목, 종이제품	1.0	78.8	10	0.9	80.6	10	2.8	69.8
직물	5.5	7.6	25	5.4	8.1	25	1.8	7.4
의류	9.2	0	13	9.0	1.8	13	3.7	2.5
가죽, 신발 등	10.0	50.3	404	10.1	54.1	403	1.7	42.5
비전기기계	0.0	100.0	0	0.0	100.0	0	7.4	100.0
전기기계	0.2	95.5	5	0.1	97.8	5	10.6	99.8
운송기기	0.0	100.0	0	0.0	100.0	0	3.3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1.1	77.0	8	1.2	75.7	8	5.2	91.1

자료: WTO · ITC · 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4』, 2014, p. 93,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4_e.pdf

3 관세의 종류

가. 개요

일본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따라 국내법에 규정된 관세율과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을 따르는 국제협정관세로 나눌 수 있다.

관세율을 규정한 국내법으로는 「관세정률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이 있다. 관세정률법에는 장기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신속통관을 위해 일괄적으로 정한 간이세율 및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상계관세, 덤핑방기관세 등이 규정되며 법별표에 기본세율과 간이세율을 계기하고 있다. 관세잠정조치법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관세할당, 특별긴급관세 등의 잠정세율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 등에 대해 특혜를 공여하는 목적으로 적용하는 특혜관세 등을 규정한다.

한편, WTO 협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양허)하는 WTO 양허세율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해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EPA세율 등은 국제조약을 비준절차를 통해 국내법에 수용하여 적용하는 국제협정관세에 속한다.

〈표 2-III-5〉 일본 관세의 종류

세율의 종류	근거법
편익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관세정률법 제5조 내지 9조의 2
EPA 세율	EPA
개발도상국 특혜관세(GSP), 최빈개발도상국(LDC) 특혜관세	관세잠정조치법
잠정세율: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관세할당	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제7조의 3~7
기본세율	관세정률법, 법 별표1
간이세율	관세정률법 제3조의 2, 제3조의 3, 법 <별표2>

자료: 연구자 작성

관세율의 적용 순위³⁰⁾는 동일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잠정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기본세율 또는 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협정세율이 기본세율 또는 잠정세율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또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EPA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의 적용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EAP 세율을 적용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의 적용원칙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잠정조치법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특혜 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

나. 관세의 종류

1)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관세정률법 <별표1>에 품목별로 규정된 관세율로, 우선 적용되는 다른 세율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30)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3-1(세율의 적용 관계)

2) 간이세율(簡易稅率)

관세액 산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또는 소액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수입자가 간이세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간이세율은 관세정률법 <별표2>에 게재되어 있다.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³¹⁾의 일반 수입화물 및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과는 별도로 정해진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품목 분류를 크게 6가지와 주류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표 2-Ⅲ-6> 소액 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표(2014년 기준)

	품목	관세율
1	알코올 음료 (1) 와인 (2) 소주 등의 증류주 (3) 와인 냉각기(와인 쿨러), 청주, 사과주 등	¥ 70/ℓ ¥ 20/ℓ ¥ 30/ℓ
2	(1) 토마토 케첩, 기타 토마토 소스, 아이스크림과 기타 병과 (2) 무두질 또는 마무리한 모피(드롭 스킨)와 모피제 의류, 의류 부속품과 기타 모피 제품	20%
3	(1) 커피와 차(홍차 제외) (2) 젤라틴 및 아교 (3) 무두질 또는 마무리한 모피(드롭 스킨 제외)	15%
4	(1)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 육과 식용 설육 물고기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용의 물성 생산품 (2) 식용야채, 뿌리 및 괴경 (3) 식용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 및 멜론의 껍질 (4) 생강(일시적 보존처리 한 것에 한함) (5) 식용 해초 기타 조류 (6) 고기, 물고기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7) 각종 조제 식료품 (8) 구연산 등 (9) 대나무제의 빗	10%

31) 2014.4.1.부터 10만엔에서 20만엔으로 상향 조정됨

〈표 2-III-6〉의 계속

	품목	관세율
4	(10)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및 바구니 세공물 및 나뭇가지(枝條) 세공물 (11) 견직물 (12)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및 그 직물과 종이 원사 및 그 직물 (13)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4)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	
5	(1) 살아있는 나무, 기타 식물 및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2)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또는 광물성 왁스 (3) 무기화학 및 귀금속, 희토류 금속, 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4) 유기화학품(구연산 등 제외) (5) 무두질 액기스, 염색 액기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 기타 착색제, 페인트, 바니쉬, 퍼티,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유,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세제, 조제 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택제,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모델링 페이스트,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6) 각종 화학 공업 생산품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 모피와 인조 모피 및 이들의 제품 (9)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및 산업용 방직 섬유 직물류 및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 제품 (10) 우산,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회초리) 및 이들의 부분품, 제조우모, 우모제품, 조화(造花) 및 인발제품(人髮製品) 돌,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11) 유리 및 그 제품(유리구슬 등을 제외) (12) 구리 및 그 제품, 니켈 및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13) 납 및 그 제품 (14) 아연 및 그 제품 (15) 비금속 및 서메트 및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 숟가락 및 포크와 이들의 부분품, 각종 비금속 제품 (16) 가구, 침구, 매트리스 등 (17) 완구, 유희 용구 및 운동 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6	(1)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 (2) 소금, 황(硫黃), 토석류, 플라스틱, 석회 및 시멘트 (3) 의료용 젤 (4) 고무 및 그 제품 (5) 종이 및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6) 도자제품 (7) 철강 (8) 철강제품 (9) 주석 및 그 제품	면세
7	이전 각 호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것	5%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과세 처리를 위해 마련된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표 2-Ⅲ-7〉 휴대품의 간이세율(2014년 기준)

구분	품목	세율
주류	위스키, 브랜디	600엔/ℓ ¹⁾
	럼, 진, 보드카	400엔/ℓ
	리큐어, 소주	300엔/ℓ
	기타(와인, 맥주 등)	200엔/ℓ
기타(관세가 무세의 것을 제외)		15%
권련(담배세 및 담배 특별세)		11.5엔/개비 ²⁾

주: 1) 인상 전 500엔/ℓ(2014년 4월부터 인상됨)

2) 인상 전 11엔/개비(2014년 4월부터 인상됨)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다만, 관세가 무관세인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벌칙이 적용되는 물품 및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넘는 것과 미곡(쌀), 식용 김, 파인애플 제품, 곤약 감자, 켈런 이외의 담배, 엽총 등 기타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상품의 전부에 대해 간이세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간이세율 적용 배제 물품에는 일반 상업회물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표 2-III-8〉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

주요 품목 예																									
1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물품																								
2	범죄에 관련된 물품																								
3	<p>국가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간이 세율에 의한 것이 적당하지 않은 화물</p> <table border="0"> <tr> <td>(1) 우유, 크림 등</td> <td>(2) 잡두(雜豆)</td> <td>(3) 곡물</td> </tr> <tr> <td>(4) 곡식 등</td> <td>(5) 땅콩과 곤약 감자</td> <td>(6) 돼지 고기 및 쇠고기</td> </tr> <tr> <td>(7) 코코아 조제품</td> <td>(8) 곡식 가루·곡물 조제품</td> <td>조제품</td> </tr> <tr> <td>(10) 담배</td> <td>(11) 정제 소금</td> <td>(9) 조제 식료품</td> </tr> <tr> <td>(13) 멘톨</td> <td>(14) 원피·가죽</td> <td>(12) 석유</td> </tr> <tr> <td>(16) 고치·생사</td> <td>(17) 니트 제 의류</td> <td>(15) 가죽</td> </tr> <tr> <td>(19) 신변용 세화류(細貨類) (비금속 제외)</td> <td>(20) 가죽제의 휴대용 시계</td> <td>(18) 신발</td> </tr> <tr> <td></td> <td>밴드</td> <td>(21) 가죽제의 의자 부분품</td> </tr> </table>	(1) 우유, 크림 등	(2) 잡두(雜豆)	(3) 곡물	(4) 곡식 등	(5) 땅콩과 곤약 감자	(6) 돼지 고기 및 쇠고기	(7) 코코아 조제품	(8) 곡식 가루·곡물 조제품	조제품	(10) 담배	(11) 정제 소금	(9) 조제 식료품	(13) 멘톨	(14) 원피·가죽	(12) 석유	(16) 고치·생사	(17) 니트 제 의류	(15) 가죽	(19) 신변용 세화류(細貨類) (비금속 제외)	(20) 가죽제의 휴대용 시계	(18) 신발		밴드	(21) 가죽제의 의자 부분품
(1) 우유, 크림 등	(2) 잡두(雜豆)	(3) 곡물																							
(4) 곡식 등	(5) 땅콩과 곤약 감자	(6) 돼지 고기 및 쇠고기																							
(7) 코코아 조제품	(8) 곡식 가루·곡물 조제품	조제품																							
(10) 담배	(11) 정제 소금	(9) 조제 식료품																							
(13) 멘톨	(14) 원피·가죽	(12) 석유																							
(16) 고치·생사	(17) 니트 제 의류	(15) 가죽																							
(19) 신변용 세화류(細貨類) (비금속 제외)	(20) 가죽제의 휴대용 시계	(18) 신발																							
	밴드	(21) 가죽제의 의자 부분품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3) 특수관세

가) 개요

특수관세란 불공정한 무역거래 및 수입 급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생산자·공급업자 등을 지정하여 일반 관세 외에 할증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또는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한다.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등 불공정 무역거래 및 수입 급증 등으로 국내 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무부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조사실에서 국내산업에 미친 실질적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스페인, 중국, 남아프리카산 이산화망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보복관세는 미국산 베어링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나) 보복관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차별대우에 의해 일본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WTO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이 승인하거나,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해당국가 및 화물을 지정하여 보복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에

의한 세율 이외에 당해 화물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다)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과 동종화물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본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당해화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액과 동일한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며, 당해 보조금을 받은 화물의 수입이 일본의 해당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은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부과하여야 한다.

라)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일본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한다. 당해 화물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5년 이내의 기간 내 수입되는 덤핑방지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2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년간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부과된 적이 있다.

마) 긴급관세

외국에서 가격하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 종류의 물품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화물 또는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업계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 경제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물품 및 4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편익관세

관세에 대한 조약의 특별규정에 의해 편익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이익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³²⁾

4) 잠정세율

잠정세율은 단기적인 경제사정 등의 관점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로, 수입을 억제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세잠정조치법에 세 가지 종류,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및 관세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가) 특별긴급관세(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3, 제7조의 4)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일정 기준량을 초과하거나(제7조의 3), 수입가격이 일정 기준액 이하로 떨어진 경우(제7조의 4, 슬라이드관세)에 원래의 관세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잠정조치법 수입 수량이 수입 기준수량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에 대하여 기준수량을 별표 제1의 4에 제기하고 있고, 과세가격이 발동 기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의 7에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우유, 크림, 요구르트, 버터, 콩류, 쌀, 쌀가루, 보리, 밀, 곡분 등이다.

나) 관세긴급조치(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5, 제7조의 6)

신선, 냉장 및 냉동 소고기에 대해서는 발동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별표 제1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잠정세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돼지, 설육, 햄, 베이컨 등 돼지고기 등은 발동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기준 수입가격(별표 제1의 3)보다 낮게 수입된 경우 잠정관세율표 제1의 8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 관세할당(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5)

관세할당은 수입물품의 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수량을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

32) 2013년부터 적용되는 편익관세는 부탄, 바하마, 바티칸, 나우루,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이란,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등의 국가를 지정국으로 함

역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다. 현재 맥아, 천연치즈, 옥수수, 곤약 등 154개 품목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5) 특혜관세(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경제개발도상국 가운데 특혜관세의 수혜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해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잠정세율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특혜 관세는 수입이 증가하거나 이와 동종 물품 또는 용도가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고 해당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 기간,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6) WTO 협정관세

WTO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로서 같은 품목에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이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7) EPA 관세

일본은 2014년 7월 현재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인도네시아, 페루, 스위스 등 13개국과 EPA가 발효되어 있고, 호주와 서명된 상태이며 한국, GCC,³³⁾ 몽골, 캐나다, EU, RCEP,³⁴⁾ TPP³⁵⁾ 등과는 협상 중이다.

33) GCC(걸프협력이사회) : 아랍 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

34)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일본,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협상에 참여

35)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참여

〈표 2-III-9〉 일본 EPA 현황(2014년 기준)

구분	EPA 체결 상대국
발효	싱가포르(2002. 11.), 멕시코(2005. 4.), 말레이시아(2006. 7.), 싱가포르 개정 의정서(2007. 9.), 칠레(2007. 9.), 태국(2007. 11.), 인도네시아(2008. 7.), 브루나이(2008. 7.), ASEAN(2008. 12.), 필리핀(2008. 12.), 스위스(2009. 9.), 베트남(2009. 10.), 인도(2011. 8.), 페루(2012. 3.), 멕시코(2012. 4.)
서명(미발효)	호주(2014. 7.)
협상 중	한국, GCC,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EU, RCEP, TPP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yotsu/kokusai/torikumi.htm>, 2014. 7. 31. 조회

IV. 감면 및 환급

수입화물에는 관세정률법 별표 등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만, 수입 화물이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관세의 경감,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정책적인 요청과, 국제 관행 등의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관세 감면·환급제도는 크게 두 가지, 관세정률법에 규정된 항구적인 것과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한 잠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필요와 국제 관행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영구적 감면제도는 관세정률법 제 10조 내지 제20조의 3에 규정되어 있고, 잠정적 감면제도는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한다. 관세환급은 감면여세제도(減免戻税制度) 중 하나로 여세(戻税)제도에 해당되며, 대체로 관세정률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같은 제도는 없으며, 극히 일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사전에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³⁶⁾

감면제도는 기간, 용도를 제한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조건부 감면제도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되며, 조건부 감면에는 품목을 제한하는 제한적 조건부 감면과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 조건부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36)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39.

〈표 2-Ⅳ-1〉 일본의 유형별 관세 감면·환급제도

유형	대상물품	
영구감면(관세정률법)		
무조건 감면	수입 전·후로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감세 또는 환급(제10조)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법 제12조)	
	무조건 면세(제14조 제1호~제8호, 제16호~제18호)	
	재수입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다가 재수입된 화물(제11조)
		무조건면세(제14조 제9호~제11호, 제13호, 제14호)
		재수입감세(제14조의 2)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법 제14조의 3)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법 제16조)	
과세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면세(제19조의 2)		
조건부 감면 (일반)	특정용도 면세(법 제15조)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법 제16조)	
	재수출 면세(법 제17조)	
	재수출 감면(법 제18조)	
조건부 감면 (제한)	제조용 원료의 감면(법 제13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의 감면(제19조)	
환급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제10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의 환급(제19조)	
	과세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제19조의2)	
	원상태 수출 환급(제19조의 3)	
	계약위반으로 인한 원상태 수출 및 폐기로 인한 환급(제20조)	
임시감면(관세잠정조치법)		
무조건 감면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한 수출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조건부감면 (제한)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자료: 일본 관세국(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감면 또는 환급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사전신고 또는 경감, 면세 및 환급 신청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세의 감면제도

가.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

1) 변질, 손상 등의 경우 감세(법 제10조, 령 제2조 내지 제3조의 4)

수입화물이 수입허가 또는 승인 전 또는 수입허가 후 보세지역에 장치된 중에 변질,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정상물품과 가치감소분에 대한 과세형평을 위하여 관세를 경감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경감 또는 환급하는 관세액은 당해화물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소에 따른 가격의 저하분에 해당하는 관세액과 변질 또는 손상 후의 성질 및 수량에 따른 관세액과의 차액 가운데 많은 금액으로 하며, 멸실된 화물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관세의 감세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품목번호, 품명 및 수량, 변질 또는 손상의 원인과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입증하는 서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화물의 감세(법 제11조, 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되어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경감하는 관세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허가시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한 과세가격에서 기타 감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 및 환급, 과세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환급,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뺀 가격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가공 또는 수리용 수출화물에 대해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때에 수출하는 취지 및 그 수입 예정시기 및 예정지를 수출신고서에 기입하고, 당해화물의 성질 및 형상 기타 그 재수입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와 가공에 대해서는 그 가공을 하기 어려운 이유, 당해화물의 수출신고가격 계산의 기초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하는 때에는 수출허가서, 가공 또는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 당해화물의 수출허가 시 성질 및 형상에 의한 과세가격,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계산의 기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법 제12조, 령 제5조의 4)

물가안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및 동종 국내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수입되는 쌀, 전나무, 보리 또는 밀, 돼지고기 및 식료품, 의류 기타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탄력관세라 할 수 있다. 과세가격에 국내운송비용을 더한 금액이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비싼 경우 또는 흉작, 천재지변, 사변 기타 비상외의 경우에 운영한다.

4) 제조용 원료의 감면(법 제13조, 령 제6조 내지 제13조)

수수, 옥수수, 호밀, 바나나 분말, 설탕 등 곡물사료와 땅콩기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땅콩 등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어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관세액을 감면한다. 제조공장은 위치, 구조, 승인기간, 경감대상 원료명, 제품명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건부 감면으로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및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를 하거나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종료 및 제조 원료의 검사를 위한 수량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조용원료의 관세 감면은 수입신고 시에 품명, 수량, 제조기간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5) 무조건 면세(법 제14조)

외교관행 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제공한다. 일본의 국가원수 및 수행원, 외교관용 물품,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기증한 물품,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브로셔, 포스터 등, 상업용 견본, 일시입국자 또는 내국민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가운데 개인 용도 또는 직업상 필요한 물품, 재외공관에서 송부한 공용물품, 일본에서 수출된 컨테이너, 조난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체부품 또는 의장품, 장애인용 물품,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만엔 이하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세를 적용한다.

6) 재수입 감세(법 제14조의 2, 령 제16조의 5)

재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또는 이 법의 재수출 감면으로 인해 관세의 감면, 환급을 받은 관세를 초과하는 관세액을 감면하여 준다.

7)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법 제14조의 3, 령 제16조의 7)

일본 선박에 의해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며, 수입시에 가공 또는 제조 이전의 성질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 또는 제조 이전의 성질 및 수량에 부과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경감할 수 있다.

8) 특정용도 면세(법 제15조, 령 제17조 내지 26조)

특정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허용한다. 특정용도 면세를 적용받은 자는 2년 내에 다른 용도에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허가서, 제공하고자 하는 용도, 양도 사유, 양수인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용도의 사용신고를 하고 화물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공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 종교용 물품, 기증품 등 상업적 거래가 아닌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학교, 박물관, 전시장, 연구소, 시험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진열용 표본 또는 학술연구용품, 교육용 물품 등, 자선 목적 또는 구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 및 국제 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및 종교단체에 기증된 물품 및 국제적십자사에서 기증하는 것으로 일본 적십자사가 직접 의료에 사용할 것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되는 물품, 항공 또는 항해에 필요한 안전부품, 일본에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 전부터 사용하던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이산화물 및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의 원인에 관한 조약', '핵융합 에너지 공동 연구 실시에 관한 일본정부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 간의 협정' 등 기타 조약에 의해 특정용도에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9)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법 제16조, 령 제27조 내지 제30조)

외교관용 화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한다.

일본 주재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 물품, 재일 외국 대사, 공사, 영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직원이 수입하는 물품 등을 외교관용 화물 등으로 한다.

10) 재수출 면세(법 제17조, 령 제31조 내지 제39조)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물품과 기간을 지정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거나 면세허가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 면제 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면세받은 물품을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각, 채색 또는 인쇄, 금속을 도금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수출물품의 포장용 물품, 추가가공이 필요한 모피 및 모피제품, 감광성 필름의 현상, 보석의 연마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 등이 필요한 물품 또는 가공용 원재료 등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을 가공용 면세화물로 지정한다.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의 용기로 사용되는 물품, 보석, 사진기 등 체류기간과 물품의 성질,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인정하는 일시 입국자의 면세 휴대품, 조약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광고용 필름, 관광 홍보자료, 전시회, 박람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되거나 사용되는 물품 등은 재수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선원 후생용품은 6개월로 한다.

11) 재수출 감면(법 제18조)

일반적으로 대차계약 또는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로서 2년 또는 5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를 징수하며 기간 내에 수출하는 때에 수입허가서 또는 재수출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의 감면(법 제19조, 령 제47조 내지 제54조의 12)

수출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입허가 후 2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원료의 관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조건부 감면으로, 용도 이외의 용

도에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및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를 하거나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생산종료 및 제조 원료의 검사를 위한 수량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또한 동종의 원료제품을 혼용하는 경우에 법정 수량 한도 내에서 수출화물 제조용 원재료의 수량으로 간주한다.

감면대상 원료는 납을 이용한 합금제품에 사용되는 납, 정제설탕, 각설탕의 제조용 설탕, 전분 캐러멜 또는 설탕 캐러멜 제조용 매니옥 전분 등 정령에 규정된 수출화물과 각 제조용 원료에 한정하며, 감면율도 2.5% 내지 12.5%로 정해져 있다.

나. 잠정조치법상 감면제도

1)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및 이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발사 및 추적에 사용하는 장비, 기타 우주개발용 물품 및 이 물품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로서 일본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면제를 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에는 즉시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용도에 제공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2)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법 제18조, 령 제20조 내지 제24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특정 제품을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관세에서 수출허가 시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한 과세가격과 당해 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적용대상 제품은 제4202호의 케이스, 가방 가운데 케이스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인 것, 제57류의 양탄자류, 제61류 내지 제63류의

의류와 섬유제품 등 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또한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공 또는 조립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재에 염료, 유지, 플라스틱, 고무 등 기타 물질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 물리적 수단에 의한 표면 가공 등에 한한다.

2 관세정률법상 환급제도

관세정률법상 규정되어 있는 환급 제도는 ‘변질, 손상 등의 경우 감세 또는 환급 등(관세정률법 제10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 감세 또는 환급 등(동법 제19조)’,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 수출 시 면세 또는 환급 등(동법 제19조의 2)’,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 되는 경우 환급 등(동법 제19조의 3)’,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세금 환급 등(동법 제20조)’ 조항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가. 변질, 손상 등의 경우 감세 또는 환급 등

수입화물이 수입허가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이러한 변질·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비율을 기준으로 그 관세를 경감해 준다.

그런데 수입허가를 받은 화물이 수입허가 후 계속 보세지역(또는 허가를 받아 화물을 보세지역 밖에 둔 경우는 그 장소)에 있는 동안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멸실 또는 변질, 손상된 경우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본 환급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종료된 후 즉시 당해 재해 등에 의해 멸실 또는 변질, 손상된 화물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가격, 관세액, 수입허가의 연월일 및 수입허가서의 번호, 해당 화물이 있던 장소, 피해 상황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수입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확인한 세관장은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한다.

변질, 손상으로 인해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

서와 함께, 수입허가서 또는 증명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금액, 그 계산의 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에 대한 세금 환급 등

수출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품 중 특정 물품³⁷⁾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조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이 중 환급은 원료 제품을 수출 화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하여 수출 화물을 원료 제품의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관세를 환급받을 원료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물을 수출 시기에 제조보고서(또는 제조 증명서)를 수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본 제조 화물의 수출허가를 한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한 화물 제조보고서 또는 화물 제조증명서(이하 세금 반환용 서류)에 수출허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 연도의 분기마다 해당 분기에 수출한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제품에 관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각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두 달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당해 환급대상 원료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물의 품목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출허가 세관장 또는 수출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의 액수 및 그 산출의 근거
- 해당 분기에 수출한 화물 및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제품의 품명과 수량

다.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 수출 시 면세 또는 환급 등

수출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세관장

37) 글루타민산 소다, 정제 설탕, 리신, 정제포도당 등(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7조)

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입허가 후 2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원료의 관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과일잼, 마멀레이드, 청량음료, 과일통조림, 가당 분유, 가당 연유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로 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라.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 등

관세 및 소비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으로 국내에서 사용 등을 하지 않고 수입 시의 성질,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것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본 환급을 받고자 하는 화물은 수입신고 시, 동일 상태로 재수출 환급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해당화물의 재수출 예정시기 및 예정지, 당해 화물의 성질과 형상 기타 재수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관장은 화물의 성질과 형상 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면에 확인 취지를 기재하여 다시 교부한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당해 화물의 수출신고 시, 그 품명과 수량, 수출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수입 시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서면, 해당 화물의 수입허가서 또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세금 환급 등

수입한 화물 중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할 때 당해 물품이 수입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 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폐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 개인용도 물품으로 통신 판매로 판매된 것이며, 품질 등이 수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반송 또는 폐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 수입 후에 법령(이에 근거한 처분 포함)에 의해 그 판매, 사용 또는 그것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수출 또는 수출을 대신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1) 위약품 등 재수출 후 환급

위약품 등을 재수출에 의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화물을 먼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위약품 등 보세지역 반입신고서(세관양식 T 제1630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이 확인되면 ‘위약품 등 보세지역 반입신고 수령서’가 교부된다.

단, 가격이 20만엔 이하의 위약품 등을 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위약품을 세관에 제출한 것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한다.

위약품 등의 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절차와는 다른 ‘위약품 등의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감액·공제) 신청서(세관양식 T 제1640호)’ 2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위약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용도에 제공하는 물품으로 통상 판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카탈로그, 주문, 송장 등)
 - 수입 후 법령 등에 의해 판매나 사용, 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홍보 사본)
- 수입허가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우편의 경우 수입허가서,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증명서)
- 위약품 등 보세지역 반입 신고서(우편물의 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경우 또는 우편물의 사전 검사를 받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경우 제외)

2) 위약품 등의 폐기에 따른 환급

위약품의 경우 수출하는 대신 폐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 승인하에 폐기한 경우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위약품 등을 폐기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약품 등을 재수출 후 환급과 같이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위약품 등 보세지역 반입신고 수령서’를 교부받아 ‘멸각(폐기) 승인신청서(세관양식 C 제3170호)’ 2부에 상기 증명서류(위약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외에 폐기가 불가피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 폐기 확인을 받는다.

그 다음 ‘위약품 등의 폐기에 따른 관세환급(감액·공제) 신청서(세관양식 T 제 1660호)’ 1부에 폐기물 확인을 받은 ‘멸각(폐기) 승인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3) 개인 수입된 통신판매 물품 반송 환급

개인 사용을 위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으로,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경매 등의 통신 판매로 구입한 물품이 예기치 않은 품질인 경우 등으로 반송 또는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위약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 반송 전에 세관에서 소정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통신판매 구매 물품을 우편으로 반송하는 경우의 절차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르며 20만엔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우편물의 가격이 20만엔 이하

일본 우편주식회사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시하고 사전 검사를 받는다.

- 위약금 등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감액·공제) 신청서(세관양식 T-1640) 2부
- 개인 용도에 제공하는 물품이 통신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카탈로그 및 납품서의 사본) 각 1부
- 국제 우편물 과세통지서 또는 수입허가서 1부
- 수입 인보이스(수입허가서 등에 의해 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부

그 후 우체국에 물품을 접수하여 우편물 수령서를 받고, 여기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검사를 받은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나) 우편물의 가격이 20만엔 초과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의 반송처인 구입처, 통신판매 회사 및 판매자 등을 수화인으로 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사전 검사를 받은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사 시 해당 세관에 수출신고의 취지를 신청해야 한다.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 우편물을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여 우편물 수령서를 받는다.

수출신고를 한 세관에 우편물 수령서를 제시하고 수출허가서를 받은 후, '위약금 등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감액·공제) 신청서(세관양식 T 제1640호)', 통신 판매 입증자료 등 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환급제도

관세법에 규정된 환급(제13조 내지 제13-4조)은 납부한 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돌려주는 과오납금의 환급방법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수 관세(特殊關稅) 중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가 보조금액 또는 덤핑 판매 차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당해 초과 부분의 금액에 대해 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관세에 과다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 등을 과다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은 경정 또는 부과결정에 따라 해당 관세를 납부한 날 등 관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날부터 환급 지급 결정일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 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에 연 7.3%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단, 과오납금이 만엔 미만인 경우와 환급가산금이 천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의 과오납 및 관세관계법률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시효를 가진다.

나. 특수 관세 환급

특수 관세 중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가 보조금 또는 반덤핑 판매 차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당해 초과 부분의 금액(필요 환급액)에 상당하는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 청구를 하려는 수입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상계 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의 금액과 계산의 기초를 기재한 환급 청구서에 환급액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 계산 기간 동안 외국의 생산자가 해당 국가의 수요자에게 판매한 화물의 판매 가격에 대한 증거
- 계산 기간 동안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화물의 생산자의 간접비, 이윤 등에 관한 증거
- 기타 환급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수입자로부터 환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은 환급액의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청구액을 한도로 하여 상계 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를 환급하거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등 특수 환급은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수입허가 날짜에 따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³⁸⁾

38) 상계 관세의 경우, 통상 1년간의 수입분에 대해 그 다음 3년간을 환급 청구 기간으로 해왔으나 (예: 2008.1.1.~2008.12.31.수입분의 경우 환급 청구 기간은 2009.1.1.~2011.12.31.까지) 이러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관세국의 통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V. 수출입규제

통상적으로 수입규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조절하는 관세규제와 관세 이외 통관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수입을 불허하는 등의 비관세규제로 나눌 수 있다. 통관단계에서의 수입 규제는 관세법에 열거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불허하는 수입금지가 가장 엄격하고, 통관단계에서 각종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가하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제한은 다시, 근거법령에 따라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위법(外爲法)’)과 소관부서가 재무성이 아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등의 기관으로 세관에서 품목별로 해당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소관품목인 공산품 외에도 외위법에 의거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입 할당, 멸종위기 동식물 종에 대한 수입승인 등 무역규제 종합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⁹⁾

1 수출입 금지

수출입금지물품은 관세법 제69조의 2 내지 제71조에 열거된 물품으로, 수출입금지화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이 금지된다.

주로 마약류, 총기, 폭발물, 화약류, 위조화폐,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

39)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28.

장권, 상표권, 저작권, 유사저작권, 육성자권) 침해물품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물품 등이 수출입금지물품에 해당한다. 수출입금지화물로 의심되는 화물은 수출입금지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의심화물로 결정된 것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2 외위법에 의한 수출입규제

외국환 거래의 관리와 수출입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위법은 제52조와 하위법령인 「수입무역관리령」, 「수출무역관리령」 및 경제산업성 고시(수입공표)에 의해 구체적인 규제대상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⁴⁰⁾와 안전보장무역심사과⁴¹⁾에서 주관하고 있다.

외위법에서 규정하는 수입규제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금지하나 일정 수량의 범위 내에서 할당(Import Quota)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할당,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2호 승인제도, 원산지 또는 선적지를 불문하고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2호의 2 승인제도와 통관 전에 품목별로 소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확인제도 및 수입통관 단계에서 소관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통관시 확인제도가 있다.

가. 수입할당제도(Import Quota)

수입할당제도는 천연자원 또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 가능한 수량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⁴²⁾로, 대상품목은 수입공표 제1호에서 정한다.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등 HS 3류와 12류의 김, 식용해초, 21류의 해초의 조제식료품 등 수산

40)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ndex.html

41) <http://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42) 수입령 제4조 제1항 제1호

물과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 사염화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입할당신청서 등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할당을 허용하는 경우 수입할당증명서 및 수입승인서를 교부한다. 수입할당 승인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수입할당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한다.

나. 수입승인제도

수입승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국내 산업보호, 공공복리 증진,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정국가에서 생산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선적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와 국가나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규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국가와 원산지는 수입공표 제2호에 규정하며 후자의 경우 수입공표 제2호의 2에서 규정하고, 후자의 규제는 상업적 수입인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품목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와 품목이 함께 규제되는 물품으로는 국제포경단속조약 가맹국 중 비포경국 이외의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고래 및 조제품 등 희귀종 보호를 위한 조약에 의한 수산물과 이라크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문화재, 코트디부아르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다이아몬드 원석,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모든 화물과 이란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화약류, 핵병기 관련 물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로는 대마, 생아편 등 마약류 및 그 원료와 석명, 우라늄광, 천연 우라늄 등의 핵물질 및 그 관련물품 등, 화약, 폭약, 도화선 등의 폭발물, 군용 항공기, 전차, 군함 등과 권총, 도검류 등 무기관련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한 승인절차는 수입승인신청서와 수입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 관련 수입승인 신청 사유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에 신청하고 내부심사를 거쳐 수입승인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 사전확인제도

국내법의 실효성 확보, 수입할당제도의 보완, 국제조약의 이행 등을 위해 수입하기 전에 각 품목별 소관기관으로부터 용도 등을 확인받아 관련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하도록 하는 규제로, 대상품목은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용의 미생물성 백신과 대인용 면역혈청은 후생노동성 또는 농림수산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라늄 촉매, 특정 외국 문화재 및 피점령지역 유출 문화재 등은 문부과학성의 확인을, 기타 선박수입 참치류, 특정 냉동 참치류, 국제포경단속조약 가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래 및 그 조제품 등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상 규정물질 등은 경제산업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 2-V-1〉 일본 외위법에 의한 수입규제

근거법령	대상	대상물품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1	수입할당품목	청어, 대구, 가리비 등 수산물과 식용해초, 해초의 조제식료품 등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2	2호 승인품목	국제조약에 의한 수산물, 이라크산 문화재, 코트디부와르산 다이아몬드 원석, 북한산 모든 화물, 이란산 화약류, 핵병기 관련물자 등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2의2	2의2호 승인품목	마약류, 핵물질, 폭발물, 무기류, 구제역 백신 등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3, 6, 7	사전확인품목	임상시험용 백신, 우라늄 촉매, 특정 문화재 등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35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라. 예외물품

상기의 수입규제물품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물품,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일시입국자의 휴대품 등 상업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수입허가 또는 승인, 요건 확인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총 물품가액이 18만엔 이하의 물품, 구호물자, 상품 견본 또는 선전용물품,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 전용물품, 유골, 공공기관용 물품, 무상으로 송부된 기록 문서, 종교법인 또는 예배시설에 사용되는 식전용구, 예배용구,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해당 선박 내에서 제조한 물품, ATA 까르네 물품 등 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들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휴대 또는 별송품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직업용구 및 이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가 면제된다.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임시로 보관하는 물품,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에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물품인 상태로 장치, 하역, 운반, 개장, 구분 기타 작업을 위한 물품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의 수입규제가 배제된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규제

각 품목별 규제법을 통틀어 기타 법령으로 칭하고 통관 단계에서의 규제를 다룬다. 통관단계에서 각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 허가, 합격증서 등의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수입규제

경제, 보건 위생, 공안 풍속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물은 관세법령 이외의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수입신고 시 심사 또는 검사 시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될 수 있다.

소관부처별로 후생노동성에서는 주로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접촉을 통한 감

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 위험이 있는 동물, 사람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마약류, 각성제, 독극물 및 화장품 등을 규제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과 감염 위험 동물에 대한 검역을 후생노동성과 함께 각 지방 동물검역소⁴³⁾와 식물검역소에서 실시하며 농업의 안전을 위한 농약, 비료, 병충해 위험이 있는 동식물과 가축전염병 등을 단속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화학물질, 원자력 안전, 자원, 연료 등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기타 총무성, 환경성, 경찰청, 국세청에서 위조품, 총기류 등 국민의 물리적 안전과 정상적인 소비를 위협하는 수입금지물품과 국제조약에 의한 특정 외래생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다.

〈표 2-V-2〉 수입 규제 타 법령 일람표

주관 부처		법령명	주요 품목
후생노동성	의약품국 심사관리과	독물 및 극물 단속법	독물, 극물
	의약품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등
		대마단속법	대마초, 대마초제품
		아편법	아편, 양귀비 열매의 껍질
		각성제 단속법	각성제, 각성제 원료
	의약품국 식품안전부 기획 정보과 검역소 업무 관리실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 첨가제, 식기, 용기 포장, 장난감 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대책과	노동 안전 위생법	유해물 등(석면 등)	
후생노동성	의약품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약사법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지정 약물, 동물용 의약품, 동 의약외품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수산안전관리과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감염과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원숭이, 프레리 도그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 위생과		

43) <http://www.maff.go.jp/aqs/>

〈표 2-V-2〉의 계속

주관 부처		법령명	주요 품목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비료단속법	비료
		농약단속법	농약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식물 방역법	현화(종자)식물, 양치류 또는 선대류에 속하는 식물(그 부분, 씨앗, 과일과 기타 이에 준하는 가공품 포함) 유해 식물(박테리아, 기생 식물 등), 유해 동물(곤충, 진드기 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광견병 예방법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컹크
		가축전염병 예방법	우체류 동물, 말, 닭, 오리 등 가금류, 토끼, 꿀벌, 이 동물의 고기, 소시지, 햄 등
	생산국 농산부 지역작물과	설탕 및 전분의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설탕, 전분
생산국 축산부 우유제품과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등 감정 조치법	버터, 탈지 분유, 연유 등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보안과	화약류 단속법	화약, 폭약, 화공품(도화선 등)
		고압 가스 보안법	고압 가스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 물질
	자원에너지청 자원· 연료부 정유비축과	석유 비축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증유
제조산업국 화학부문 알코올실	알코올 사업법	알코올분 90도 이상의 알코올	
총무성	정보우정행정국 우편행정부 우편과	우표류 모조 등 단속법	모조 우표류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조수보호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새, 짐승과 그 가공품, 조류의 알 등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블랙 버스, 카미쯔키가메 등
경찰청	생활안전국 보안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칼, 창과 장도, 칼날 길이 5.5cm 이상의 칼, 비수 및 토비다시 칼 등
국세청	과세부 과세총괄과 소비세실	인지 등 모조 단속법	모조 인지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아래에서는 후생노동성 소관인 식품위생법에 관한 검역요건, 농림수산성 소관인 식물방역법에 의한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동물에 대한 수입규제와 약사법, 워싱턴 조약에 의한 수입규제를 위주로 하여 주요 규제법령을 살펴 본다.

1) 식품 등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i) 제조·사용 기준, ii) 성분 규격 iii)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iv)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등은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 규제대상화물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상업상 사용하는 모든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동물성·식물성 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시행규칙 별표 2), 식기, 요리기구,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사용되거나 직접 접촉하는 기계 등의 기구, 포장용기 및 유아용 장난감 등을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규제대상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나 영·유아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포장용기,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개인용, 실험연구용, 재수출용, 전시용 식품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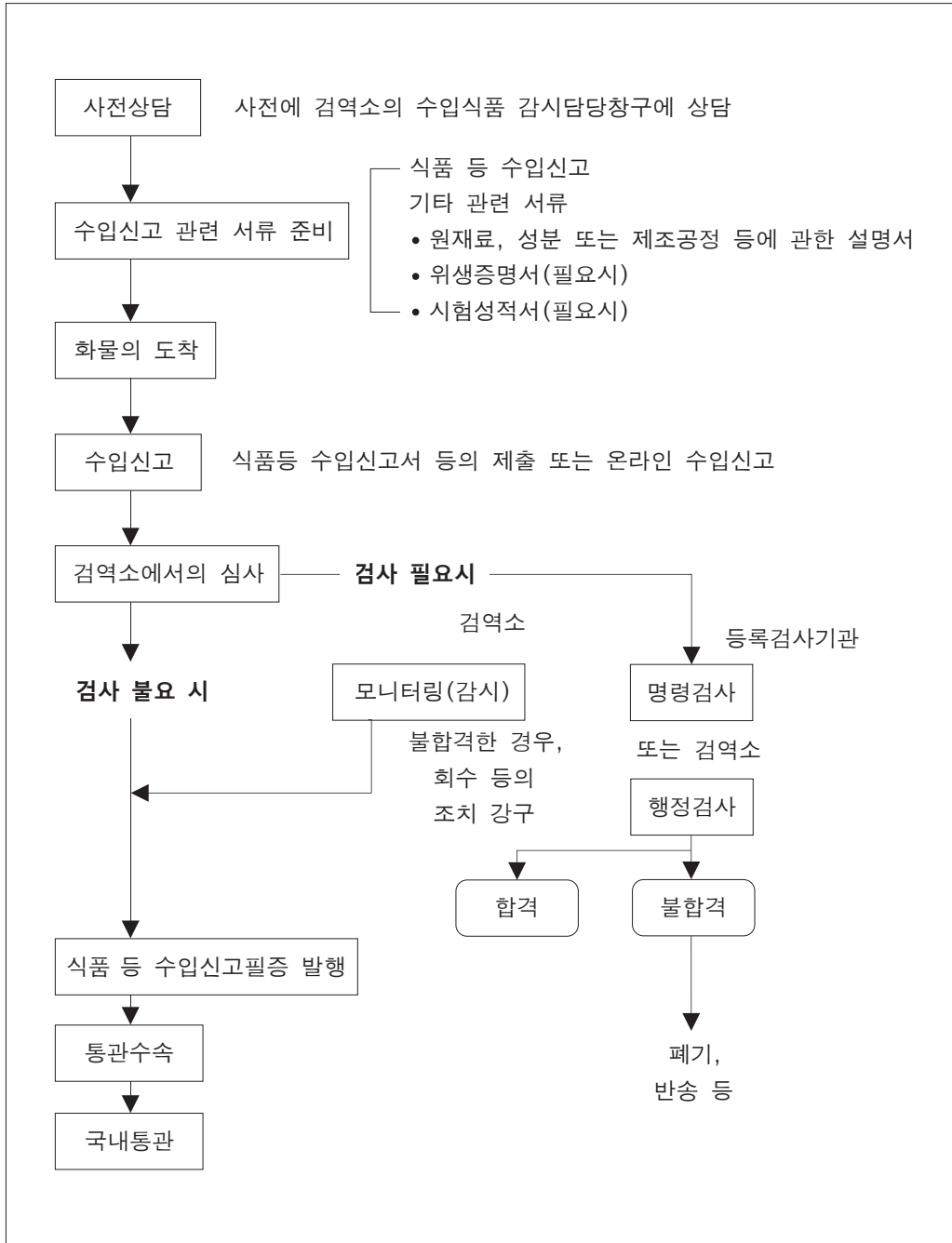
나) 통관절차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또는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44) 식품위생법 제4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달 70-3-1 식품 위생법 제27조, 제62조) 검역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고 물품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하여 세관의 수입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류심사결과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명령검사 또는 행정검사를 실시하되, 일단 수입을 허용하고 시중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개연성이 가장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으로 등록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명령검사와 처음 수입되는 물품 등 검역소에서 수행하는 행정검사가 있다. 물품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수입통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료 또는 사료용, 공업용 등의 용도로 전환하여 별도의 세관절차를 진행하거나 보세구역 내 추가가공 후 다시 검역을 실시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여 물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그림 2-V-1] 일본 식품검역 절차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1.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

2) 동·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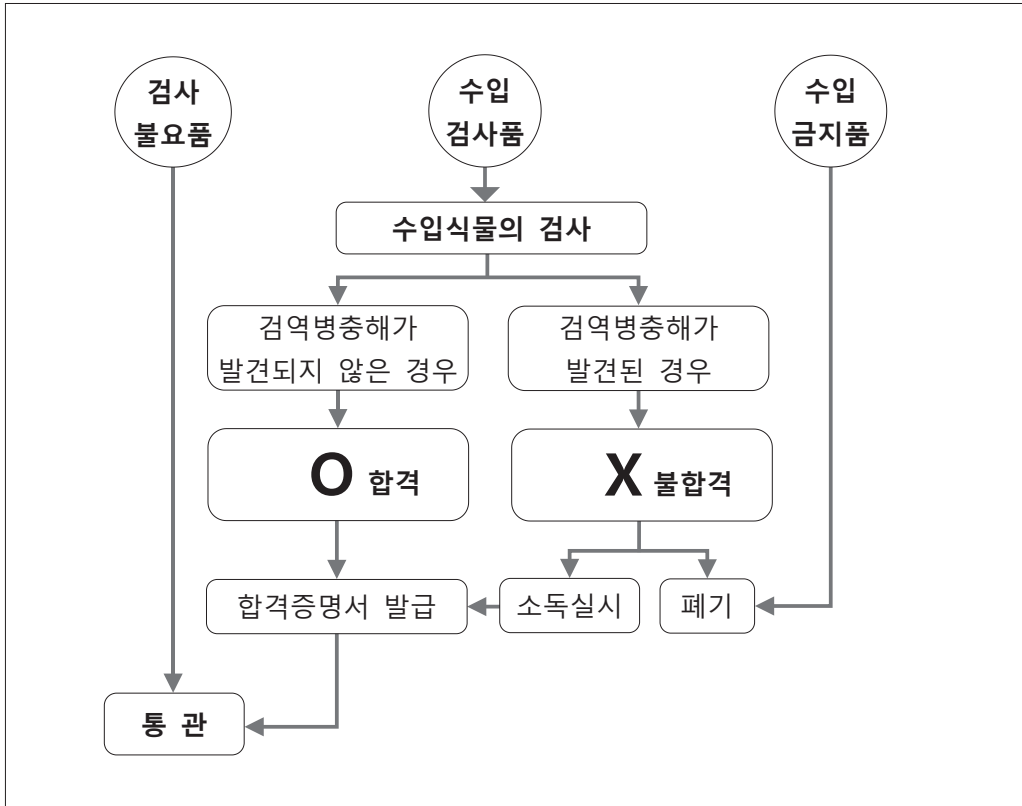
가)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은 일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수입 시 검사에서 발견이 어려운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상 수입규제는 수입 금지와 검사를 받아 수입이 허용되는 규제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 또는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 및 이의 포장용기를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국가별 대상식물 및 검역해충), 별표 2의 2(국가별 대상식물 및 수입기준), 별표 1의 2(국가별 대상식물의 재배용도 및 검역대상 유해동식물)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시험 연구 기관, 박물관 등의 시험 연구 및 전시 등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이를 수입할 수 있다.

식물검역 대상 식물류는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는 것이 검사를 통해 입증되면 수입할 수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독,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될 수 있다(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달 70-3-1, 식물방역법 제6조,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

[그림 2-V-2] 일본 식물검역절차



자료: 일본 식물검역소(<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kensa/index.html>)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국내 침입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수입금지 및 농림수산물 동물 검역소의 검사를 받고 수입할 수 있는 수입제한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제한다.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과 특정물품을 금지하며, 수입규제 대상으로는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동물 및 말, 가금류(닭, 메추라기, 꿩, 타조, 오리, 거위 등), 개, 토끼, 꿀벌 및 이들의 고기, 장기, 알 및 소시지, 햄 등의 가공품이 포함된다.

규제대상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물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받거나 농림수산성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이들 화물은 일반 화물, 휴대품, 국제 우편물 등의 운송 수단과 기념품, 개인 소비 등의 용도에 관계없

이 모두 규제대상이며, 개인용 우편물 및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동물검역소의 ‘검역 필’ 표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관세법 제 70 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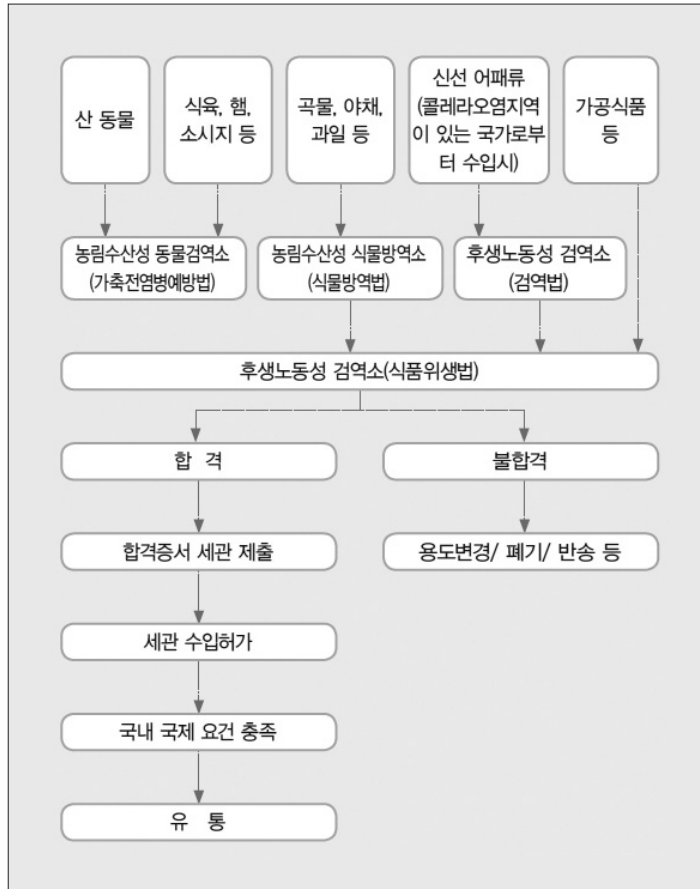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에서는 사람, 동물 및 식물에 유해한 수입물품에 대해 위험성을 진단, 검사하고 전염병의 경우에는 소독, 격리 등을 통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대상과 규제대상은 아래 표와 그림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표 2-V-3〉 일본 검역 규제 소관부처

종류	검사대상	규제대상	담당관서
검역	사람	인간의 전염병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	식품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 및 유해한 물질	-
동물 검역	동물	동물의 전염병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식물 검역	식물	식물의 병해충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

자료: 일본 식물검역소,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ndex.html>)

[그림 2-V-3] 일본 동물·식물·식품 등 검역절차 체계도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53.

3)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약사법은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 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후생노동성에서 규제대상물품을 정하고, 지방후생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거쳐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 규제대상화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거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되어 있는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약사법상의 허가,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일정한 수량 이내 등 규정의 범위 내면 수입할 수 있다.

나) 통관절차

이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의한 '제조 판매 (제조) 용 의약품 등 수입신고서(수입 판매업 허가증)', '의약품 등 수입 보고서' 등을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농림수산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 (제조)업 허가증'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 승인 지시서'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化妆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제조판매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후생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후생국에서 발행한 '후생노동성 확인필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의약품과 의약부외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 허가, 제조업 허가, 품목별 제조판매 승인과 외국제조업자 인정에 대해 지방후생국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은 후생노동성과 각 해당 독립법인이 관할하고 있다. 판매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판매허가, 외국제조업자 인정 및 품목별 승인을 받고 지방후생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은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제조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업 허가기준은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과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후에는 외국에 있는 제조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총합기구'에 신고하고 제품별로 '화장품 제조판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 등의 규제는 약사법과 농림수산성의 「동물용 의약품 등의 단속 규칙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멸종 위기 동식물

멸종 위기 동식물의 수출입 등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워싱턴조약이라 하며 멸종 위기 정도에 따른 동식물의 규제 정도를 동 조약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다.

애완 동물과 감상용 살아있는 동식물은 물론, 박제품,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코트 등 의류, 핸드백, 벨트, 신발, 은세공 품, 약초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한 수출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출허가서 및 경제산업성이 발급한 수입승인증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관세법 기본 통달 70-3-1 수입 무역 관리령 제4조).

나. 수출규제

특정 화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 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제는 관세법 수출허가제로 결부시켜 그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을 수출할 경우 관세 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출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고, 수출신고 또는 신고에 따른 심사 또는 검사 시에 그 취지를 세관에 증명하고 확인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법령에 의한 규제 대상이나 절차는 수입규제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2-V-4〉 수출 규제 타 법령 일람표

법령명	주요 품목	주관 부처
문화재 보호법	중요문화재 또는 중요미술품 천연기념물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	문화청 문화재부 전통문화과
조수보호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새, 짐승과 그 가공품, 조류의 알 등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등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 · 마약 대책과
대마단속법	대마초, 대마초제품	
아편법	아편, 양귀비 열매의 껍질	
각성제 단속법	각성제, 각성제 원료	
광견병 예방법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컹크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우계류 동물, 말, 닭, 오리 등 가금류, 토끼, 꿀벌, 이 동물의 고기, 소시지, 햄 등	
식물 방역법	현화(종자)식물, 양치류 또는 선대류(이기류)에 속하는 식물, 유해식물(세균, 기생식물 등), 유해동물(곤충, 진드기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도로운송차량법	중고 자동차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자동차정보과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4 원산지 및 품질 표시 관련 제도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외위법과 기타 법령에 의해 각 소관부서에서 요건 확인절차를 통해 규제 이후에 일본에서 국내 판매단계에서의 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법상 원산지표시 관리와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하 ‘경표법’) 등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물품에 표시되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구매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품질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제품별로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인증 관련기관으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사료, 살충제 등에 대한 농림수산물, 허위 과장 표시와 성분표시, 소비자 안전에 관하여 소비자청, 유해물질에 대해 후생노동성, 기타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가스안전 등의 품질에 관하여 경제산업성 등에서 소 관하고 있다.

〈표 2-V-5〉 국내판매 단계 규제법 일람표

주관부처	법률명	주요 대상품목 및 내용
농림수산물성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인증 및 표시 규제
	사료의 안전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	사료 및 사료첨가물 검정 및 합격 표시
	농약단속법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쥐약, 제초제, 성장 촉진제, 발아억제제 등 등록 및 성분 표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용 기계 기구의 형식검사 및 합격 표시
농림수산물성 소비자청	미곡 등 거래 등에 관한 정보기록 및 산지 정보 전달법	쌀·쌀가공품 거래기록 작성 보존 산지 정보 전달 의무
소비자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모든 품목에 대한 허위 과장 표시 금지
	건강증진법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성분표시 의무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섬유제품, 합성수지 가공품, 잡화공업품, 전기기계기구, 가정용 전기기구 등
후생노동성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수은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가정용품
	노동안전위생법	프레스기, 방독마스크 등 형식검사 및 합격 표시
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	영유아용 침대, 레이저 포인트, 욕조용 온수순환기(특별특정제품),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냄비 등, 승차용 헬멧(특정제품)
	전기용품 안전법	가정용 전기기구, 사무용 기기, 전기기기부착 가구, 전선·배선기구, 소형변압기, 전류제한기 등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 난로 등 적합성 검사 및 표시

〈표 2-V-5〉의 계속

주관부처	법률명	주요 대상품목 및 내용
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	기타 가스 난로 등 적합성 검사 및 표시
	계량법	계량기에 대한 계량 단위의 명시 등
	공업표준화법	광공업품 품질 인증 및 JIS 마크 표시
국세청	주세법	주류 판매업 면허, 주세 납부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주류 판매관리자 신고, 주류 표시 기준 준수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법	전화기, 팩스 등 통신기기 기술기준 적합 및 표시
	전파법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적합 및 표시
	소방법	소화기, 경보기 등 소방기기 형식검정 및 표시
국토교통성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 오토바이 등 안전검사,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요트, 모터보트 등 안전검사, 형식승인

가. 원산지 표시

1) 관세법⁴⁵⁾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실제로 생산·제조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관세법 제 71조에 의하여 수입화물에 원산지 표기의 진위 여부를 규제한다.

수입화물에 직접 또는 수입화물의 포장용기에 간접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오인을 야기하도록 표시한 경우 관세법의 제재를 받는다. 관세법을 위반한 원산지표시는 말소, 정정 또는 반송처리된다.

4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qa_origin.htm#Q03)

가) 허위표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Made in ○○’, ‘Produced in ○○’, ‘Fabricated in ○○’처럼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화물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수입화물의 부분품, 용기, 포장, 라벨 등의 경우 및 해당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물품, 당해 용기에 넣어지거나 당해 포장에 의해 포장되는 물품, 해당 라벨이 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가 당해 수입물품에 표시되고 그 원산지가 수입화물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는, 수입화물의 수입자(위탁자 포함)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 용도가 확인되면 허위표시로 보지 않는다.

나)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

원산지의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및 객관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산지 이외의 국가, 지역 및 도시 등의 명칭

단순히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을 일부로 사용한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Imported from ○○’, ‘Licensed by ○○’처럼 수출국가를 나타내는 어휘 등을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되는 어휘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 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로 표시된 경우(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Yarn’, ‘Material’, ‘Fabric’ 등의 문구 다음에 ‘Made in ○○’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회사명, 상표 기타 도안 등

화물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국기 또는 그 도안이나 그런 국기 또는 그 도안을 이용한 상표 기타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화물의 원산지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상호 또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원산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상표 또는 기타 도안이 표시된 경우, 수입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특정 국가 등의 특

산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화물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의 표시가 화물의 유행이나 품질, 성능 등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어휘와 병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어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Fashion in ○○’, ‘Mode in ○○’, ‘○Style’, ‘○Patent NO ...’와 같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저명한 풍경 등이 표시되거나 그 나라의 문자를 사용한 설명 또는 광고문구가 표시된 경우에는 명백하게 해당 국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예외로 한다. 또한 ‘JIS’ 마크, ‘JAS’ 마크,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근거하여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 또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근거한 품질, 규격 등에 관한 표시는 국내법상 인증을 득한 것으로 해당 법규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한다.

2) 부당 경품 · 표시 방지법

가) 개요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하 ‘경표법’)은 부당한 경품을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과대 또는 허위 표시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없으며, 품목별 또는 분야별 부당표시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고, 또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규약」이 있다.

상품의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법 제4조) 소비자청 또는 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방지 조치(법 제6조)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오인요소를 제거, 재발 방지 조치,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⁴⁶⁾

나)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

소비자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업계 자주 기준인 「식품 표시에 관한 공

46)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 도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56.

정 경쟁 규약」에 따른 규제대상은 일반적인 식품, 주류, 신변용품, 가정용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기계, 스포츠용품, 악기 등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표시에는 상품의 품질 규격이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하는 ‘수량오인표시’, 상품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거래상대방에 실제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유리오인표시’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청량음료수, 상품의 원산국, 소비자 신용의 용자비용, 부동산 광고 등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원산국이란 상품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가 행해진 국가로, 상품의 원산지를 국가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명도 원산국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원산국의 표시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국 이외의 국가명, 지명, 국기 등 이와 유사한 표시 등으로 인해 그 원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원산국 부당표시’로 간주한다.

나. 품목별 인증제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관부처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품목별 유통규제 가운데 품목별로 품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위생과 안전 보호와 관련되는 농산물, 전기기계, 합성수지 가공품 등 가정용품,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섬유제품, 가정용 세정제 등 가정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소비생활용 제품,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기용품의 기술수준, 품질 등을 규제한다. 여기에서는 농산물 품질표시법과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의한 규제를 알아본다.

1) 농산물 품질표시법(JAS법)

가) 개요

「농림 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통상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법’으로 불리며 농림수산물의 규격화를 통한 생산 및 물류원

활화를 도모하고,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1) 사업자가 임의로 일본농림규격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 부착을 허용하는 ‘JAS 규격 제도’와 2)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품질을 표시하도록 하는 ‘품질표시기준’으로 구성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품목별 규격기준 및 품질표시기준을 정한 농림수산성 고시가 있다.⁴⁷⁾

나)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

규제대상물품은 음식료품, 유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식품은 가공한 경우에는 가공식품 판매 시 품질표시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식품 첨가물, 저장 방법, 용기 재질 등의 규제), 계량법(용량, 성분 정렬 등의 규정), 경품 표시법(마약 광고의 금지 등), 건강 증진법(영양 표시 기준 등)도 각각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JAS 마크 인증

이 법에 의한 성분, 품질, 생산방법, 유통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한 규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JAS 마크’를 부착한다. 대상품목에 따라 일반마크, 특정마크, 유기마크, 생산정보 마크, 정온관리유통 마크 등이 있다.

이 법에 의한 인증마크를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생산관리자, 유통관리자, 소매업자, 판매업자, 수입자, 외국의 수출자 등은 농림수산성에서 인가한 등록된 인증기관에 신청을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품목별 규격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를 합격한 경우 농림수산성에 인증등록을 요청하고, 농림수산성에서 이를 등록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2) 품질표시기준

수입자, 판매자 등은 의무적으로 이 법의 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실시하여야 하며(법 제19조의 13의 2), 구체적인 표시내용, 표시 방법 등은 가공식품 품질표시기

47)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64.

준, 신선식품(生鮮食品) 품질표시 기준, 유전자 변환에 관한 표시 기준, 현미 및 정미 품질표시기준, 수산물 품질표시기준 등 식재료품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성 또는 소비자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⁴⁸⁾

2)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 합성수지가공품 품질표시규정, 전기기계기구 품질표시규정, 잡화공업품 품질표시규정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물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표시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청 등 소관부서는 적정한 표시를 하도록 보완요구를 명령하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판매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크게 섬유제품, 합성수지 가공품, 전기기계기구, 잡화공업품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표시를 규제한다. 섬유제품을 예로 들면 섬유조성비율, 취급방법, 주의사항, 원산국, 제조자명, 제조자 연락처와 위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섬유제품에는 실, 직물, 상의, 바지, 스커트 등의 직물제품이 속하며, 합성수지 가공품에는 세면기, 바구니, 쟁반, 주방용 기구 등이 포함된다. 전기세탁기, 전기밥통, 전기청소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전기기계기구의 표시내용을 따라야 하며 보온병, 가방, 양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잡화의 품질표시도 이 법에 따른다.

48)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67.

Ⅵ. 보세제도

1 개요

보세지역은 무역의 진흥 및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화물을 보세상태로 법규의 감독하에 둔으로써 무역질서 유지와 관세 등 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곳을 말한다. 관세법 제4장에 따라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화물과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화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파선화물, 세관장이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허가한 화물, 특정 우편물, 특례수출화물 등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VI-1〉 일본의 보세제도

관세법 조항	보세제도	보세작업	장치기간	설립요건
제37조	지정보세지역	하역, 운반, 일시 장치 내용물 점검, 개조, 구분 기타 작업 예) 컨테이너 야드 등	1개월	재무성 지정
제42조	보세장치장	하역, 운반 또는 장치 예) 창고 등	2년(연장 가능)	세관장의 허가
제56조	보세공장	가공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혼합 포함) 예) 조선소, 제철소, 정유소 등	2년(연장 가능)	
제62조의 2	보세전시장	전시 또는 사용 예) 박람회, 박물관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2조의 8	종합보세지역	상기의 모든 작업 예) 국제공항 등	2년(연장 가능)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2 보세지역의 종류

가. 지정보세지역

지정보세지역은 국가, 지방 공공단체 또는 항만 시설이나 공항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자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물 기타 시설로서 개항 또는 세관 공항에서 세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을 하거나 이를 일시 장치하도록 재무 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장치 화물의 종류를 지정하기도 한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항만 중심으로 총 88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세관 근처에 설립된다.

1) 보세작업의 종류

세관장은 지정보세구역에 넣을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하역 또는 운

반 외에 외국 물품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개월간 내용을 점검하거나 개조, 구분 기타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견본 전시, 간단한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도 가능하다. 다만, 장기간 화물을 장치하거나 지정업체의 독점적 사용 및 복잡한 가공, 제조 또는 물품의 본질적 성상을 바꾸는 작업은 금지된다.

2) 운영

대외 무역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정보세구역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지정보세구역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화물 관리자가 관리하는 화물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양도, 처분 또는 용도 변경, 개축, 이전, 철거 등의 기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세장치장

보세장치장은 거래의 원활화 및 중계무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국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을 하거나 이를 장치할 목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보세장치장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장치장 허가 및 특례승인

신청인이 보세지역허가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제한한다.

보세장치장 허가에 대해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외국화물의 장치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서 당해 업무에 관하여 신고만으로 보세장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세장치장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허가제한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 요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임원을 포함한 당사자,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법규준수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승인보유자가 사망, 허가 만료, 승인기간 만료, 승인보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세관장의 개선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승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2) 보세장치장 운영

보세장치장 화물 수용능력을 증가 또는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유 및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기간 내에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 장치장에 있는 외국화물이 망실 또는 멸각된 때에는 당해 보세 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외국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망실한 경우 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해산, 파산절차의 개시, 허가기간이 만료한 때 및 세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보세장치장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허가가 취소된다. 세관장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보세장치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때와 허가를 받은 자가 통고처분, 금고 이상의 형 등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한다. 한편 보세장치장을 상속인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

다. 보세공장

보세 공장은 가공 무역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가공 또는 제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작업의 사정에 따라 추가 기간을 연장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가공 또는 제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외국산 원료의 수입과 제품 수출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내 판매 제품과 함께 수출품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고, 국내 판매를 위한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하여 항구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것도 있다. 2014년 8월 현재 요코하마 세관관할 57곳, 고베세관 관할 52곳 등 총 280개의 보세공장이 허가되어 있다.

보세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해산물 통조림, 과자, 강재, 전선, 선박, 자동차, 정밀기계, 토목기계, 공작기계, 석유제품, 섬유, 농약, 화학제품, 필름 등이 있다.

1) 보세공장 허가, 특례승인 및 지정보세공장제도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에 한하여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보세공장에 병설된 보세장치장).

또한 보세장치장 특례승인의 조항을 준용하여 보세공장에 대해서도 재무성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나 시설에 대해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보세작업을 신고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사용된 원료제품의 제조 수율 등 기타 보세작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공장을 지정하여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보세공장에서의 보세작업이 허용된 특정 제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보세작업 시작 및 종료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지정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품과 원재료의 수량 기타 등 기타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월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세작업의 종류

외국화물에 대한 가공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혼합 포함) 또는 외국화물의 개

조, 구분 기타 손입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외국화물과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보세작업을 한 제품은 보세공장에서 당해 물품의 보세작업 사용이 승인된 날부터 2년 동안 장치할 수 있다.

3) 운영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보세 작업의 종류, 기간, 해당 작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화물의 번호, 품명, 내국화물 또는 외국화물의 수량 등을 세관에 서면으로 보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은 외국화물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국화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외국화물과 내국화물을 혼용하여 외국화물만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제품과 동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작업의 성격, 공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내국화물을 사용하는 사유가 정당하고 원료의 수량과 제품 수량의 비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은 내국화물의 혼용을 승인할 수 있다.

무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이 법의 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세 공장 외에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당해 보세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 작업의 종류, 기간 위치 및 이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은 허가받는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관세를 징수한다.

라.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은 국제적인 규모로 열리는 박람회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외국 제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화물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채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전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

1) 보세작업의 종류

보세 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시설의 건설, 유지 또는 철거 또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화물의 하역, 운반 또는 장치, 내용물의 점검 또는 개조, 구분 및 관리, 전시 또는 사용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2) 보세전시장의 운영

보세전시장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화물을 보세전시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화물 중 판매되어 사용·소비 또는 사용 또는 소비가 예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전시장 내에서 당해물품이 장치된 위치를 제한하거나 성질 또는 형상의 변경되는 사유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화물의 전시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간 내에 화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화주는 즉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보세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으로 간주하며, 판매가 예정된 물품에 대해서 해당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종합보세지역

종합보세지역은 외국화물의 장치, 가공, 제조, 전시 등 상기 보세지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곳으로 수입 촉진 및 대내 투자사업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주로 각종 수입 인프라 통합의 이점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각종 시설을 탄력적으로 배치 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각 시설 사이에서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외국화물의 이동이 있는 등 절차의 단순화를 도모할 수 있다.

1) 허가 요건

허가요건으로는 토지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어야 하며, 무역 관련 시설의 관련성이 높아야 하며 종합적으로 수입 촉진 및 무역 진흥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작업이 필요한 곳으로서 당해 토지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보세지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심사한다.

2) 허용되는 작업의 종류

종합보세지역에서는 외국화물의 하역, 운반, 장치, 내용물의 검사, 개조, 구분 및 관리와 가공 또는 외국화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혼합 포함), 외국화물의 전시 또는 이와 관련된 사용을 포함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종합보세지역에서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종합보세지역의 허가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운영

종합보세지역에서 판매, 소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외국화물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료로 관람 또는 사용에 제공되는 화물, 전시관, 사무실 기타 시설의 건설 또는 철거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장치 및 운반장비가 이에 포함된다.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그 임원 기타 종업원이 종합보세지역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지역의 허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합보세지역에 장치된 물품이 망실 또는 멸각되어 관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 경우, 당해 종합보세지역의 물품관리자가 허가를 받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가 법인과 연대하여 관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3 보세운송

외국화물은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개항, 세관, 공항, 보세지역, 세관관서 및 세관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 사이에서 외국화물의 상태로 운송할 수 있다. 보세운송 승인 대상화물은 원칙적으로 외국화물로 제한하되, 다만 외국무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환적되는 화물 및 수출허가를 받고 환적되는 화물은 보세운송 절차가 면제된다. 우편물, 특례수출화물 등은 세관장에 신고를 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가. 보세운송 절차

1) 보세운송신고, 승인과 도착확인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명칭, 등록 기호 또는 종류,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운송 대상,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및 운송 기간 및 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보세운송 신고를 한다. 이 경우 운송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인을 허용한 화물에 대해서는 월별로 운송목록을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운송목록을 제출한 경우 및 세관의 도착확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승인과 도착확인의 세관관서가 동일하거나 동일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 간의 보세운송 또는 수출허가를 받은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에 대해서는 운송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세운송의 승인을 하는 경우 운송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운송기간을 경과하여 화물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자는 도착확인을 받은 운송목록을 승인을 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 승인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화물검사를 받거나 관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특례보세운송업자의 승인

통관업자,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 허가의 특례승인을 받은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자 또는 기타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체로서 정령 제55조의 2에 의한 요건⁴⁹⁾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보세운송업자는 특정 구간에서의 보세운송에 대해 세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운송목록 제출, 도착 확인 등의 절차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특례보세운송업자의 승인을 위한 요건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준수도, 특례보세운송업무를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임원, 대리인 기타 종업원들이 법규준수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결격사유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형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집행 또는 통고처분의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체의 기준이 되는 법규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기타 법규를 위반하여 형벌의 집행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당해 승인취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법규준수도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운송 특례승인은 승인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특례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때 세관에 신고를 통해서 승인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통관업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체가 요건을 결여하게 되는 등 세관장의 취소를 통해 승인의 효력이 해지된다.

49)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 특례승인을 받은 자,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 지정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시작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에 보세운송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상운송법, 항만운송사업법, 항공법, 화물 이용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허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

Ⅶ. 벌칙

1 개요⁵⁰⁾

일본의 관세 범죄에 관한 형벌은 관세법 제10장(벌칙), 제108조의 4 내지 제118조에 규정하고 처벌절차는 제11장(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 관세법은 형법총칙 배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형법 총칙이 관세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일시적으로 두고 있다가 1960년대에 전부 삭제하였다.⁵¹⁾

일본에는 관세법을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세 벌칙 조항 내에 범죄 관련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벌금 액수를 높여 부과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관세포탈죄 처벌은 본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데, 포탈 금액의 10배가 5백만엔을 넘는 경우, 정상에 따라 벌금은 5백만엔을 초과, 포탈·환급받은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50)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51)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2 벌칙⁵²⁾

가. 관세 형벌의 형태

1) 확정형 벌금제 및 형의 병과

일본의 관세 형벌은 원칙적으로 배수형 벌금제가 아닌 ‘확정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관세포탈죄(제110조)와 밀수품 취득죄(제112조)에 있어서는 범죄 관련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수형 벌금제를 규정하고 있다.⁵³⁾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일본의 관세법 내 다수의 처벌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다.

2) 양벌규정

일본은 관세법 제117조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을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금지품 수출입죄, 조세포탈죄, 밀수품 취득죄 등의 위반 행위의 처벌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⁵⁴⁾

인격 없는 사단 등(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것)은 법인으로 간주한다.

3) 예비, 미수범 등의 처벌

일본 관세법에서는 범죄 행위별로 예비,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52)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53)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54) 관세법 제117조 제1항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범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사와 방조 행위에 대한 규정은 일본 형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형법 제61조에는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을 과하며, 교사자를 교사한 자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2조에서는 정범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하며, 종범을 교사한 자에게는 종범의 형을 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관세법에서는 예비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범에 비해 낮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관세포탈죄의 정범에 있어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된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주요 관세법 위반 행위, 즉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 행위와 관세의 포탈죄, 무허가 수출입죄에 대해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관세법상 벌칙 규정

1)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제108조의 4)

일본의 수출금지 화물은 일본 관세법 제69조의 2(수출금지화물)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 물품은 마약, 아동 음란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⁵⁵⁾를 조성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관세법 제108조의 4에 따라 수출금지화물 중 마약을 수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을 착수하여 이를 끝마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을 부과한다. 마약 수출

5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개인의 업무에 관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등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로를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써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태를 제외)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어하고, 양도 혹은 대어를 위해 전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마약 외 수출금지물품 수출을 예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2)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제109조)

수입금지물품은 일본 관세법 제69조의 11(수입금지화물) 제1항 1내지 10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수출금지 물품을 포함하여 그 외에 총기류, 폭발물, 화약류, 위조 화폐,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등으로 한다.

수입금지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입금지물품 중 마약, 총기, 폭발물, 화약류, 화약병기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위조 화폐 등⁵⁶⁾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아동포르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 조성 물품⁵⁷⁾을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기수범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3) 관세포탈죄(제110조)

관세법 제110조에서는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을 받은 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에 대해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본 위반행위에 있어 통관업자의 위조 등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

56) 관세법 제69조의 11(수입금지화물)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57) 관세법 제69조의 11(수입금지화물)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포탈의 예비한 자 또는 미수범에 대하여는 모두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관세포탈 금액의 10배가 5백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5백만엔을 초과하고, 포탈·환급받은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허가 수출입(제111조)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한 자와, 신고 또는 검사에 있어 위조한 신고 혹은 증명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을 수출입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통관업자가 위조한 신고·증명 또는 위조한 서류제출에 의해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미수범에 대해서 기수와 동일한 처벌을 하며, 예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중대한 과실로 무허가 수출입을 한 자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된다.⁵⁸⁾

5) 밀수품 취득죄(제112조)

관세법 제112조에서는 밀수품의 취득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금지 화물 등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해 이를 알고 운반, 보관 또는 유상·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의 매개·알선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밀수품 취득과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5배가 3백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3백만엔을 초과, 그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58) 관세법 제116조

〈표 2-Ⅶ-1〉 일본 관세법상 주요 위반행위 처벌

조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비고
제108조의 4	제1항. 수출금지물품 중 마약의 수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미수: 기수처벌 -예비: 감경처벌
	제2항. 수출금지물품 중 마약을 제외한 물품 (아동포르노 등)의 수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09조	제1항. 수입금지물품 중 마약, 폭발물, 위조 지폐 등의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항. 수입금지물품 중 음란물 등을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10조	관세포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가중처벌조항 ○ -예비: 기수처벌 -미수: 기수처벌
제111조	무허가 수출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중대 과실 인정 -미수: 기수처벌 -예비: 감경처벌
제112조	밀수 ¹⁾ 품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가중처벌조항 ○

주: 1) 금지품 수출입 행위를 밀수로 보고 있음

자료: 일본 관세법

6) 몰수와 추징(제118조)

수출입금지화물 중 특정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환적을 명할 수 있다. 몰수 대상 수출금지 화물은 마약,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행위 조성 물품⁵⁹⁾이다.

또한 몰수 대상이 되는 수입금지 물품은 마약, 총기, 폭발물, 화약류, 화약병기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물질, 위조 화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행위 조성 물품⁶⁰⁾으로 한다.

관세법상 범죄행위와 관련된 화물과 그러한 범죄행위용으로 제공한 선박 또는 항

59) 관세법 제69조의 2 제1항 1호, 3호, 4호

60) 관세법 제69조의 11 제1항 1호 내지 6호, 9호, 10호

공기 또는 밀수화물 운반(제112조)의 관련된 화물을 몰수한다. 몰수의 대상 행위는 수출입금지 화물의 수출입죄(제108조의 4 및 제109조), 수입금지화물을 보세지역에 보관하는 등의 죄(제109조의 2), 관세포탈죄(제110조), 무허가 수출입죄(제111조)가 포함된다. 몰수하여야 하는 범죄화물(선박, 항공기 제외)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이루어진 때의 몰수할 수 없는 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며, 범죄화물 또는 운반기구의 몰수 또는 범죄화물의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이 이루어진 때에는 본 범죄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FTA 관련 처벌

현재 일본은 13개 국가(또는 연합)와 경제연계협정(EPA)⁶¹⁾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특례법과 같은 관세법과 별도로 경제연계협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관세법 제68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시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EPA 세율 적용 시 세관 제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제출 요건 등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총칙에 따르며 관세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가. 조사

세관 공무원은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의 재판관이 미리 발하는 허가장에 따

61) 체약 상대국은 싱가포르(2002.11 발효), 멕시코(2005.04), 말레이시아(2006.07), 칠레(2007.09), 태국(2007.11), 인도네시아(2008.07), 브루나이(2008.07), ASEAN(2008.12), 스위스(2008.12), 필리핀(2009.09), 베트남(2009.10), 인도(2011.08), 페루(2012.03)임

라 임검, 수색 또는 압류를 할 수 있고, 시급한 경우에는 범칙사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허가장은 다른 세관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칙사건이 존재하고 범칙사건의 종료 시에 발각된 사건에 대해 증거수취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범칙현장에서 임검, 수색 또는 압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압류를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창고 등 기타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세관 공무원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 또는 해상 보안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세관의 관할 구역 외에서 그 직무를 집행 할 수 있다.

나. 처분

세관공무원은 신고납세 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에 관한 관세 범칙사건(법 제110조 제1항의 기수범, 미수범 및 방조자 포함)과 관련하여 당해 거짓 기타 부정행위의 조사에 대해 범칙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납세 방식 적용과 관련한 관세 범칙사건을 제외한 기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즉시 조사결과를 세관장에 보고하여야 하나, 범칙 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범칙 혐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증가 은폐 또는 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해 범칙이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납부해야 할 취지를 통고해야 한다. 다만,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는 경우 및 범칙자가 통보 취지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2일 이내에 통보 취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VIII. 기타

1 AEO 제도⁶²⁾

가. 개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무역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2005년 WCO에서 마련한 제도로, 화물의 보안관리와 법규준수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은 수출입업체에 AEO 공인을 받지 않은 업체보다 신속하게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상대방 국가와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하면 AEO 공인업체는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에서도 통관절차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11월 우리나라와 MRA 체결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들에게도 통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AEO 공인기업들은 일본 세관에서도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AEO 혜택과 함께 물류비용과 통관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의 2006년 3월에 우리나라보다 일찍 AEO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4월부터 통관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 화물이용 운송사업자 등으로 AEO 대상 민간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수입자, 수출자, 창고업자, 통관업자, 운송업자, 제조업자의 부문의 6개 당사자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AEO 공인을 받은 특례수출자 235개, 특례수입자 89개, 특정보세창고업자가 116개, 특정보세운송업자

62) 정재호·박지우·양지영, 「주요국의 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p. 37~44.

가 8개, 통관업자 86개, 제조사 0개로 수출 부문의 AEO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⁶³⁾ AEO 제도가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특혜를 부여하지 않음에도 수출업자의 비중이 큰 것은, 수출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다.⁶⁴⁾

나. AEO 공인요건

공인요건은 ① 통관절차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의 보유 여부, ② 통관수속의 이행에 필요한 법규준수 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③ 관세관계법령의 위법여부 및 ④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통관 업무수행능력은 일본 전자통관시스템인 NACCS(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법규준수 이행체계 부문은 수출입 신고부서의 총괄, 감사 등 책임자, 직위 등의 조직을 갖추고 법규 위반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업무이관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주기적인 법규준수 교육 및 훈련 등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업무분장과 법규준수도는 일정기간동안 관세 관계법령의 위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체납기록이 없어야 하며, 특례수출입자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관세 법규를 위반한 임원, 법인, 대리인 등을 고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인 등급은 우리나라가 A, AA, AAA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공인 및 비공인기업으로만 구분한다.

다. AEO 공인 혜택

일본은 수출입 당사자에 따라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당사자별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자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전 신고, 화물 인수 후에 납세신고 및 월별납

63) 관세청,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64) 최준호·한상현,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MR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 관세사와 일본 통관업자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5호, 2010. 12., p. 405.

세신고가 가능하고 수입신고 시 납세심사와 물품검사 등이 면제되는 특례수입신고제도(Authorized Importers' Program)를 운영한다.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음과 동시에,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화물의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가 가능해 진다. 또한 수입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리성이 향상되며, 또한 다음과 같이 신고 절차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한다.

- (1)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절차가 완료됨
- (2) 수입신고 시 신고 항목이 줄어들음
- (3) 수입신고 시 납세에 대한 심사·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고 또한 세관의 심사·검사에서 범규준수 등의 우수함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 재고 관리가 더욱 용이함
- (4)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않고 납세신고를 추후에 할 수 있음
- (5) 납세신고를 추후 한꺼번에 할 수 있음

수출자의 경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도 화물이 장치된 장소에서 수출신고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물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창고업자는 200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보세장치장 등을 신설할 수 있고 허가수수료가 면제되고 물품검사 등 또한 면제된다. 통관업자에 대해서는 화물도착 전에 수입신고와 허가를 허용하여 물품을 즉시 인수할 수 있고, 화물 인수 후에 납세신고와 월별 납세신고가 가능하다.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건별로 운송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보세지역 반입 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자는 2009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아직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없다. 보세지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표 2-VIII-1〉 일본의 AEO제도

공인부문		공인혜택
수입자	특례수입신고제도	- 화물의 도착 전 신고 및 허가 - 물품 인수 후 납세신고, 월별 납세신고 - 물품검사 면제
수출자	특례수출신고제도	- 보세지역 외의 장소에서 수출신고, 수출허가 - 물품검사 면제
창고업자	특정보세승인제도	- 보세장치장 신설 신고 - 허가수수료 면제
통관업자	인정통관업자제도	- 화물의 도착 전 신고 및 허가 - 물품 인수 후 납세신고, 월별 납세신고
운송업자	특정보세운송제도	- 건별 보세운송 허가 생략 - 보세지역 반입 전 수출신고
제조자	인정제조자제도	- 보세지역 반입 전 수출신고

자료: 연구자가 직접 작성

라. AEO 공인 절차 및 사후관리

AEO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AEO 공인을 받게 된다.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AEO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기업은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 1회 이상의 자율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세관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뷰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세관의 심사에서 발견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인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공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기의 사후 심사를 받고, 이후로는 3년마다 공인 연장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2 사전심사제도^{65) 66)}

가. 개요

일본의 사전심사(事前敎示)제도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화물의 세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서신으로⁶⁷⁾ 질의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HS 코드 및 세율은 물론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과세가격, 타 법령의 요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결정서의 내용을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수입신고 심사 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 예정 화물의 관세 등을 알 수 있어 원가계산, 판매계획 등 의사결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물의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적절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여 물품의 인수도 빨라질 수 있다.

나. 사전심사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 개요

물품 수입예정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관세 평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구두(전화 및 세관창구에 문의)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서면교시신청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납세)신고 시 적용되지 않고, 답변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65)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a>

66) 이상엽·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p. 50~61.

67) 원칙적으로 문서로 진행되나, 전화 및 세관창구를 이용한 구두 신청 및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구두신청 및 이메일에 의한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음

세관에서 답변한 사전심사 회답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된 유효기간(최대 3년) 동안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 시 적용된다. 다만,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의 경우 서면교시 신청에 준하여 전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절차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전심사 신청서(관세평가신청용) 양식 C-1000호-6의 1부 및 매매계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판단하여 사전심사회답서(관세평가답변용)를 발급한다. 회답서에는 요청된 거래내용 요약, 신청인의 견해,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의 결정내용 및 사유가 기재된다.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추가정보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신고 되었거나 신청된 거래가 가상, 불법 등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 사전심사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

회답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사전심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의 회답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사전심사 신청인의 성명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며, 공개를 통한 조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 회답서 사본을 다른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회답서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가 된 경우 세관은 해당 회답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처리하여야 한다. 관세평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변경되거나 사실 관계 및 상황이 변경된 경우 세관은 회답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회답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본래의 회답서는 적용할 수 없다.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회답서(관세평가답변용)에 대한 의견 신출서 C-1001호-1 1부를 작성하여 사전심사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한다. 재심사 신청은 사전심사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서는 관세평가센터(National Valuation Center)에 전달되어 재검토되고, 답변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표 2-VIII-2〉 일본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주요 쟁점

- 운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 문제
-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1방법)
- 제1방법 이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문제
- 생산지원 비용
- 로열티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금액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기타 연속 판매에서의 과세가격 문제

자료: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2009. 12.

2) 품목분류 사전심사

가) 개요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있는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문서로 문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두상(전화 및 세관창구 문의)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나) 절차

사전심사 신청은 물품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신청양식 C-1000호 1부 및 견본, 사진, 도면 등 물품의 제조공정, 성분, 규격,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한다. 수입예정지역에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과 가까운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의 세번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한 후 사전심사회답서를 발급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답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회신은 전국의 각 세관에 사전심사 질의가 접수되면 접수한 세관에서 이에 대한 회답안을 작성하여 총괄관세감사관실에 송신하고, 총괄관세감사관실에서는 회답안을 심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심사의 회답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처리 건수는 연간 4,000여 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식품류이다.⁶⁸⁾

〈표 2-Ⅷ-3〉 일본의 원산지 사전심사 답변 항목

등록번호	사전심사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심사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심사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화물의 개요	사전심사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성상, 성분비율 등)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9자리로 구성)
관세율	-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관세율 - 협정세율은 관세 및 조정금액의 합계
내국세율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내국세율(연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분류 이유	상기 세번으로 분류되는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심사 관련 법령의 근거

68)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p. 36.

다) 사전심사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

사전심사 회답서의 답변 내용은 회답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수입신고 시에 적용된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현품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및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등 관련 상황이 변경된 경우 회답서는 무효처리된다.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양식 C1001호 1부를 작성하여 사전심사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사전심사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3) 원산지 사전심사

가) 개요

원산지 사전심사는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신청과 취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신청이 권장된다.

나) 절차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재, 품목번호, 가공내용 및 제조방법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전심사신청서(원산지 신청용) C-1000-2호 양식 1부와 원자재내역서, 제조공정도, 사진, 도면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회답서(원산지 답변용) C-1000-3호를 발급한다.

서면 사전심사와 서면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된 이메일 사전심사 신청 및 답변의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신청자 성명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공개가 불이

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본의 비특혜 원산지를 포함한 전체 원산지 사전심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Ⅷ-4〉 일본의 원산지 사전심사 답변 항목

등록번호	사전심사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심사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심사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4자리, 6자리 또는 9자리로 구성)
화물의 개요	사전심사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제조공정, 가공이 행해진 국가 등)
종별	GSP와 EPA 특혜세율 등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등
답변	종별에 근거한 답변
원산지 인증 이유	원산지 인정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심사 관련 법령의 근거

다) 사전심사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

세관이 발급한 답변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후 최대 3년간 수입신고 심사에 반영된다. 신청 내용과 현품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령 등의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변경된 경우, 답변내용이 법령 등의 적용을 잘못된 경우에 회답서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두나 이메일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서면교시 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받은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사전심사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C-1000호 1부를 작성하여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I. 수입통관 절차

1 개요

통관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관세법 제6장(통관) 내 제67조 내지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상 제5장(통관)에서, 관세법 기본 통달에서는 제6장(통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⁶⁹⁾ 또한 기타 관세 관련 법령인 관세정률법에서는 관세법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각종 관세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통관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 후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검사를 받은 후, 관세·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은 물품은 비로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원칙적인 수입통관 절차 이외에 일본에서는 예비심사 또는 특례수입제도를 통해 신속 통관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시 납세 담보를 이용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자 표준 코드 또는 세관발급코드의 발급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신청

69) 관세법 기본통달 제6장(통관) 제1절-일반수출통관, 제2절-특수수출통관, 제3절-일반수입통관, 제4절-특수수입통관, 제5절-경제 협력 협정(EPA)에 따른 수입통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을 통해 이들 코드를 부여받음으로써 통관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일본으로 소금, 담배 등 특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법령 외 식품 위생법,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기타 법령에서 승인,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으로부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승인 등을 받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전 절차

가. 수출입 코드 신청

1)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Japan Shippers & Consignees Standard Code)⁷⁰⁾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이하 '표준코드')는 일본에서 수출입자를 특정하는 12자리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알파벳 중 'I'와 'O' 제외)이 조합된 코드로, 수출입 업무의 당사자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이다. 관련 절차는 JASTPRO(일본무역관계절차간소화협회)⁷¹⁾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코드', '수출입자 코드', 'NACCS 코드', '저스트 프로(JASTPRO) 번호' 등으로 불린다.

표준코드가 없어도 수출입 통관은 가능하지만, 표준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통관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표준코드를 취득함으로써 무역업자의 이름을 간소화할 수 있고, 다른 무역업자와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와 무역업자 파악 등을 용이하여 통관이 신속해진다. 또한 통관 실적이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기 때문에, 통관 실적이 있는 화물은 이전 실적을 바탕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70) <http://www.jastpro.org>

71) Japan Association for Simpl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또한 표준 코드를 취득함으로써 NACCS 전용 계좌를 이용한 관세 등의 계좌 대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수입자가 설정한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거치 담보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제도(3개월)의 이용이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신고의 특례제도(관세법 제7조의 2), 수출신고의 특례(관세법 제67조의 3), 종합평가제도(관세정률법 제4조 등) 기타 편리한 통관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표준코드의 신규등록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서류⁷²⁾를 JASTPRO에 우송 또는 제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3년에 한 번 갱신을 필요로 한다.⁷³⁾ 무역업자의 등록 신청에 따라 JASTPRO가 표준 코드를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영업일에 NACCS에 반영된다.

또한 수입식품 감시 지원시스템(FAINS), 동물검역절차 전산처리시스템(ANIPAS), 수입식물 검사 수속 전산처리시스템(PQ-Network)에서도 표준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코드는 통관 업체가 세관에 수출입 신고 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화물관리, 선하증권(B/L) 작성, 관세 등의 계좌 이체, 각종 장표(帳票)류의 작성 등 상기 시스템의 외부 각 시스템 참가자의 컴퓨터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2) 세관발급코드⁷⁴⁾

JASTPRO의 표준코드와는 별도로 세관에서는 2008년부터 무료로 세관발급코드를 발급하고 있다. 수출입 신고 시 하나의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코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따로 세관발급코드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둘 다 취득한 경우 표준코드를 세관발급코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면 된다.⁷⁵⁾

세관발급코드는 표준코드와 마찬가지로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NACCS에 의한 수출입신고 등의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 12자리 코드의 첫 번째 자리는 세관 수

72) 필요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주민표 또는 주민기본대장*임(*우리나라의 주민등록표에 해당)

73)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수수료 6,600엔(갱신수수료 3,150엔)

74) www.customs.go.jp/zeikan/seido/zeikancode.htm

75) JASTPRO 표준코드를 사용 중인 수출입신고 등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세관발급코드로 전환해야 함

출입자의 경우 숫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알파벳('P' 제외)으로 시작하며, 2번째 내지 8번째 자리는 숫자의 일련번호, 9번째부터 12번째 자리는 본·지점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세관에서는 증가하는 수출입 신고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입 절차 편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수출입 신고 시 수출입자, 송하인(shipper)·수하인(consignee)을 식별하기 위한 세관발급코드를 세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세관발급코드를 취득하지 않아도 수출입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 사항의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출입자 코드가 있으면 NACCS에 의한 수출입 신고와 관련하여 포괄평가신고·포괄 보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소비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거치 담보와 계좌 이체 납부(전용 계좌 및 실시간)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세관발급코드의 신규 신청은 전자 메일로도 가능하며, 법인과 비거주자 외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표, 개업신고서 등의 확인 서류는 전자 메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⁷⁶⁾ 신청 접수 후부터 발급 통지까지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나. 요건 및 승인

통관을 규정한 관세 관련된 법령 이외에 품목별 규제법을 두어 각 소관 부처에서도 수입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테면,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과 관련된 품목을 관리하며, 농림수산성에서는 비료 단속법, 농약 단속법,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과 관련된 품목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부처에서 국민 보건·위생, 공안 풍속,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관

76) 신규 신청 필요서류 - 1. 법인 : 신청서, 위임 인증서(대리 신청 시), 2. 개인 : 신청서, 주민표, 위임 인증서(대리 신청 시), 3. 개인 사업자 : 주민표, 주민표상 기재된 이름과 개인사업자 명이 모두 포함된 관공서 발행 공적 서류(개인신고서 등), 위임 인증서(대리 신청 시), 4. 비거주자 : 신청서

리하고 있다.⁷⁷⁾

수입허가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승인이나 허가 등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수입신고 전에 품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확인하여 각 해당 부처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 한다.

다. 특정 물품 수입자 사전 허가 등

1) 소금 수입(소금 사업법)

소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특정 판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소금 사업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소금의 특정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자가 사용 포함)에는 ‘소금특정판매업자’로 세관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수용 소금만 특정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용 소금 특정판매업자’로 세관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특수용 소금이란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에 해당하는 소금, 시약 염화나트륨, 세균 등의 시험 연구를 위한 매체로 사용되는 소금 기타 학술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소금, 구리 도금 처리 과정 등에서 촉매용으로 사용되는 소금 등이다.

2) 담배(담배 사업법)

담배나 시가 등 담배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배 사업법에 따라 재무 장관에게 특정 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등록이 불필요하다.

입국자가 개인 사용으로 휴대 또는 별송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면세 수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며, 그 경우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다.

77) 부처 별 규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2편 V. 수출입규제, 3.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3-1-1〉 면세 수량을 초과한 휴대 별송 담배의 관세 등

담배의 종류	관세	담배세와 담배 특별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퀵런 담배	잠정 무관세	1,000개당 11,500엔 ¹⁾		- ²⁾
파이프 담배	협정 29.8% 또는 기본 35%	1kg당 12,244엔	1g은 퀵런 1개로 변환	8%
엽퀵런	협정 16% 또는 기본 20%	1kg당 12,244엔		8%

주: 1) 입국자가 수입하는 퀵런의 담배세 등의 세율 특례에 의한 것

2)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퀵런에 대해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음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3) 주류(식품위생법 등)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수입 주류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 주류의 총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휴대품이나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760ml 정도의 것을 1개로 함)까지 관세, 소비세, 주세가 면제된다.

자신의 영업장(술집, 음식점 등)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주류의 판매 목적인 경우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3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당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 해야 한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표 3-1-2〉 일본의 세관과 관할 지역

세관명	관할
하코다테 세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및 아키타현
도쿄 세관	야마가타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일부), Tokyo, 니가타현과 야마나시현
요코하마 세관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일부) 및 가나가와현
나고야 세관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과 미에현
오사카 세관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나라현과 와카야마현
고베 세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및 고치현
모지 세관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일부), 사가현(일부), 나가사키현(일부),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나가사키 세관	후쿠오카현(일부), 사가현(일부), 나가사키현(일부), 쿠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
오키나와 지구 세관	오키나와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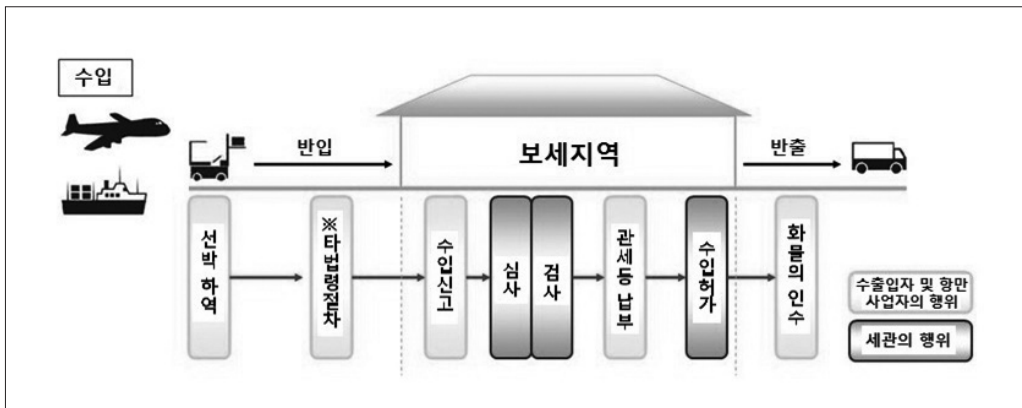
해상 일반 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수입신고~수입허가)은 2.6시간이며, 항공 화물의 소요시간은 0.3시간이다. 특례 수입신고제도(AEO)를 이용한 화물일 경우 해상, 항공화물 모두 0.1시간이 소요되며 일반 화물과 비교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⁷⁸⁾

일본에서의 수입신고는 대부분이 NACCS 시스템을 통해 전자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신고 건은 구분 1(간이 심사 - 서류 제출 생략), 구분 2(서류 심사), 구분 3(화물 검사) 중 하나로 분류되어 통관이 진행된다.

세관의 심사 또는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수입화물은 세금의 납부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다.

[그림 3-1-1] 일본의 수입 절차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연구자 번역

가. 수입신고 개요

1)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인(납세의무자)은 관세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송장(仕入書, 인보이스)상의 수취인, 송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된 수취인이다.

단, 관세 관계 법령에서 수입신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한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이 수입신고 전에 전매된 경우 전득자가 수입자가

78) Kotra 도쿄 무역관, 국가정보, 통관 및 운송제도, 2014.05.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 절차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업체(통관사)가 대행하고 있다. 통관사는 통관업법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 자로, 우리나라의 관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전자 통관 시스템

일본에서는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수출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처리하고 있다.⁷⁹⁾ NACCS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 및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 기타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절차 및 관련 민간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예전 NACCS는 항공화물 수속 등을 실시하는 Air-NACCS와 해상화물 수속 등을 실시하는 Sea-NACCS가 각각 독립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8년 10월 Sea-NACCS 갱신 및 2010년 2월 Air-NACCS 개정을 계기로 시스템의 재검토를 실시해, Air-NACCS와 Sea-NACCS를 통합하고, 국토교통성이 관리·운영하고 항만 EDI 시스템과 경제산업성이 관리·운영하고 있었던 JETRAS 등 관련 부처 시스템에 대해서도 NACCS에 통합하였다.

NACCS에 입력된 정보는 세관의 CIS(Customs Intelligence Data Base System, 통관 정보 종합관정 시스템)를 통해서 리스크가 높은 화물, 즉, 불법 수출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화물과 리스크가 낮은 화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선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⁸⁰⁾ 또한 새로운 NACCS는 새로운 화주, 해상 화물업(海貨業), NVOCC⁸¹⁾ 등을 참가자뿐만 아니라 항만·공항의 물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시스템이다.

NACCS는 항공은 수입화물이 공항 도착 후 국내에 인수될 때까지, 선박은 수입화물 선박 도착부터 국내 인수까지의 세관 수속과 민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79) 세관 수출입 신고의 약 98%가 NACCS를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있음(출처: Kotra 도쿄 무역관, 국가정보, 통관 및 운송제도, 2014.05.)

80) KOTRA 도쿄 무역관, 국가정보, 통관 및 운송제도, 2014.05.

81) Non-Vessel-Operation Common Carrier, 수송수단이 없는 해상화물 운송업자

3) 출항전 보고⁸²⁾

출항전보고제도란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적재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과 관련한 적하정보를 당해 선적항을 출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2014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적하정보 사전보고 제도는 ① 화물 정보의 보고가 입항 전으로서 보고에서 입항까지 단시간이고, ② 혼재화물에 대한 자세한 품명 및 실제 수취인 등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③ 세관에 보고된 화물 정보가 모두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의 타이밍, 보고 내용 및 보고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세법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션(마스터) B/L을 기초로 화물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하여 일본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 무역선의 운항자 등과 관세법 제15조 제8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하우스 B/L을 기초로 화물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화물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선박 회사 등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하송인은 외국 무역선이 해당화물을 선적하여 선적항을 출항하기 24시간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이용하여, 송하인과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 정보, 품명, 대표품목번호(HS 코드(6자리)), 총중량, 용적 등 화물정보와 컨테이너 정보 등 오션(마스터) B/L 적하정보 또는 하우스 B/L 적하정보란의 항목들을 보고한다.

보고기한까지 적하정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NACCS를 통해 SPD 코드 사전통지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해당 신고인은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선박 회사 등 또는 이용 운송사업자 등이 보고기한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하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하역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2) 관세청,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4) 수입신고 제출서류

가) 수입신고서

수입신고는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수입신고서상 기재 사항은 화물의 기호·번호·품명·수량·가격, 화물의 원산지 및 하역 장소, 화물을 신고 있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화물의 장치 장소,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작성방법>

수입신고서는 검은 색의 펜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정정할 때는 정정하는 내용을 2개의 선으로 지우고 위쪽에 정정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 인을 날인하면 된다.

- (1) 신고 연월일
- (2) 신고하는 세관 관서
- (3) 수입자 자신이 수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 날인
- (4) 수출자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상 발송인)
- (5) 통상 수입의 경우 IC 틀안에×표시
- (6) 화물선 목적항
- (7) 적재선(기) 명칭
- (8) 화물선(항공기)의 입항 연월일
- (9) 원산지
- (10) 적출국 도시명과 국가
- (11) 선하증권(B/L)의 번호
- (12) 화물 보관 장소
- (13) 신고번호 등: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 (14) 품명(송장의 상품명)
- (15) '번호'란에는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코드 번호 6자리, '통계 분할'란에는 통계 번호 3자리
- (16) 실행 관세율표상 해당되는 통계 단위
- (17) (16)의 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
- (18) CIF 가격(엔화)
- (19) 적용되는 세율, 신청 구분에 따라 아래 표에 ×표시(면세의 경우 Free)
- (20) 신고 가격(천엔 미만 버림)에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관세액) 엔 단위까지 기입
- (21) 소비세, 주세 등의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부과 물품에×표시
- (22) 신고 가격에 관세액(백엔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
- (23) 내국 소비세의 세율
- (24) (20)과 같이 계산. 엔 단위까지 기입
- (25) (24)에 기입 한 소비 세액에서 백엔 미만 반올림 한 금액
- (26) 지방 소비세의 세율
- (27) (25)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엔 단위까지 기입
- (28) 세목마다 세금을 계산하고 각 세목마다 각각의 합계액(백엔 미만 버림)
- (29) 화물 외장 총개수, 마크 및 번호
- (30) 수입 승인 증서 등이 있으면 그 번호
- (31) 첨부 서류에 따라 '有'란에 ×표시
- (32)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 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표(종합 신고의 경우에는 접수 번호 포함)

주: BP: 수입허가 전 인수 승인 신청, IS: 창고 입고 승인 신청, IM: 이입(국내에서 물자 이동) 승인 신청임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나) 필수 서류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외에 필요한 서류는 ① 송장(invoice, 仕入書), ②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해상화물 운송장(AWB, Air Way Bill), ③ 보험료 명세서, ④ 운임 명세서, ⑤ 포장 명세서이다.

송장은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송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일반적인 송장의 의미로 사용한다. 송장은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송장에는 수출입자의 회사명과 주소와 이름, 송장 번호와 작성일자, 가격 조건, 물품의 단가 및 수량, 원산지, 출발항과 도착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매도인인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

선하증권은 발송인이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박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선박화물영수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물품의 수취인에게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한 권리 증권의 기능을 하는 서류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라는 면에서 선하증권과 유사하지만,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이다. 항공화물 운송장 역시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으로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행된다.

일본은 CIF 금액(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하므로, 운임 명세서와 더불어 운송 보험료 명세서도 필수 서류로 구비해야 한다.

다) 추가서류

그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 타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 방역법 등의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특혜 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세 명세서(감면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필요하다.

5) 수입신고와 물품의 장치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 후에만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장소 외에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의 화물은 세관 지정 보세구역 외 다른 장소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을 하고, 필요 시 지정 구역 외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모양, 성질에 따라 지정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어려운 화물
 - 보세 지역에 장치할 수 없는 거대중량 화물과 대량 화물
 -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화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화물
 - 귀중품, 위험물, 식료품 등 장치와 보관에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화물
- 보세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화물
- 세관장이 화물을 보세 지역 외부에 둘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사료(가루)와 철광석·자갈 등의 벌크화물의 경우 혼재되어 있지 않고, 세관 검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선 취급’ 또는 ‘부중(艇中) 취급’으로 본선이나 바지선에 승선한 상태에서 수입 검사 및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선 취급 또는 부중 취급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가 된다.

야채, 해산물 등 신속한 인수가 필요한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예비신고에 의해 규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세구역에 반입 없이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도착 즉시 수입신고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 보안 관리와 사내규정 준수 체제가 정비되어 사전에 세관에서 ‘특례 수입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세관의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NACCS를 통한 수입신고 시 심사는 3가지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즉, 수입신고를 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수입신고에 대해 심사 구분이 간이심사(구분 1)와 서류심사(구분 2), 화물검사(구분 3)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전송된다.

간이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며, 전산상의 정보를 통해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세관의 판단에 의해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표 3-1-3〉 수입신고 후 심사의 구분

구분	심사 종류	심사 내용
구분 1	간이심사	-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면제 - 무세 또는 면세,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제도나 계좌이체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납세)신고 후 즉시 수입허가 - 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에 서류 제출해야 함
구분 2	서류심사	- 세관에 통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구분 3	화물검사	- 세관원에 의한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함

자료: www.jetro.go.jp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수입신고 후 세관장은 당해 수입(납세)신고에 대한 품목 분류, 관세율, 관세액이 올바른지,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화물 검사는 물품이 수입(납세)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 화물이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사회적 물품의 유입을 저지하고,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정한 관세 징수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수입(납세)신고 내용과 현품과의 동일성 확인이 이루어진다.

1. 각성제·마약, 권총 등 사회적 물품과 위조 브랜드(모사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 수입 금지된 물품이 없는지 여부
2. 식품 위생, 식물 보호 등의 관점에서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의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승인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
3. 허위 원산지 또는 오인을 야기할 만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

4. 적절하게 납세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

화물의 검사 방법으로는 소량의 화물만을 검사하는 견본 검사와 일부 검사, 전체 검사 등 3가지가 있으며, 검사의 장소에 따라 검사장 검사, 현장 검사, 부중(艇中) 검사, 본선(本船)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검사장 검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의 검사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 검사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이 어려운 화물(대형 기계 등)의 경우, 부중 검사의 경우 배에 물품(목재, 화학 제품 등)이 쌓여 있는 경우, 본선 검사는 외국 무역선에 물품(밀, 나무 등)이 적재된 경우에 행해지며,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지역 외 검사 시 허가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검사 1시간 당 5,000엔(NACCS로 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4,700엔)이다.

또한,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물품 규제도 이루어지는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는 화물에 대해서 세관은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간을 지정해 그 부분을 제거 또는 정정하게 하거나 그 화물을 반송할 수 있다.⁸³⁾ 이는 허위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원산지 표시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의 취지에 맞게 마련된 규정이다.

다. 세금 납부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는 수입신고서에 해당 화물에 대한 과세표준 기타 사항 외에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신고에 의해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 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0만엔 이하의 우편물, 상계 관세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경우에만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⁸⁴⁾

납부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신고납세자의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및 세관장의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신고납세와 관련해 과소 신고와 무신

83) 관세법 제71조

84) 관세법 제6조의 2(세액의 확정방식)

고에 대한 가산세 재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도적인 거짓 신고 시 증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및 소비세 등의 납부 방법은 직접 은행 또는 세관에서도 가능하나, 전자납부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수입의 허가가 가능하다.

1) 세액의 수정 및 경정 등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를 한 자는 신고 납세한 관세, 내국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세액을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세액의 과부족에 따라 경정 청구,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부족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세 경정 청구서(세관양식 C-1030)를 작성하여 경정 청구를 하며, 올바른 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했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정 청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⁸⁵⁾ 이내이다. 세관은 검토 후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한다.

납부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수입의 허가 전에 세액의 부족에 대해 알게 된 때에는 서면에 기재한 세액 등을 보정하여 다시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 수정 신고를 하거나, 세관의 증액 경정을 받은 후에는 부족 세액에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상당액이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당초 신고 세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가 가산된다.

수정 신고에 의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납기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며, 이 세금에는 연체세가 부과되는데, 연체세액은 법정 납부기한(일반적으로 수입의 허가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납부액에 연 7.3%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연체세율이 연

85)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2011.12.시행)

14.6%가 적용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에 따른 세액 등의 계산이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 기타 세액 등을 조사한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조사에 따라 당해 신고에 따른 세액을 경정⁸⁶⁾한다. 또한, 납세신고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 수입 시(특례신고물품은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당해 신고가 없을 때에는 세관장이 해당화물에 대한 세액 등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 이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세액을 경정한다.

〈표 3-1-4〉 관세 경정 청구 기간 등

	내용	기간 ¹⁾
1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법정 납부기한 ²⁾ 으로부터 5년 이내
2	경정·결정·부과 결정기간	법정 납부기한 ²⁾ 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 이내
3	수정신고에 의해 납세할 수 있는 기간	
4	환급(과오납 등) 청구 기간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주: 1) 본 기간 규정은 2011.12 개정되었음

2) 일반 수입신고 화물: 수입일(수입허가일), 특례신고 화물: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수입허가일의 다음 달 말일), 수입허가 전 인수 승인화물: 승인일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관세를 징수해야 할 외국 화물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앞서 당해 관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그 체납처분비의 징수 순위는 각각 국세징수법상 국세 및 그 체납처분비와 동 순위로 한다.

86) 신고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 과세관청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것

2) 세금 관련 가산세

〈표 3-1-5〉 가산세의 산출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 세액×10%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세액×15%	
증가산세	과소신고	부족 세액×35%
	무신고	무신고 세액×40%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가) 과소신고 가산세⁸⁷⁾

납세신고 후 세관의 조사에 의해 세금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신고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수정 신고 등에 의해 증가되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과소 신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세관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정 신고 등에 의해 증가된 세액 중 당초 신고 세액 또는 50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 부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무신고 가산세⁸⁸⁾

납세신고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화물에 대해 세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결정 후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등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결정 등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만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 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무신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87) 관세법 제12조의 2

88) 관세법 제12조의 3

부과되지 않는다.

다) 중(重)가산세⁸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가 과세가격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대신 과소신고 가산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의 35%에 상당하는 증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가 은폐 또는 거짓으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계산 기초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증가산세를 부과한다.

3) 세금 납부 방법

관세법상에 규정된 세금의 납부 절차⁹⁰⁾는 납부 세액에 상당하는 금전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일본 은행(국세 수납 대리인 포함) 또는 세관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납부를 대신해 아래와 같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멀티 페이먼트(multi-payment) 방식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등의 수납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공공요금 등(전화·가스 등의 요금과 세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PC(인터넷 뱅킹), 휴대전화(모바일 뱅킹), ATM 등 각 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된 때에 당해 납부 정보가 금융기관에서 수납기관에 통보되는 네트워크이다. 이에 따라 통관 시 세관의 심사 종료 후 화물수입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수납기관번호(세관은 00120), 납부번호 또는 확인번호 등을 표시한 '납부번호통지 정보'가 송신된다.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 번호가 필요하므

89) 관세법 제12조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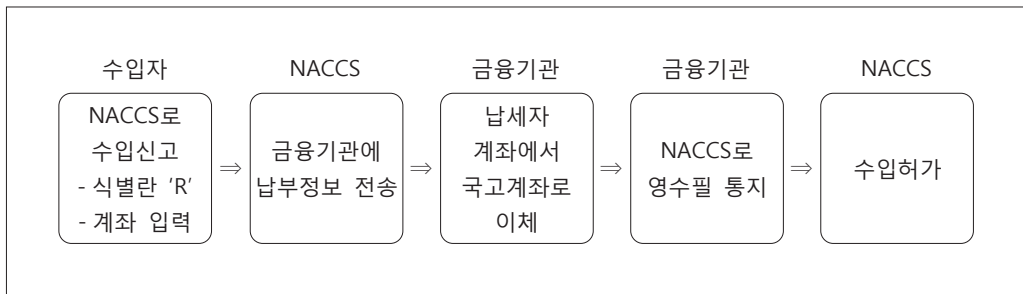
90) 관세법 제9조의 4

로, 해당 통지 정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하며 PC 또는 휴대전화, ATM 등 편리한 수단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실시간 계좌 이체(다이렉트) 방식

기존의 전자납부 절차는 개별 납세신고를 할 때마다 납세자가 납세 지시를 하여야 하는 등 편의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⁹¹⁾ 수입(납세)신고와 동시에 납세자의 예금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는 실시간 계좌이체(다이렉트) 방식을 도입하였다. 자동으로 관세 등의 납부가 가능하며,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납부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입화물의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다.

[그림 3-1-3] 실시간 계좌 이체 방식



자료: 연구자 작성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우편 등으로 이용신청 접수를 통해 이용자(예금주), 금융기관, NACCS 센터 3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전에 계약을 맺은 수입신고자(통관사 포함)가 수입신고 시 NACCS에 신고 사항 중 납부 방법 식별란에 'R'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란에 미리 지정한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수입신고가 되면 NACCS에서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및 납세액 등의 납부 정보가 전송된다. 납부 정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납세액에 대해 미리 지정된 납세자의 계좌에서 국고금 계정에 이체 처리하며, 납부가 이루어지면 영수필 통지 정보가 금융기관에서 NACCS로 전송되고, 영수 통지에 따라 NACCS에서 영수, 수납 등의 처리를 하고

91) 2008년 10월, 개정된 sea-NACCS에 도입하였으며, 2010년 2월 Air-NACCS 개정에 따라 항공화물에서도 이용 가능함

수입허가가 이루어진다.

본 납부 방식은 자동으로 관세 등의 납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신고 시마다 납부를 지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화물의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외에, 자동이체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입신고 시에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신고를 할 때마다 유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시 계좌 잔액이 부족하게 될 지라도, 일반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 잔액을 채우면 즉시 납부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단,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의 병용은 불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이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라. 수입허가 후 납부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이러한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즉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있다. 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자금운용 절차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개별연장방식, 포괄적 연장방식 및 특례연장방식의 3가지 방식이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국채 및 지방채, 회사채 기타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재단 등 보증인의 보증 및 금전이다.

세관에 제출하는 구체적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국채 및 지방채: 공탁서의 정보. 단, 등록 국채의 경우 등록된 통지서
(※ 포괄적 연장 방식에서는 공탁서의 정보. 등록된 경우 등록완료 통지서 또는 담보권 등록 내용 증명서를 요함)
- (2) 채권 기타 유가증권: 공탁서의 정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됨
-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 (4) 건물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의 등본 또는 등록사항 증명서
- (5) 재단 등: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6) 보증인의 보증: 보증서 또는 법령보증증권(수입화물에 따른 납세 보증)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은행, 장기신용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 중앙금고, 신용금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외국 생명보험 회사 등 또는 외국 손해 보험 회사 등

(7) 금전: 공탁서의 정보

국채 및 지방채, 회사채 기타 유가 증권 또는 금전의 공탁은 지방 법무국에 한다.

〈표 3-1-6〉 납부기한 연장 제도

납기 연장 방식	연장 기간 및 신청서류
개별 연장 방식	- 개별 수입신고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방식 -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신청서와 담보 제공 - 수입허가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 인정
포괄적 연장 방식	- 특정 개월 분의 수입신고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방식 - 수입자가 해당 특정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서와 담보 제공 - 해당 특정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 인정
특례 연장 방식	- 특례 수입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인수신고(引取申告)를 한 특례 수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방식 -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신청서와 담보 제공 -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의 연장 인정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1) 개별연장방식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며 담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별연장방식의 신청은 수입자 자신 또는 대리인으로 통관 업체도 할 수 있으며, ‘관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부기한 연장(개별) 신청서’(세관양식 C 제1003호)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통지서 및 담보 보관증을 교부한다. 담보 보관증은 담보 해제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담보 해제 신청 시 까지 보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수입허가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관세액은 제공한 담보 금액의 범위 내가 된다.

또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및 기타 내국 소비세에 대해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2) 포괄적 연장방식

특정 달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납세액을 포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정 달의 전월 말일까지 '관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부기한 연장(포괄) 신청서'(세관양식 C-1004호 또는 C-1005호)를 제출하고, 해당 납세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세관은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통지서 및 담보 보관증을 교부하며, 담보 보관증은 담보 해제 시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

- 납부기한을 특정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은 수입자 자신 또는 대리인으로 통관 업체도 할 수 있음
- 신청은 12개월을 한도로 특정 개월분을 하나의 신청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음

나) 담보의 전국 일원화

전국 세관 관서에서 포괄적 납부기한 연장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 '관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부기한 연장(포괄) 신청서(일괄)', 담보제공서 및 담보를 제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전국의 세관 관서에서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특례연장방식

특례수입신고 제도를 이용할 특례 수입자가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관세(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기한 연장(특례신고) 신청서’(세관양식 C-1006호) 및 담보 제공서에 담보를 첨부하여 특례신고를 하는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세관은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통지서 및 담보 보관증을 교부하며, 담보 보관증은 담보 해제 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은 수입자 자신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관 업체가 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을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당해 특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연장되는 관세액 등은 제공한 담보 금액의 범위 내임
-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주세, 담배세 및 담배 특별세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함

나) 전국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담보 제공 제도

특례신고 납부기한 연장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의 어느 하나의 세관 관서에 관세(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기한 연장(특례신고) 신청서, 담보 제공서 및 담보를 제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전국의 세관 관서에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마. 수입허가 후 이행 사항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 수입자뿐만 아니라 특례 수입자의 모든 특례신고화물과 관련한 서류도 의무 보관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의무 보관 기간은 수입허가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7년으로, 대상 자료는 수입물품의 가격 관련 서류, 수출자와의 서류, 수입 물품의 품명, 수량 등에 수입 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다.

〈표 3-1-7〉 수입 자료의 의무 보존 기간

종류	구분	보존기간
비치 장부	품명, 수량, 가격, 수출자 성명(명칭), 수입허가 연월일, 허가 번호 기재(필요 사항이 망라되어있는 기존 장부, 송장 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기입 한 것으로도 가능)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7년
서류	수입허가 화물의 계약서, 운임명세서, 보험료 명세서, 포장명세서, 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매수인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세관장에 수입허가를 받은 화물의 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전자 데이터	전자 거래(EDI 거래, 인터넷 등에 의한 거래, 전자 메일 등으로 거래 정보를 수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당해 전자 거래 관련 정보(거래와 관련된 주문서, 계약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바. 세관의 사후 조사

세관의 사후 조사는 수출입 통관 이후 세관 직원이 수출입자의 사업소 등을 방문하고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의 확인을 하는 조사이다.

사후 조사의 목적은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납세)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고 신고 지도를 실시한다.

신고 납세 원칙에 따라 수입자는 화물 수입 시 자신의 책임에 따라 관세 등의 납부 세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관세 평가에 대한 지식과 납세 의식의 부족, 법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세관은 사후 조사를 통해 신고 납세 제도를 보완하고, 적정한 수입신고를 확보하며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대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후 조사일로부터 과거 3년간이 되며, 부정 행위 등으로 관세 등을 면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최대 7년 전까지 조사대상 기간이 된다.

실지 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 일시와 장소, 대상화물을 세관에서 통지하며, 조사를 통해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적절한 지도와 함께 부족 세액, 과세가 격을 추징한다.

조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은폐나 거짓 신고의 경우 증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한 추징과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품에 대해 계약 사항 및 지불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누락이 없도록 송장 금액, 기타 지불금, 무상 또는 할인 제공 비용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관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후 조사를 위해 관세 관계 장부(품명, 수량, 가격 등 기재), 통관 서류(계약서, 송장, 보험료 명세서 등), 회계 관계 장표, 법인세 및 소비세 확정 신고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4 기타 수입통관 제도

가. AEO 공인기업에 대한 특례 수입신고 제도

특례 수입신고 제도는 보안 관리 및 법규 준수 체제가 정비된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AEO 공인기업)에 대해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무역 보안과 법규 준수가 확보된 자로 세관이 인정한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통관 수속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와 세금 납부

특례 수입신고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하는 경우, 인수신고(引取申告)는 수입할 때마다 화물을 장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 해야 하나, 송장, 보험료 명세서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 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일반 수입신고 시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수입자가 다른 법령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세관이 당해 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해 송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표 3-1-8〉 일반 수입신고 및 특례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NACCS의 경우)

	제출서류	수입(납세) 신고	특례수입신고제도	
			수입(인취) 신고	특례신고 (납세신고)
신고서	수입신고서	○ ¹⁾		
	수입(인취)신고서		○ ¹⁾	
	특례신고서			○
	개별평가신고서	◎		◎
첨부 서류	송장	○	○	△
	계약서	○		△
	운임명세서	○		△
	보험료명세서	○		△
	포장명세서	○		△
	가격표	○		△
	공급자 또는 매도인 간의 거래 관련 서류	○		△
	타법령 증명(허가·승인서 등)	◎	◎	
	증명서(특수관계에 있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서면 증명)	◎		◎
	원산지증명서(편의, 특혜관세)	◎		△
	감면세 또는 경감세율 적용을 위한 명세서	◎		◎
	인증서	◎		◎
	할당증명서(관세할당)	◎		◎

주: 1) 원칙적으로는 제출 불요. 그러나 항공 NACCS를 이용한 신고 중 서류심사 및 화물 검사 처리된 신고에 대해 제출이 필요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납세에 관련된 신고 항목(예: 과세표준, 세액 등)은 수입신고 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에 의한 신고에서는 통상 수입신고에서 55항목인 반면, 특례수입신고제도의 수입신고 항목은 19개이다. 인수신고 시 납세자에 대한 심사와 검사는 기본적으로 생략된다.

납세신고는 1개월 중 받은 때 수입허가 또는 종합하여 신고서(이하 '특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달의 말일까지 수입신고를 한 관서 또는 본관(本關)에서 행하며, 무서류(Paperless) 건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특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 수입자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2) 담보의 제공

특례 수입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 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제공되는 담보를 '보전 담보(保全担保)'라고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전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 (1) 과거 1년 동안, 과소 신고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 (2) 과거 1년 동안 기한 후 특례신고를 한 경우
- (3) 최근 결산(분기 결산 포함) 시 유동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자기자본비율이 30%를 밑도는 경우

상기 (3)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가) 특정 평가기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자
- (나) 분기 결산을 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분기 결산 시 유동비율이 100%를 하회하나, 그것이 두 분기 연속이 아닌 경우
- (다) 국내에 소재하는 완전 모회사가 상기(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기(가)~(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금액은 '전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특례신고하여 납부한 또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관세 등의 합계액이 가장 많은 달의 합계액' 또는 '향후 1년간 수입하

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특례신고에 따라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의 합계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제공 기간은 이 기간에 수입허가를 받은 특례신고 화물에 대한 관세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기간이다. 특례 수입자의 수입 실적 등을 세관이 조사한 결과 담보 금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 금액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제공 기간의 만료 시 담보 제공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공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담보 제공 명령 통지서에 기재된 제공 기간의 첫 날까지 보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신고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는 허용하지 않으며, 특례 수입자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제란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전이라도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 심사·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88년 도입되어 1991년 대폭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비심사제도는 신속 통관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화물이 장치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사용하여 예비신고를 함으로써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예비신고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외국 환율이 공시된 날 또는 예비신고를 희망하는 화물의 선하 증권이 발행된 날 중 늦은 날 할 수 있으며, 통상 수입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 전으로 한다.

본 제도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나, 특히 신선 화물이나 납기가 중요한 화물, 판매 시기 및 사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화물(예: 크리스마스용 물품, 설날 상품 등)의 신속 통관을 희망하거나,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 수입신고 화물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 수입 서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비심사제는 서류의 심사가 화물의 도착 전에 이루어지며,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은 세관 수속 및 다른 법령 절차와의 동시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검사의 필요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알 수 있으므로 화물의 수령을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 필요 여부의 사전 통지 후에라도 검사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의 내용을 변경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비심사제도를 이용한 항공화물 중에서 검사가 필요 없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도착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

〈표 3-1-9〉 예비 심사제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효과	- 신속 통관 도모 - 신선 화물 또는 사업 기회 제한 물품 등에 대해 사전적인 수입신고로 화물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인수 가능한 시일이 단축됨
대상 화물	모든 수입화물
제출 서류	- 예비 신고서(수입(납세)신고서 사용) - 송장, 기타 과세 표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장소	화물 장치 예정 장소 관할 세관
신고 시기	예비신고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외국 환율이 공시된 날 또는 예비신고를 하고자 하는 화물의 선하 증권(항공화물의 경우 Air Way Bill)이 발행된 날 중 늦은 날 (수입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 전)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다. 소액물품 간이통관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소액 화물에 대해,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간단한 통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신고자가 간이통관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절차에 의해 수입통관 한다.

1) 간이통관 절차⁹²⁾

수입자가 간이통관을 희망하는 경우 수입(납세)신고서 또는 수입(인취)신고서에 ‘소액 화물 간이통관 취급(少額貨物簡易通関扱)’이라고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2) 관세법 기본통달 67-4-1 내지 67-4-3

이 경우 수입신고서 상단 중 ‘신고 종별 부호’, ‘화물선 목적항’, ‘적재선(기) 명칭’, ‘입항 연월일’, ‘선하증권 번호’, ‘목적항 부호’, ‘선박 국적 부호’, ‘무역형태별 부호’, ‘원산지 부호’, ‘수입자 부호’ 및 신고서 중간단에 있는 ‘감면세 조항 적용 구분’의 각 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간이통관의 대상은 수입신고서의 품명란 각 난의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것, 수입화물 컨테이너의 재수출 면세 또는 수출화물의 용기로 사용되는 화물의 재수출 면세 규정⁹³⁾에 해당하는 화물에 한정된다.

간이통관으로 신고된 화물이 심사 결과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 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수입(납세)신고서 또는 수입(인취)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 등을 진행 시킨 후, 일반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

소액화물 간이통관으로 취급하는 화물에 적용되는 세번, 세율 및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 등의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후의 수입신고 시 선례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수입(납세) 신고서의 세관 기입란에 “위 화물에 적용된 세번, 세율 및 관세법 제70조 비해당 내용에 대해서 선례로 하지 않는다.”(수입(인수) 신고서의 세관 기입란에는 “위 화물에 적용된 관세법 제70조 비해당 내용은 선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입한다.

2) 서류에 관한 간이통관 제도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여러 명의 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의 합이 1만엔 이하의 서류, 예를 들어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으로 이들이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 함께 운송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용 신고서에 화물의 수입자명,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적하목록(매니페스트),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고, 적하목록이나 인보이스 등에 수입자, 품목별 화물의 과세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93) 관세정률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라. 개인물품의 통관

일본으로 개인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로는 일반 수입통관 외에 우편 통관, 특송 통관,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등의 방법이 있다.

특송 통관의 경우 일본에서는 국제택배편(国際宅配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를 특송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우편물의 통관과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우편물의 통관

일본은 일본우편주식회사(郵便株式会社, Japan Post Co., Ltd.)를 통해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일본 관세법 제6장 통관의 제8절(제76조 내지 제78조)에서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며, 관세법시행령(稅法施行令)에서는 제7절 '우편물에 관한 특칙'에서 우편물 통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송화물의 경우 일본에서는 국제택배(国際宅配)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개인 수입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 업체가 통관 절차를 대행한다.

가) 과세가격에 따른 우편물 수입

〈표 3-1-10〉 우편 수입 물품 배송 및 납세 방법

기준 과세가격	세금합계액	우편 물품 배송 및 납세 유형
20만엔 이하	무세·면세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 배송
	1만엔 이하	①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원하는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와 '납부서', 우편물을 직접 배송 → 수취인이 세금과 우편 수수료를 지급 → 그 자리에서 우편물 수취 가능 ② 그 외의 경우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 발송 → 수취인이 해당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교부받고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 납부 → 우편물 수취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	
20만엔 초과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문서 발송 → 일반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진행

자료: 연구자 정리

(1)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세관은 우편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⁹⁴⁾ 외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은 서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세관 검사의 대상이고, 이러한 세관 검사는 세관외우출장소(税関外郵出張所)⁹⁵⁾가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에서 실시된다.

검사 결과 무세·면세 대상 물품인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이 배송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 또는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인 경우로 수취인이 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일본우편주식회사를 통해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세관양식 C-5060)' 및 납부서(납입금 영수증 겸용)와 함께 우편물을 직접 배달하며, 세금의 납부를 일본우편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취지를 신청하고 세금 상당

94) 일본관세법 제76조 및 제77조

95) 세관외우출장소는 ① 도쿄세관 - 도쿄 외우출장소, ② 요코하마 세관 - 가와사키 외우출장소, ③ 나고야 세관 중부공항 세관 지서 - 중부 외우출장소, ④ 오사카 세관 - 오사카 외우출장소, ⑤ 모지 세관 - 후쿠오카 외우출장소, ⑥ 오키나와 지구 세관 - 나하 외우출장소로 총 6곳임

액과 일본우편주식회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는 송부되지만, 우편물 및 납부서는 배달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 통지서 하란의 배달 우체국 등 일부인란(日付印欄)에 날인되어 있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교부 받아, 세금을 은행 창구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과 별도로 일본우편주식회사의 취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세관으로부터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세관 양식 C-5081)’라고 하는 엽서가 발송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엽서에 기재된 요구 서류를 엽서에 기재된 세관외우출장소 등에 우송 또는 지참하거나 전화 연락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서류와 상품을 비교하여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1개의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수취인에게 나누어 우송된 것(예: 우편물의 무게 제한으로 인한 분할 우송)은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과세가격을 합한 금액이 20만엔 이하여야 한다. 간이세율 적용배제물품 또는 수취인이 간이 세율의 적용을 원치 않을 시 이를 세관에 신청하면 간이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반 세율 적용된다.

(2) 과세가격 20만엔 초과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물품이 수취인에게 직접 배송되지 않는다. 20만엔 초과 우편물의 국내 반입 시 원칙적으로 우편물이 보관된 보세지역(일본우편주식회사 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외우 출장소 등)에 수입(납세)신고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요구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과세가격이 20만엔을 넘는 우편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 문서를 발송하며, 안내 문서가 송부되면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업송장(仕入書) 등 수입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우편주식회사나 기타 통관업자에게 수입통관 절차를 의뢰하거나, 본인이 세관에 수입(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 등의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에 의한 수입(납세)신고의 심사 및 검사가 종료한 후, 통관업자(통관업자에게 수입 절차를 의뢰한 경우) 또는 세관(직접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통지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가격이 20만엔을 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물 등의 물품이거나 일방적으로 보내온 물품인 등의 이유로 가격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경우와 동일한 통관 절차를 따를 수 있다.

(3)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우편물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를 발송하여 송장(仕入書), 영수증,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등의 제출을 요청한다.

외국 거주자로부터 보내진 물품의 경우 가격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세관에서는 예를 들어 ‘수입되는 우편물과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나)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

세관의 외우출장소장은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또는 기증물품인 우편물에 과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다. 이 과세통지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품명 이외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과세 표준인 수량 및 가격과, 적용되는 세율, 징수되는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원칙적으로 CIF 가격(운임 및 보험료 포함된 수입 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비세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 및 주세 등 소비세 이외의 내국 소비 세액을 더한 가격이며, 주세와 담배세 및 담배특별세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 소비세는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수입 규제 물품의 휴대 유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휴대 유무 등에 대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 입국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세관양식 C-5360)’를 기입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표 3-1-1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2014년 기준)

품목		면세범위	비고
주류		3병	1병에 760ml 정도의 것
담배	궐련	200개비	일본제 담배는 외국산 담배와 별도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 기타 담배 250g까지 면세수입 가능
	엽궐련	50대	
	기타 담배	250g	
향수		2온스	2온스는 약 56ml
기타 품목	해외시가의 합계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20만엔	1품목당 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로 취급되며, 20만엔의 면세범위의 계산에 불포함
	기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와 담배는 면세 제외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분명히 본인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되지 않음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지급 수단 등을 일정 금액 이상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지급 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 약속어음 및 유가증권의 경우 합계액이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금괴(순도 90% 이상)의 경우 무게가 1kg을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계, 가방, 반지 등의 외국 제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외국제품 반출신고서’에 해당 품명, 수량, 특징 등을 기입하여 출국 시 현품과 함께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입국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금으로 세관 검사장 내 은행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 출장소가 없는

경우 세관 직원에게 납부한다.

마. 소액물품 면세 제도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⁹⁶⁾ 단, 소비세 이외의 기타 내국 소비세(예: 주세, 담배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그 세금은 면세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주요 품목으로는 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등, 편물제 의류(티셔츠, 스웨터 등), 스키신발, 가죽 구두 및 바닥이 가죽제인 신발류 등이 있다.

반면,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개인 사용에 제공됨을 인정하는 증여품이며 과세가격이 1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도 있다.

〈표 3-1-12〉 ‘과세가격 합계액 1만엔 이하의 물품’의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일반	- 1건의 신고에 따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 - 1건의 송장(invoice)에 따른 화물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송장에 기재된 모든 화물의 과세가격을 합친 것
우편물	- 1개의 포장에 포장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것 -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수취인에게 같은 시기에 분산 우송된 것 등 (예를 들어, 우편물의 무게 제한으로 인해 분할하여 우송된 것)은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과세가격을 합친 것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96) 관세정률법 제14조제18호

바. 항공화물 운송장(Air-Waybill) 등에 의한 수입신고⁹⁷⁾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당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내용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그 송장 등을 일반 수입신고서를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에 의한 수입신고를 위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에 “수입(납세)신고서”라고 표시하여 2부를 제출하며, 수입이 허용된 때에는 그 중 1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2.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의 기재 내용이 필요한 내용⁹⁸⁾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족 사항을 적당한 곳에 추가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필요 내용이란 과세가격과 세액 등의 정보 및 수입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수출자 정보, 화물 장치 위치 등의 정보 등 기타 참고 사항

단,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에 의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및 관세정률법 무조건 면세(제14조) 및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제16조) 규정을 제외한 기타 감면 규정의 적용 또는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본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사. 창구 전자 신고(수출입)

일본에서는 일부 세관 관서의 창구에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NACCS를 이용하여 전자 수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수입(납세)신고에 관한 절차(수입허가 전 인수 승인 신청 포함), ② 수출신고 및 반송신고 관련 절차, ③ 화물 정보 등록, ④ 신고 첨부 서류(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을 PDF 등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단,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를 이용한 수입(납세)신고 시에는 예비 심사제도 이용을 위한 예비신고는 불가능하나, 개별 납부

97) 관세법 기본통달 67-4-4

98)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

기한 연장 및 포괄적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이용이 가능하다.

본 단말기를 이용한 통관은 세관 창구에서 스스로 서면 수출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 약관의 내용에 동의 후 창구에 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 요금도 무료이나, 타인의 의뢰에 따라 업으로 수출입 신고를 하는 통관업자와 이미 NACC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용이 제한된다.

창구 전자신고를 한 자는 신고 후 세관에 송장, 선하증권 등 수출입 신고 관련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PDF 등)로 제출하며, 세관의 심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지정표'를,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 등을 전달하며, 검사 또는 납세 등이 완료되면 '수출입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창구 전자신고는 수출입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단말기에서 품목코드 및 거래가격 등 필요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의 계산이 이루어지며, 신고한 내용을 USB 메모리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54개 관서에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⁹⁹⁾ 창구 전자신고가 가능한 시간은 단말기 설치 관서의 업무 시간으로, 각 관서의 업무 시간은 상이할 수 있다. 사전에 단말기 설치 관서에 서면으로 '개청 시간 외 사무 집행요구서'(세관 양식 C-8000)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창구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99)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useful/leaflet26_2ichiran.pdf

II. 수출 통관 절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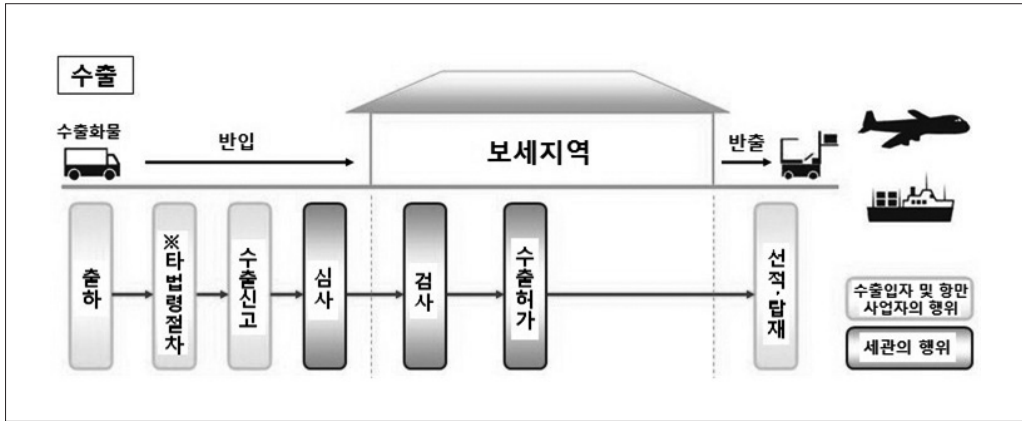
화물을 수출하려고 할 때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이루어진다.

수출신고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인 수출신고서에 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예를 들어,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출 시 사전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해 그 허가·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위한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 세관발급코드 등의 신청 방법과 부여, 사용 방법은 수입신고와 동일하다.¹⁰⁰⁾

100) 제3편 I. 수출입통관절차 내 2. 사전 절차 참고

[그림 3-11-1] 일본의 수출 절차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연구자 번역

2 수출통관절차

화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관련된 화물을 보세지역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출신고 역시 전자통관시스템인 NACCS를 통해 이루어지며, 항공 화물의 경우 수출 화물의 운송 인수에서부터 항공기 적재까지, 선박의 경우 수출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에서 선박 출항까지의 전반적인 세관 수속을 처리한다. NACCS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출자는 창구에 단말기가 설치된 세관 관서에서 단말기로 창구 전자신고를 통해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⁰¹⁾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율표를 수입 및 수출 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입신고 시 수입통계품목표(실행관세율표) 상의 품목번호를 사용하며, 수출 시에는 수출통계품목표상의 번호를 기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관세국에서는 수출통계품목표¹⁰²⁾를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101) 제3편 4. 기타 수입통관 제도 내 사. 창구 전자 신고(수출입) 참고

102) <http://www.customs.go.jp/yusyutu/index.htm>

가. 수출신고

1) 수출신고와 물품의 장치

가) 원칙

지정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관세법 개정 이후 모든 수출화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수출신고는 가능하지만,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나) 예외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의 화물은 세관 지정 보세구역 외 다른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 통관을 하고, 필요 시 지정 구역 외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모양, 성질에 따라 지정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어려운 화물
 - 보세 지역에 장치할 수 없는 거대중량 화물과 대량 화물
 -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화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화물
 - 귀중품, 위험물, 식료품 등 장치와 보관에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화물
- 보세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화물
- 세관장이 화물을 보세 지역 외부에 둘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사료(가루)와 철광석·자갈 등의 벌크화물의 경우 혼재되어 있지 않고, 세관 검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선 취급' 또는 '부중(舁中) 취급'으로 본선이나 바지선에 승선한 상태에서 수출 검사 및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선 취급 또는 부중 취급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출신고가 된다.

화물 보안 관리, 사내규정 준수 체제가 정비되어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수출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화물이 실제로 장치된 장소 또는 화물의 수출 예정 항구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다.

2) 제출서류

수출신고는 필요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지며, 수출신고서의 첨부 서류로서 송장 또는 송장을 대신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포장명세서
- 수출 관련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 등(다른 법령 해당 화물의 경우)
- 관세정률법 등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경감, 면제 또는 환급 관련 수출신고에 있어 특정 서류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류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내국 소비세 수출 면세 혜택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된 것을 증명하는 신청서 등

3) 수출신고 서식

[그림 3-11-2]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税関様式 C 第5010号

輸 出 申 告 書

あ て 先 **1** 東京税関 長殿 申告年月日 **4** 平成16年4月1日

積込港 **5** 東京

積載船(機)名 **6** AMERICA MARU

出港予定年月日 **7** 平成16年4月3日

仕 向 地 **8** BANGKOK THAILAND (都市) (国)

積置場所 **9** ○○ H/W

本船扱 中扱

11

申告番号

999-0000-(D)

積込港符号

船(機)籍符号 1

貿易形態別符号 518

仕向国(地)符号 111

輸出者符号 99999

※(調査用符号)

輸出者住所氏名印 **2**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3-1-1 税関 三郎

代理人住所氏名印 _____

仕向人住所氏名 **3** ○-○○ ○○○○○ THAILAND XYZ Co., Ltd.

品 名	統計品目番号	単 位	数	量	申告価格 (F. O. B)	※(調査欄)
12 USED MOTOR VEHICLE	13 8703.22-910	14 NO	15 10		16 2,500 000	
(2)						
(3)					17 CIF US\$23,809	

類数、記号、番号 **18** 10UNITS BANGKOK IN DIA 1-10 CARGOS TO BE CONTAINERISED VIA ○○ HOZEI WAREHOUSE

19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48条第1項に基づく輸出貿易管理令第1条第1項別表第1の

20 輸出貿易管理令第2条第1項第2の

21 輸出貿易管理令第4条第1項第号の

22 輸出貿易管理令第1条第1項

23 輸出許可証又は輸出承認証の番号

24 保税運送区分 陸路、海路、空路 年 月 日から 年 月 日まで

25 申告書 1枚 1欄

26 添付書類 (輸出貿易管理令関係を除く)。
仕 入 書
輸 出 取 引 承 認 書
その他関係法第70条関係許可・承認書等 (法令名)
関税率法、関税暫定措置法第 条第 項第 号関係
内国消費税 輸出免税(還付金)関係

※許可印・許可年月日 _____

※積込年月日 _____

※ 税関記入欄

1 検査場検査 _____

2 現場検査 _____

通関士記名押印 _____

(注) ※印の欄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
「不服申立てについて」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2月以内に税関長に対し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規格A4)

<작성방법>

수입신고서는 검은 색의 펜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정정할 때는 정정하는 내용을 2개의 선으로 지우고 위쪽에 정정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 인을 날인하면 된다.

- (1) 신고하는 세관의 명칭
- (2) 수출자 자신이 수출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에 기재된 발송인), 날인
- (3) 화물 수취인(화물을 수출하는 상대방)의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 (4) 신고 연월일
- (5) 화물 적재항(공항)의 명칭
- (6) 화물 적재 선박 명칭(항공기의 소속 회사명 및 AIR WAY BILL NO)
- (7) 출항 연월일
- (8) 목적지와 국가명
- (9) 화물 보관 장소
- (10)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입
- (11)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 (12) 일반적인 상품명(예를 들어, 송장의 상품명)
- (13) 수출 통계 품목표의 번호(6자리) 및 분할번호(3자리)
- (14) 수출 통계 품목표의 통계 단위(두 통계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입)
- (15) (14)의 '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 기입
- (16) FOB 가격 엔화 기입
- (17) 결제가 FOB건 이외 총액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매매기준가격 및 결제 금액에 밀출 표시
- (18) 화물의 총개수, 외장 마크 및 번호 기입. 화물을 컨테이너 포장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포장 화물 및 컨테이너 포장 장소
- (19) 무기 관련화물 등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1 내지 제15항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고 '적용' 틀 안에 ×표시
- (20) 마약 원료, 특정 유해 폐기물, 희귀 야생 동식물 등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2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목과 호의 번호를 기입하고 '적용' 틀 안에 × 표시. 해당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 '비해당' 틀 안에 ×표시
- (21) (19) (20)에 해당하는 화물로 수출 무역 관리령 제4조에 따라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허가요(許可要)' 틀 안에 ×표시
- (22) 항목의 번호로 16를 기입.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제16항에 해당하고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물의 경우 '허가요' 틀 안에 ×표시 기입.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제1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하지만 무기 제조 등에 이용되지 않는 화물의 경우 '허가 불요' 틀 안에 ×표시
- (23) 수출허가증 등의 번호를 기입 ((19)에서 (23)까지 기입 방법을 모르는 경우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 (24) 수출신고에 따라 보세 운송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구분과 운송 기간
- (25) 신고서의 장 수 및 란 수를 기입

나. 세관의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NACCS를 통한 수출신고 역시 수입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3가지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즉, 수출신고를 후 간이 심사(구분 1)와 서류 심사(구분 2), 화물 검사(구분 3) 중 하나로 선정되어 통보된다.

전산상의 정보를 통해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간이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를 위한 화물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화물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검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 장소 외 검사를 허가한다.

다. 소비세 수출면세

사업자가 일본 내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나, 이 판매가 수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 이는 내국 소비세인 소비세는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수출 면세라고 한다.

수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 시에는 수출허가서와 적재 승인서 등, 우편 수출 시에는 20만엔 초과 시 수출허가서 등을, 20만엔 이하 시 장부 또는 우편물 수령증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표 3-11-1〉 수출 면세 증명 서류

수출 형태	증명 서류	
일반 수출	- 수출허가서 - 적재 승인서 또는 세관의 수출 증명서 - 휴대 또는 탁송의 경우 수출 탁송품 허가서	
우편 수출	20만엔 초과	수출허가서 또는 세관의 수출증명서
	20만엔 이하	그 사실을 기재한 장부 또는 우편물 수령증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수출 거래에서는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매입 금액에 소비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매입 시 납부한 소비세액에 대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출시 과세되는 소비세는 없기 때문에, 상품 등의 구입 시 지불한 세금 전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라. 기타 수출 통관 관련 제도

1) AEO 공인기업에 대한 특정 수출신고제도(特定輸出申告制度)¹⁰³⁾

가) 개요

특정 수출신고제도란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 체제가 정비된 자로,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출자(AEO 공인기업)가 화물이 위치한 장소 또는 화물의 선적 예정 항구 또는 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하고,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특정 수출자의 경우, 수출화물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자사 공장이나 창고, 항구와 공항으로 이동 중)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관의 심사 및 검사에서 수출 업체의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선적이 가능하며, 소요 시간 단축 및 물류 비용 절

103) 관세법 제67조의 3

감 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출에 관해 허가, 승인 기타 행정 기관의 처분 또는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등의 지정 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다.

나) 승인

특정 수출신고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특정 수출자 승인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자는 전국의 세관 관서에서 특정 수출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수출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 동안 관세법 또는 기타 관세 관련 법령의 규정 위반으로 형에 처해지거나 통고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폭력단원 등이 아니어야 하는 등의 승인 요구사항(관세법 제67조의 6)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총포 및 그 부속품·부분품과 폭발물, 화약류, 군용 선박·항공기·차량 등의 화물¹⁰⁴⁾과 이란, 이라크, 북한¹⁰⁵⁾을 목적지로 하여 수출되는 화물,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수출신고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특정 위탁 수출신고 제도

특정 위탁 수출신고 제도는 인정통관업자(認定通關業者)에 의한 통관 절차와 특정 보세 운송업자에 의한 화물 운송에 의해 적정한 화물 관리 등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에 의해 화물이 취급될 것을 전제로 하여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수출자가 지속적으로 특정 위탁 수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인정통관업자 등)이 '특정 위탁 수출신고 포괄 신청서(세관양식 C 제9160호)'를 작성하여 특정 위탁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관 관서에 제출한다. 인정통관업자는 적어도 반 년에 1회, 특정 위탁 수출신고에 따른 화물이 장치된 장소에서 화물 관리 체제가 확보되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해당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관 관서와 화물을 운송할 특정 보세운송업자에게 송부한다.

특정 보세 운송업자는 수출자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위탁 수출신고 화물과 관련해

104)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1의 1항

105)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4

화물 검사 및 운송 중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인정통관업자와의 연락 체제를 구축하며, 운송하는 화물이 신고 화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보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 컨테이너 취급 제도

가) 제도의 개요

수출 화물을 공장에서 컨테이너 포장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받는 컨테이너 취급제도가 존재한다.

기존(2011년 10월 이전)에는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의 수출실적이 있을 것, 신청 전 일정 기간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컨테이너 취급신청서’를 수출신고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신청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며, 과거 수출 실적이 없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세구역 반입 전 수출신고가 가능하므로, 공장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수출신고를 하면 보세구역 반입 후 즉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때 수출신고를 하여 검사 구분(구분 3)으로 지정되면 세관 지정 검사장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꺼내거나 또는 포장을 열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화물의 포장 전에 ‘지정 지역 외 검사 허가 신청서’ 및 ‘사전검사요청서’를 제출해 미리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고 포장을 한 후 수출신고를 하면, 사전에 실시한 검사 기록을 고려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지정 지역 외 검사는 수출의 경우에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5,0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나) 제도 이용 상 유의점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는 화물(수출금지 화물, 경제산업성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무역관리령 해당 화물 등)이 컨테이너 내에 적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점이 수출신고 후 발각될 경우에는 추후 컨테이너 취급이 인정되지 않는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상화물업자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포장 전달까지 컨테이너 준비를 의뢰하고 있으므로, 수출 실적이 없는 화물을 실을 때에는 해상화물업자나 통관업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다

또한 무게가 초과하는 경우, 컨테이너 야드 내 반입을 거절당하면 컨테이너를 공장으로 다시 가져가 작업을 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청구서와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물품이 함께 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운송 중의 박스 파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분의 상자 등을 넣은 경우 반드시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세관 검사에서 발견 시 서류 정정이나 상황 설명 등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서류 보존 의무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수출과 관련된 장부와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수출허가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장부상 품명, 수량, 가격, 수입자 등의 세부적인 정보, 수출신고 및 물품과 관련된 제반 서류, 전자 거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의무 보관 대상이다.

〈표 3-II-2〉 수출 자료의 의무 보존 기간

종류	내용	보존기간
비치 장부	품명, 수량, 가격, 수입자의 성명(명칭), 수출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기재(필요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기존 장부, 송장 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기입한 것으로도 가능)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서류	수출허가 화물의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매수인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세관장에 수출허가에 관한 신고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전자 데이터	전자거래(EDI 거래, 인터넷 등에 의한 거래, 전자메일 등으로 거래 정보를 수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당해 전자거래 관련 정보(거래와 관련된 주문서, 계약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마. 수출 사후 조사

수출의 경우에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세관의 사후 심사가 실시된다.

세관은 수출신고 내용이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적정한 수출 관리 및 통관 처리 체제의 구축, 적정 신속한 수출 통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3년간으로 보통은 사후 조사 일로부터 과거 2년간에 대해 조사하게 되나, 부정 행위를 발견하는 등 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2년보다 장기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 사후 심사에서는 수출 거래(판매 공급)의 내용, 대금결제 관계, 청구서의 내용 (품명, 가격 등)과 의무 보관 서류인 수출 관계 장부, 서류, 전자 매체 기록의 보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경식, 「일본의 EPA 추진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06.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2014. 8.
이상엽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외교통상부, 『일본개황 2012』, 2012.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정재호 · 박지우 · 양지영, 『주요국의 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최준호 · 한상현,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MRA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 관세사와 일본 통관업자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5호, 2010. 12.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WTO · ITC · 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4』, 20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무역협회, <http://www.kita.net/>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저자약력〉

이상엽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수학 및 경제학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김미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김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 편 -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쇄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67-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

